기본과제-KU-RIHRDP-2020-2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

연구책임자 : **현영섭** (경북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준희** (고려대학교)
박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임연구원 : **김정원** (고려대학교)

연 구 조 원 : **고남선** (고려대학교)
남준현 (고려대학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RD Policy

요 약

Chapter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3

Chapter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 ····· 13
2. 타부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 30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변화 요구 ····· 74
4.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미시적 변화 요구 ····· 83

Chapter Ⅲ. 해외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례 분석

1. 독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97
2. 스웨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105
3. 영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111
4. 미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118

Chapter Ⅳ. 분석결과

1. 면담 분석 결과 ····· 127
2.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 142

Chapter Ⅴ.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 159
2.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 163
3. 광역시·도 지자체의 체제 정비 ····· 175
4.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 180
5.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 188
6.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 ····· 202

Chapter Ⅵ. 결론 및 제언

11. 요약 ····· 213
2. 제언 ····· 214

참고문헌 ····· 216

부록 ····· 223

표 목차

<표 Ⅰ-1> Lawshe's CVR 최소값 기준 ····· 6
<표 Ⅰ-2>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 7
<표 Ⅰ-3> 델파이 패널 정보 ····· 8
<표 Ⅰ-4> 심층 면담 일정 및 참여자 ····· 9
<표 Ⅰ-5> 1차 델파이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10
<표 Ⅰ-6> 2차 델파이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10
<표 Ⅱ-1>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및 시설 · 14
<표 Ⅱ-2> 평생교육 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 15
<표 Ⅱ-3>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 17
<표 Ⅱ-4>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18
<표 Ⅱ-5>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 21
<표 Ⅱ-6>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 조직 설치 현황 ····· 22
<표 Ⅱ-7>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 조직 설치 현황 ····· 23
<표 Ⅱ-8>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 26
<표 Ⅱ-9>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구성과 기능 ····· 27
<표 Ⅱ-1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산하 과의 담당업무 ····· 31
<표 Ⅱ-11> 고용노동부의 대상별 직업능력개발 정책 ····· 34
<표 Ⅱ-12> 여성가족부 평생교육 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 40
<표 Ⅱ-13> 여성가족부의 대상별 평생교육관련 정책 ····· 44
<표 Ⅱ-14>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 50
<표 Ⅱ-15> 보건복지부 평생교육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 52
<표 Ⅱ-1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 ····· 56
<표 Ⅱ-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교육 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 61
<표 Ⅱ-18> 행정안전부 평생교육 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 65
<표 Ⅱ-19>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계획(2021년) ····· 67
<표 Ⅱ-20>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 70
<표 Ⅱ-21> 선행연구에 나타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 ····· 85
<표 Ⅲ-1> 독일 평생교육 관련 기구 및 협회 ····· 102
<표 Ⅲ-2> 스웨덴의 교육연구부 부서별 업무 ····· 107
<표 Ⅲ-3> 스웨덴의 교육연구부 산하 기관 ····· 108

<표 Ⅲ-4> 교육부 산하 기관 및 협력기관 ····· 114
<표 Ⅲ-5>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주요 내용 ····· 119
<표 Ⅳ-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 143
<표 Ⅳ-2>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리 ····· 148
<표 Ⅳ-3>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 149
<표 Ⅳ-4> 최종 개선 과제 도출 결과 ····· 153
<표 Ⅳ-5> 정책과제 도출 ····· 156
<표 Ⅴ-1>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 ····· 180
<표 Ⅴ-2> 평생교육정책연계운영위원회의 기능 ····· 201
<표 Ⅴ-3>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 209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방법의 흐름 ····· 4
[그림 Ⅰ-2] CVR 계산 방식 ····· 6
[그림 Ⅰ-3] 델파이 1차 조사 문항 예시 ····· 11
[그림 Ⅰ-4] 델파이 2차 조사 문항 예시 ····· 11
[그림 Ⅱ-1]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 ····· 13
[그림 Ⅱ-2]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16
[그림 Ⅱ-3] 경기도 평생교육 추진체계 ····· 19
[그림 Ⅱ-4] 대전문해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24
[그림 Ⅱ-5] 대전문해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27
[그림 Ⅱ-6] 고용노동부의 직제 ····· 33
[그림 Ⅱ-7]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 ····· 35
[그림 Ⅱ-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추진체계 ····· 37
[그림 Ⅱ-9] 여성가족부의 직제 ····· 39
[그림 Ⅱ-10] 여성가족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 45
[그림 Ⅱ-11] 보건복지부의 직제 ····· 48
[그림 Ⅱ-12]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 49
[그림 Ⅱ-13] 보건복지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 54
[그림 Ⅱ-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제 ····· 57
[그림 Ⅱ-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 58
[그림 Ⅱ-1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 60
[그림 Ⅱ-17] 과학기술정통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 63
[그림 Ⅱ-18] 행정안전부 조직도 ····· 66
[그림 Ⅱ-19] 이북5도위원회 구성 ····· 69
[그림 Ⅱ-20] 행정안전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 70
[그림 Ⅱ-21] 21세기 교육의 미래 핵심역량 ····· 76
[그림 Ⅱ-22]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 84
[그림 Ⅱ-2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연계 체제 ····· 88
[그림 Ⅱ-24] 온누리평생배움 추진체계도(안) ····· 90
[그림 Ⅱ-25] 평생학습 추진도 ····· 91
[그림 Ⅱ-26] 평생교육 정책의 거버넌스 모형 ····· 92

[그림 Ⅱ-27] 지자체 중심 바우처 전달체계 개선(안) ····· 92
[그림 Ⅱ-28]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 ····· 93
[그림 Ⅱ-29] 평생교육·훈련 전달체계 구축(안) ····· 94
[그림 Ⅱ-30] 기초지자체 단위(서울중구청)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모형 사례 ····· 94
[그림 Ⅱ-31]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As-is, To-be) ····· 95
[그림 Ⅲ-1] 독일 평생교육의 체계 ····· 98
[그림 Ⅲ-2] 독일 연방정부 교육연구부의 직제 ····· 99
[그림 Ⅲ-3]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구성 ····· 101
[그림 Ⅲ-4] 독일 시민대학의 분포 ····· 103
[그림 Ⅲ-5] 영국의 교육부 행정조직 ····· 113
[그림 Ⅲ-6]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 ····· 121
[그림 Ⅴ-1] 소멸위험지역 변화 ····· 193
[그림 Ⅴ-2] 거꾸로 학교 추진체계 ····· 195
[그림 Ⅴ-3] 정부부처와 광역시·도지자체의 연계 개념도 ····· 200
[그림 Ⅴ-4] 세대와 생애주기의 결합 ····· 205
[그림 Ⅴ-5] Carillon 경력단계 ····· 205
[그림 Ⅴ-6] 생애경력개발 지원 추진체계 개념도 ····· 207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각종 보고서 및 국내외 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추진체계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어 각 추진체계 전문가 24명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Chapter Ⅱ는 교육부와 타부처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미시적 변화 요구를 도출하였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을 평생교육법,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한계,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한정된 기능,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업무 약화, 시·도 평생교육 예산 및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무 미포함,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약소한 평생교육 담당 조직 규모 및 단위, 주민주도 평생학습 추진의 한계로 나타났다. 이어 타부처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평생교육 관련 부서의 규모 확대 및 정책 역량 강화와,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되면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조직구성 및 교육부 대응 조직 구성,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를 묶어서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와 가칭 'A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협의회' 신설 및 운영 필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등 교육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행정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사업의 계획과 추진 등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해당 기관에 전권 위임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진흥원 또는 기구의 설립, 운영, 위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도출한 결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포스트코로나의 대비, 평생교육 확대와 지향점 변화, 지역 및 진로 평생교육 강화, 자동화와 연결성의 증가로 인해 일과 교육의 변화, 인재의 글로벌

유통 및 활용 등에 대한 분석과 변화 방향 모색이 요구되었다. 이어,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미시적 변화 요구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처 간 분리되어 있는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역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기초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시·도청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Chapter Ⅲ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해외 사례를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평생교육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국'이나 '실'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이나 기구 연합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평생교육의 정책 및 사업 결정과 자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추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고등교육의 무상화, 개방적인 성인 정규교육 기회 제공 등의 측면에서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산하 기관의 적절한 역할 부여, 읍·면·동 평생학습관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교육부와 고용부의 역할 연계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며, 교육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평생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육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 3섹터 조직의 역할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평생교육은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을 기반으로 연방정부가 교육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 차원에서는 미국의 성인계속교육협회(AAACE)가 7개 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분리된 업무를 수행함과 같이, 한국에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Chapter Ⅳ에서는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평생교육 관계 법령 미비, 추진동력의 부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 평생교육 분야 전문인력 부족, 추진체계 내 전담기구의 현실과 어려움, 네트워크의 부재가 도출되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으로는 '평생교육'용어 재정립, 법령 재정비,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치 및 역할 정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인력 전

문성 확보, 학교 평생교육의 강화, 네트워크의 확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도출되었다.

문헌 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11개 영역의 59개 개선 과제에 대한 타당도 조사 결과, 10개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 방향은 법령 재정비,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전문성 확보, 학교 평생교육 강화,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이다. 최종 도출된 델파이 문항의 재구성을 통해 6대 정책 방향과 3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Chapter Ⅴ에서는 6대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정책과제는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광역 시·도지자체의 체제 정비,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이다. 34개의 정책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정책 배경, 세부 내용, 그리고 기타 사항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Chapter Ⅵ에서는 본 연구내용을 정리하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과,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의 활용을 제언하였다.

Chapter Ⅰ

서론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필요성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있어 비대면 온라인 수업, 디지털 교수학습 방법 증가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방식의 교육 체계를 도입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평생교육은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독보적 기제(UNESCO, 2019)로서, 평생교육을 통해 학교 급제에 속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고령자, 저학력자, 저소득층 학습자까지 미래의 학습 주체로서 온라인 교육 등 미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렇듯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사회 전반의 변화가 시작됨에 따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 현장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국가적 평생교육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학습의 격차 해소와 지속적인 학습 참여 지원 등 사회적 포용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제공과 이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이고 통합적인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 증가는 열린 평생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미래 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ICT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직업교육과 연계, 융합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국민이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습하여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직업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금홍섭, 2020).

그러나 현재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은 각 주관부처나 자치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 실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지역 평생교육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이며, 따라서 불완전한 정책 추진체제에 머물러 있다(이상호, 박수정, 2019). 무엇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포스트코로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재육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부처의 연계를 통해 추진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조대연 등, 2017). 즉, 평생교육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체계적인 통

합이 필요하다(박병영, 이정우,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급격한 위기로 인해 평생교육 체계가 겪고 있는 변화와 한계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축 방안과 유관기관별 상호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 방안 설정의 가이드로써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가.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 분석

1) 교육부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 교육부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요소와 역할, 구성요소 간 관계 파악
- 구성요소에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원 등 포함

2) 타 부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평생교육 관련 추진체계의 구성 및 역할, 구성요소 간 관계 파악

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 요구 파악

1)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변화 요구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변화 파악. 포스트코로나의 대비, 평생교육 확대와 지향점 변화, 지역 및 진로 평생교육 강화, 자동화와 연결성의 증가로 인해 일과 교육의 변화, 인재의 글로벌 유통 및 활용 등에 대한 분석과 변화 방향 모색

2)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미시적 변화 요구

- 관련 문헌에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에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원 등 포함

다.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해외 사례 분석

- 해외 주요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례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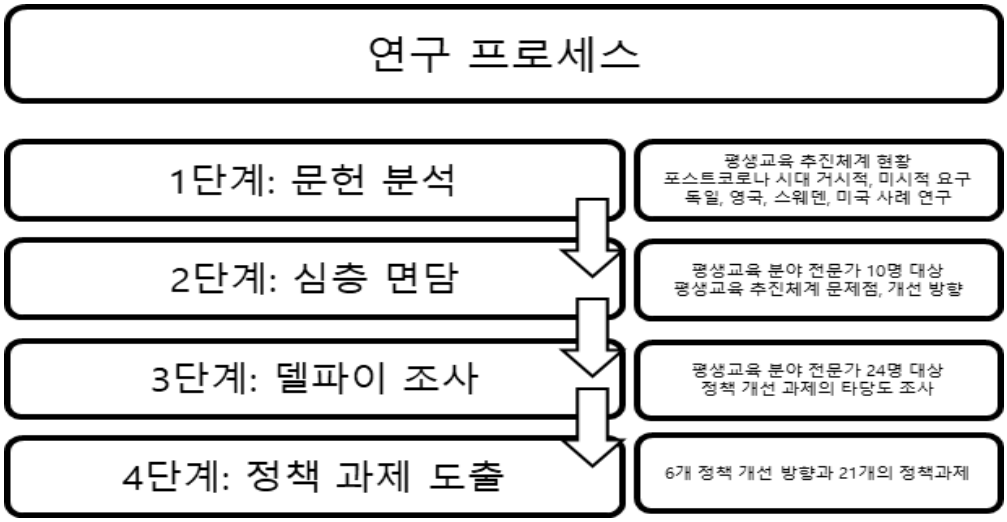
라.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의 의견 수집과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출
- 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은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며, 전문가는 평생교육 관련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포함하여 진행

3. 연구방법

가. 연구방법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평생교육 분야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문헌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거시적·미시적 변화요구를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추진체계 개선 과제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의 흐름은 아래의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방법의 흐름

더불어, 본 연구는 전문가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하기에 앞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IRB 면제 심의 신청 과정을 거쳤으며,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KU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IRB심의면제번호: KUIRB-2021-0097-01)를 확인받았다. 본 연구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전문가의 생명윤리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전문가 활용비 즉, 면담비 지급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보하였으므로 심의 결과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부록> 참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문헌 분석

문헌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거시적·미시적 변화 요구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와 학위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색 사이트, Google 학술검색과 ProQuest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기관 자료 및 보고서는 국가별 정부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선발된 특정 전문가들에게 주제에 대한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면담조사 방법이다. 면담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연구주제에 대한 다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심층 면담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된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심층 면담 진행을 위해 면담 3일 전 면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면담은 COVID-19 상황에 따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택했다. 면담에 활용된 예시 질문 내용은 “현재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평생교육 추진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3)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 기법은 관련 분야 다수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약식 설문지를 통해 전문가 집단 의견을 종합, 분석하는 방법이다(이종성, 2001). 델파이 조사는 분석된 결과를 다시 질문화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수집,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기법은 응답자들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는 익명성과 통제된 환류의 반복과정을 통해 지식의 간접공유는 물론 각 전문가들의 협의를 도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의견 조율이나 초기 의견에 매몰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기법의 약식 형태인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도출된 예비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두 차례 실시되었다. 이 기법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전문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패널들의 심리적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문헌 분석과 전문가 검증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제시하였고, 빈칸에 추가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특히, 델파이 조사는 참여 패널의 전문성과 협조 정도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므로, 패널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CVR은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했다. CVR의 계산 방식은 다음의 [그림 Ⅰ-2]와 같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 : 전체 응답한 사례 수

Ne : Likert 7점 척도 중 5, 6, 7에 응답한 빈도수

[그림 Ⅰ-2] CVR 계산 방식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은 24명이며, 아래 <표 Ⅰ-1>에 따라 25명에 대한 CVR값 .37 이상인 문항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Lawshe, 1975).

<표 Ⅰ-1> Lawshe's CVR 최소값 기준

Number of Panelists	Minimum CVR Value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5	.49
20	.42
25	**.37**
30	.33

나. 연구대상

1)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 면담은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8명의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면담 과정은 면담별 약 1시간에 걸쳐 온라인 ZOOM 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	소속기관	근무 경력
A	남	62	대학	26
B	남	46	대학	23
C	남	5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
D	여	5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27
E	여	60	시·군·구 평생학습관	20
F	여	48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23
G	여	42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19
H	여	4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8

2) 델파이 조사

델파이 패널은 1차, 2차 조사 모두 24명의 동일한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 대상자를 1차, 2차 조사의 패널 위원에 포함하였다. 패널 위원의 선정은 평생교육 분야 근무 경력, 소속 기관 등과 같은 전문가 정보에 대한 사전평가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평생교육 분야 근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의 현직자로 제한하였다. 통찰력 있는 추진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 혹은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연구진과 심층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로부터 스노우볼(snowball) 방식으로 위원을 추천받아 사전평가 후 위촉하는 방식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각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다음 <표 Ⅰ-3>과 같다.

<표 Ⅰ-3> 델파이 패널 정보

구분	성별	연령	소속기관	근무 경력
1	여	39	대학	5
2	남	62	대학	26
3	남	5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
4	남	57	대학	35
5	남	50	대학	24
6	여	35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8
7	남	46	대학	23
8	남	47	대학	25
9	여	50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20
10	남	41	대학	9
11	여	48	대학	15
12	여	45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11
13	남	5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
14	남	56	대학	16
15	남	48	대학	17
16	여	5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27
17	여	60	시·군·구 평생학습관	20
18	여	48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23
19	여	42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19
20	여	43	대학	15
21	여	51	대학	14
22	남	61	대학	35
23	여	37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9
24	여	47	대학	13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심층 면담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회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에 관한 델파이 조사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면담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되었으며, 각

전문가별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COVID-19 위기 격상 단계에 따라 대부분의 면담은 ZOOM 온라인 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는 방역 수칙을 지켜 오프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진의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Ⅰ-4>는 심층 면담 일정과 참여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Ⅰ-4> 심층 면담 일정 및 참여자

참여자	일시	장소
A	2021년 3월 5일	ZOOM
B	2021년 3월 3일	고려대학교
C	2021년 3월 4일	ZOOM
D	2021년 3월 1일	서대문구청
E	2021년 3월 1일	서대문구청
F	2021년 3월 7일	ZOOM
G	2021년 3월 5일	ZOOM
H	2021년 3월 2일	ZOOM

2) 델파이 조사

가) 1차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조사 문항은 문헌 분석과 심층 면담 내용 분석 자료를 기초로 개발하였다([그림 Ⅰ-3] 참조).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9개의 개선 방향을 기반으로, 문헌 분석에서 제기된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를 하나의 영역으로 추가하였으며,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묻는 영역을 추가하여 총 11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어 문헌 분석과 심층 면담 내용을 코딩하여 정리하고, 연구진의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세부 문항, 즉 59개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 평생교육 분야에 속한 교수 급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4개의 문항과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여, 총 6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한 59개의 문항은 용어의 재정립(1개 문항), 법령 재정비(5개 문항), 교육부의 역할 강화(13개 문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3개 문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4개 문항),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7개 문항),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2개 문항), 전문성 확보(4

개 문항), 학교 평생교육 강화(5개 문항),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12개 문항), 그리고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3개 문항)과 같이 총 11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응답은 7점 평정척도를 활용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2021년 4월 14일 배포하여 2021년 4월 23일에 회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Ⅰ-5>와 같다.

<표 Ⅰ-5> 1차 델파이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설문 대상자	배부 및 회수	배부 및 회수 방법	회수율
총 24명	2021년 4월 14일 ~ 4월 23일	전자메일 발송 및 회신 요청	100%

나)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항목은 2차 조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한 59개의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단, 각 패널에게 2차 조사 결과 각 문항별 중앙값, 사분위값, 대푯값과 함께 2차에 자신이 응답한 결과가 표기된 설문지를 제공함으로써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에 비추어 자신이 응답한 내용을 최종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아래 [그림 Ⅰ-4] 참조). 2차 델파이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2021년 5월 5일 배포하여 2021년 5월 15일에 회수하였다(<표 Ⅰ-6> 참조).

<표 Ⅰ-6> 2차 델파이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설문 대상자	배부 및 회수	배부 및 회수 방법	회수율
총 24명	2021년 5월 5일 ~ 5월 15일	전자메일 발송 및 회신 요청	100%

※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각 개선 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V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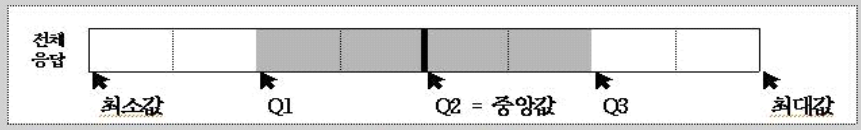
구분	번호	개선 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용어 재정립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	1	√2	3	4	5	6	7
		[주관식] '평생교육'의 명칭으로 추천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작성해주십시오.			(			)	
2. 법령 재정비	2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1	2	3	√4	5	6	7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1	2	3	4	√5	6	7
	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1	2	3	4	√5	6	7
	5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1	2	3	4	5	6	√7
	6	평생교육법 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1	2	3	4	5	√6	7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7	교육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 기능 강화	1	2	3	4	5	√6	7
	8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1	2	3	4	5	√6	7
	9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1	2	3	4	5	6	√7
	10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1	2	3	4	5	√6	7
	11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1	2	3	4	5	6	√7
	12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예산, 인건비 등 포함) 직접 지원	1	2	3	4	5	√6	7
	13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의 역할 강화	1	2	3	4	5	6	√7

[그림 Ⅰ-3] 델파이 1차 조사 문항 예시

<평가준거> ▸ 중요도: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로서 각 문항의 중요성 정도

1	2	3	4	5	6	7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분석항목> ▸ M = 각 문항 응답자 전체 평균 ▸ SD = 각 문항 응답자 전체 표준편차



- Q1(제1사분위수): 응답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할 때, 누적 백분율 25%에 해당하는 값
- Q2(제2사분위수): 응답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할 때, 누적 백분율 50%에 해당하는 값으로 중앙값과 같음
- Q3(제3사분위수): 응답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할 때, 누적 백분율 75%에 해당하는 값

※ 참고: 각 문항의 최소값, 최대값, Q1, Q2(=중앙값), Q3 값은 '전체 응답 값' 란에 제시되어 있음

<응답 예시> ▸1차 선택 = 1차 델파이 당시 전문가 본인의 응답 ▸2차 = 분석결과를 고려한 최종 응답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1차 전체 응답	M = 4.79 SD = 1.47							최소값 : 1 최대값 : 7 중앙값 : 5 Q1 : 4 Q3 : 6
		1차 선택	1	2	3 V	4	5	6	7	
		2차	1	2	3	4	5 V	6	7	

[그림 Ⅰ-4] 델파이 2차 조사 문항 예시

Chapter Ⅱ

이론적 배경

주 요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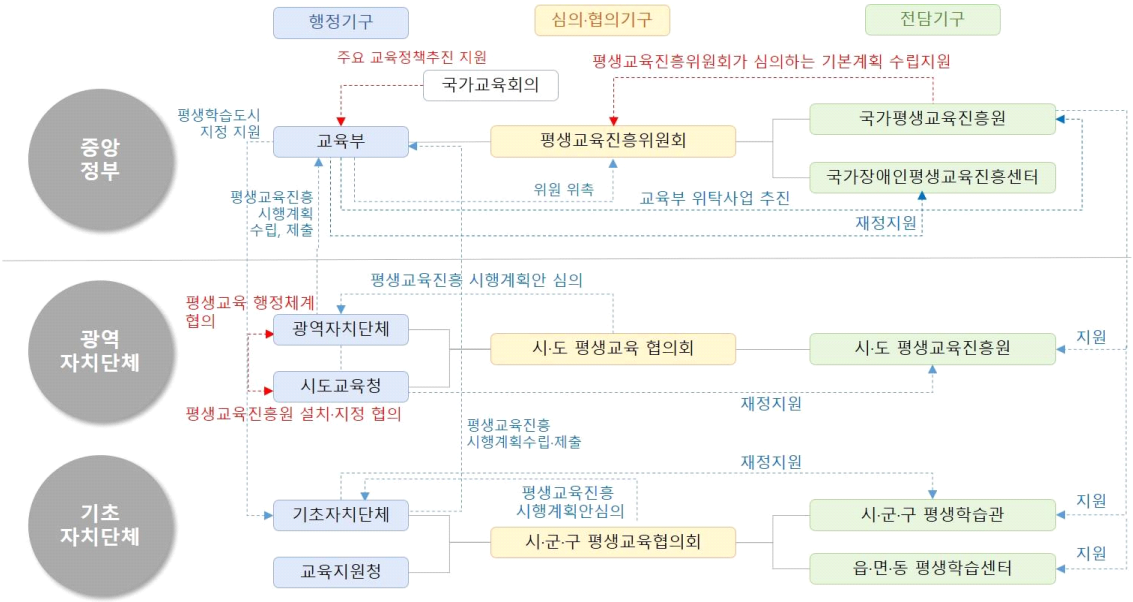
1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
2	타부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변화 요구
4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미시적 변화 요구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

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수직적으로 중앙정부 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는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는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수준에는 교육지원청이 포함된다. 각 수준의 수직적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다시 수평적으로 행정기구, 심의협의기구, 실행집행기구로 구분되어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평생교육추진계획의 심의·협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행·집행의 전담 기능을 각각 포함한다(권대봉 등, 2017). 이러한 수직·수평적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고 규정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본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그 지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림 Ⅱ-1]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작동에 어떤 기구와 기관들이 추가로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현재는 사문화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각 법률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제10조),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제23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제22조의 2)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림 Ⅱ-1]에 제시된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교육부 이외의 정부 부처에서 관장하는 기구, 위원회, 시설 등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및 시설

법률	목적 및 내용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및 시설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학습권·참여 강화	청소년정책위원회(제10조) 청소년시설(제17조) 청소년단체(제28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제23조)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국민의 포괄적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구체적·포괄적 규정	고용정책심의회(제10조) 직업안정기관(제11조) 한국고용정보원(제18조) 한국잡월드(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공공직업훈련시설(제19조)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전체국민 대상 영리추구형 직업기술교육기회 제공	평생직업교육학원(제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제2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제22조) 직업능려개발단체(제23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제32조) 기능대학(제39조) 기술교육대학(제52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자기개발 지원 국민의 인적자본 형성·개발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제7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제12조)

출처: 권두승(2017). p. 11-12.

둘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법들에서는 각각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들은 전담시설의 운영 근거도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 Ⅱ-1]의 교육부 중심 평생교육 추진체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과 연계되는 시설들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관(제34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제17조),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2> 평생교육 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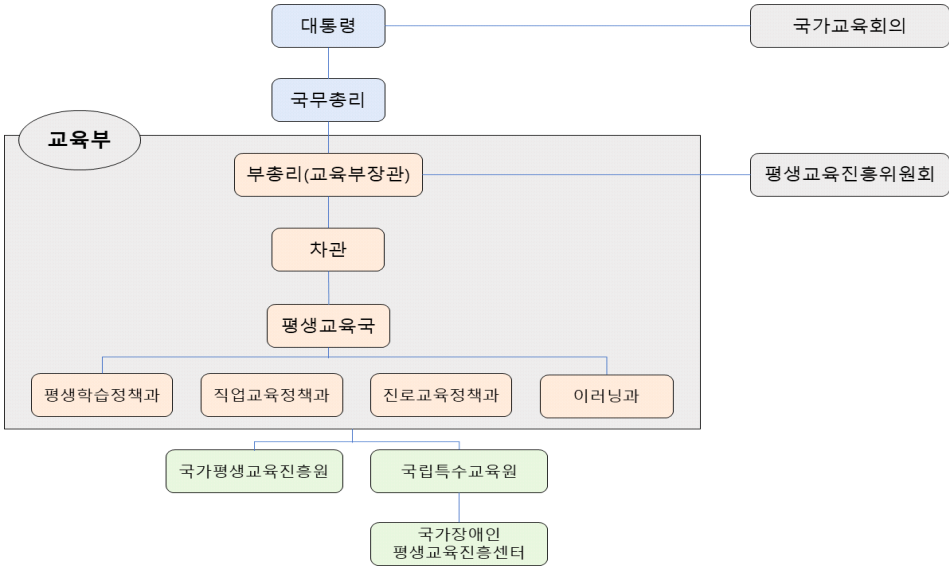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소관 부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자격 제도	사회복지사 1, 2, 3급 (제11조)	청소년지도사 1, 2, 3급 (제21조)	문화예술교육사 1, 2급 (제27조)
주요 시설	사회복지관 (제34조)	청소년시설 (제17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제10조)

이상의 논의와 같이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주로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부 이외 다른 중앙정부 부처의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기구, 시설 등과도 연계된다. 그러나 평생교육과 직결되는 주된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중앙정부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의 산하조직(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으로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계획·심의·실행하는 체제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단계의 기구로서 평생교육을 포함한 중장기적 국가교육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3실 4국 체제로서 평생교육국 산하에 평생학습정책과를 포함한 4개의 과를 두어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평생교육 정책의 심의·협의를 담당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는 평생교육 정책의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각 행정기구, 심의·협의기구, 전담기구 간 관계는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1)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가교육회의는 다음의 네 가지 사안을 담당한다. 첫째,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둘째,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을 조율한다. 셋째,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국가교육회의는 4개의 전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는 2030 평생·직업교육체제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생학습,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노동계, 산업계 등에 속한 위원들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분과, 직업교육분과, 마을교육공동체분과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18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회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관련 주체들 및 각계각층의 협의와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2)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정책과는 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② 성인문해교육, ③ 평생교육 바우처, ④ 대학 평생교육체제, ⑤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업무, ⑥ 국가역량체계(KQF), 민간자격, NCS 등의 체계 구축, ⑦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이다.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교육부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표 Ⅱ-3>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분류	업무 내용	관련 법령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제9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제16조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	제17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2조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육성	제3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8조
기관 설립 및 구성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제15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원	제19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협조	제19조의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 관리	제24조, 제24조의2, 제43조, 제44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기정	제25조, 제44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
문해교육	문해교육 진흥, 운영 및 지원	제39조
	문해교육센터 설치	제39조의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제40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40조의2
그 외 사업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공개	제18조, 제46조

1)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평생교육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2019년도에 3회 개최되었다(평생교육백서, 2019). 평생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표 Ⅱ-4>와 같다.

<표 Ⅱ-4>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항목	내용
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육부 장관 위원: 평생교육 관련 관계부처 차관, 평생교육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인원수: 위원장 포함 20명 내외
위원회 기능	평생교육진흥 정책 및 사업 심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지원업무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산하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실행 주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 형태로 설립되고, 진흥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출된다.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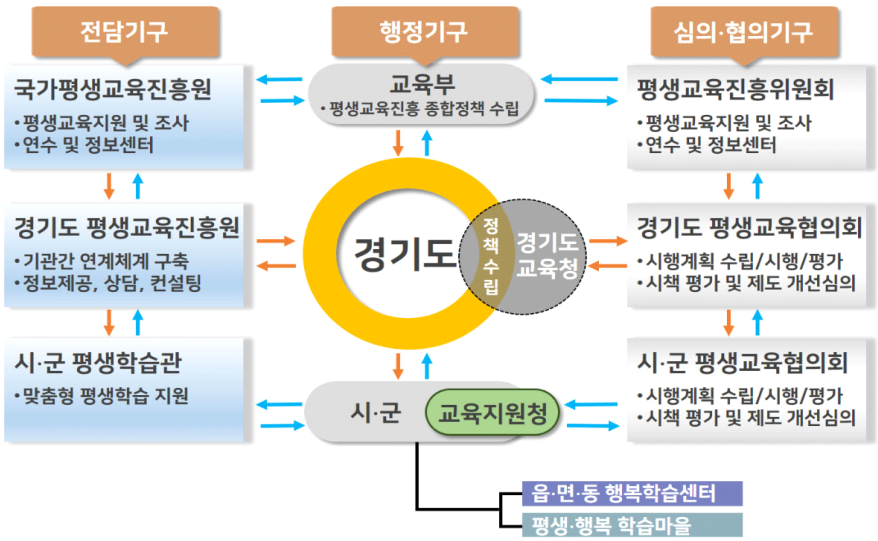
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2018년 5월 28일에 국립특수교육원 산하로 개소하였다. 2019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센터장(직위: 장학관) 1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4

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202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10대 기능은 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②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③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④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⑥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⑦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⑧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⑨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⑩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등이다.

다.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청,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그리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된다. 행정기구인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주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의·협의기구인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담기구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경기도 평생교육 추진체계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2021.3월).

1)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제18조)과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에 관련된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및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7조(설립)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행정체계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Ⅱ-5>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담당 부서를 비교한 것이다.

<표 Ⅱ-5>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강원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교육지원팀 소속	행정국 노사법무과 평생학습팀
경기	행정1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미래교육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평생교육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급식과 평생교육팀
경북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광주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소속	교육국 중등교육과 평생교육팀
대구	시민행복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평생교육팀	행정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대전	공동체지원국 교육청소년과 교육복지팀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평생교육팀
부산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서울	행정1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세종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팀
울산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인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진흥팀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전남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소속	행정국 행정과 평생교육팀
전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미래인재과 평생교육팀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충남	기회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기획국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충북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협력팀 소속	행정국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소속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국 단위로 설치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로 2개 지역이다. 과 단위로 존재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1개이며, 팀 수준으로 존재하는 곳은 10개 지역이다. 4개 지역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다른 과나 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 조직 설치 현황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 조직 설치 현황

평생교육 담당 조직	지역 수	지역
국 단위	2	경기, 서울
과 단위	1	제주
팀 수준	10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남 (대전 : 교육복지팀에서 평생교육 업무 담당)
다른 과나 팀에 소속	4	강원, 광주, 전남, 충북

2)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평생교육법(제39조)과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운영, 각종 평생교육시설 지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도를 예로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추진과 관련된 평생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경기도립도서관 중에서 지정·운영한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평생교육 업무가 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교육청에 평생교육과가 설치된 경우는 3개 지역, 팀 단위로 설치된 곳은 12개 지역이다. 나머지 1개 지역(충북)의 교육청은 평생교육 업무를 팀 단위로도 운영하지 않고 다른 팀에서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 조직 설치 현황은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 조직 설치 현황

평생교육 담당 조직	지역 수	지역
국 단위	1	서울
과 단위	3	경기, 경남, 인천
팀 수준	12	강원,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다른 팀에 소속	1	충북

3)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이 맡으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평생교육법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따라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룬다. 경기도를 예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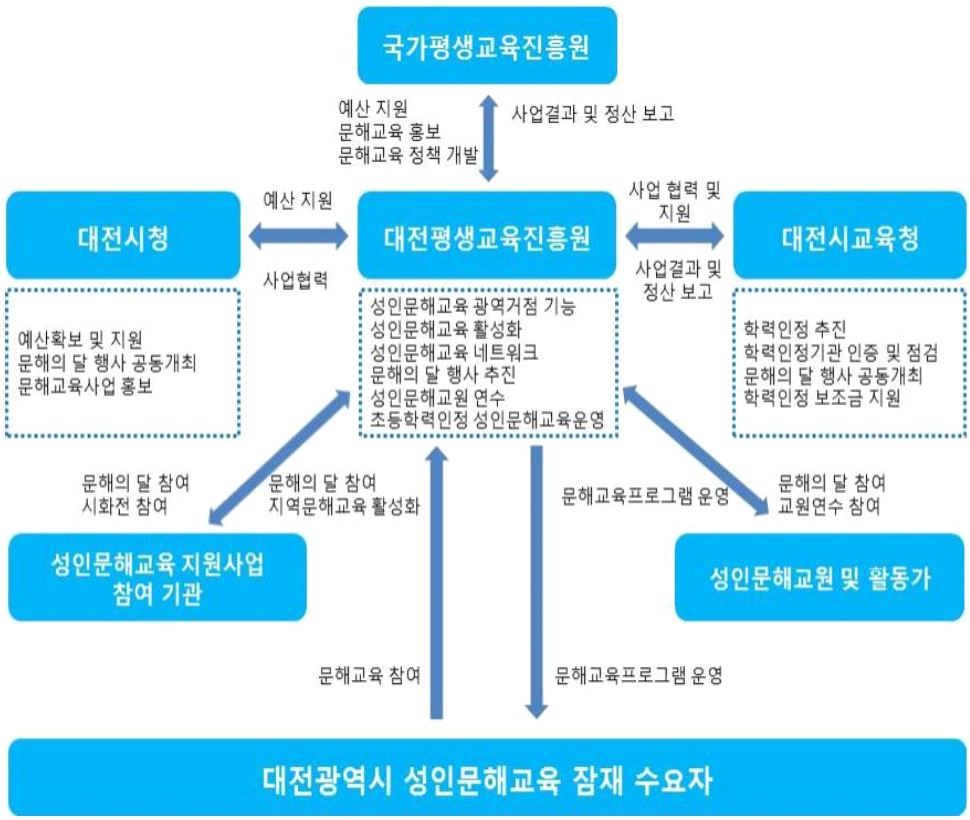
제8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4)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제장(시·도지사)이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재정 등의 여건 등에 따라 법인, 지정·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 현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형태는 법인 설립 10곳, 지역연구원 지정 2곳, 지역인재육성재단 지정 4곳, 대학 지정 1곳이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직원에 의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자문이나 기초작업을 위한 연구수행 등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된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모아'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수시로 갱신하고,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 등의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이다. 대전광역시를 예로 살펴보면, 문해교육을 위한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거버넌스 체계는 다음의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대전문해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출처 :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7). 중장기발전방안연구.

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이나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시·군·구와 읍·면·동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로서 지역교육청,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구성된다.

1)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치 측면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 측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생교육 업무는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주로 '과' 혹은 '팀' 수준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팀' 수준보다는 '과' 수준에서 담당 조직이 구성될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와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용인시청의 행정기구는 2실 6국으로 구성되는데, 6국 중 교육문화국 아래 평생교육과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 기초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교육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 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는데, 6과 중 평생교육건강과 아래 평생교육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용인시 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시설 설치, 폐소,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대외행사, 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수행한다. 시·군·구청은 주로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운영·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맡고, 위원은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협의회와 유사하지만, 심의 기능보다는 협의와 조정 그리고 자문의 기능을 강조한다.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협의, 평생학습관이

나 산하 기관 또는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기타 관련된 사무에 대한 논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심의 기능은 다음의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구분	내용
구성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군구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 •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기능 (대구시 수성구)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자문 •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자문 •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자문 •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협의·조정·자문

3) 시·군·구 평생학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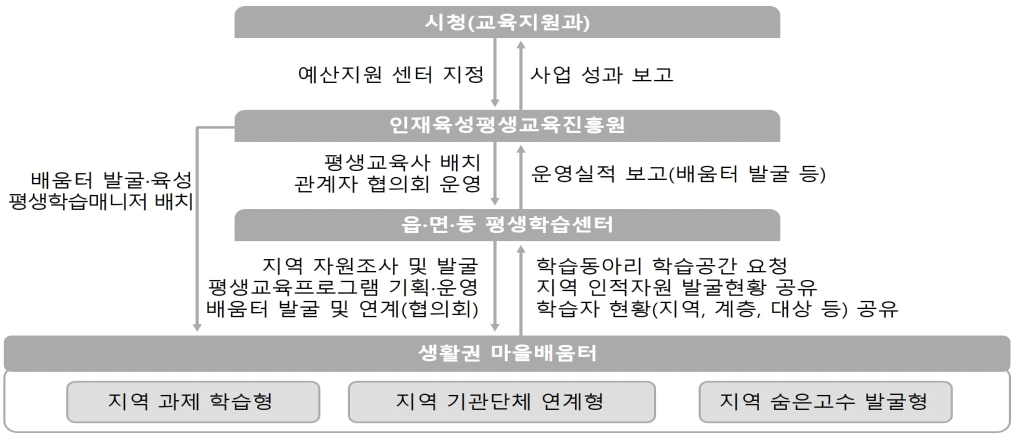
평생교육법(제21조)에 의하면 시·도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지만,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에 494개의 평생학습관이 운영 중이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실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체제 구축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수준에서도 가능하지만, 산하 시·군·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즉,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역할에는 중복되는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편, 시·군·구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 기관이라는 의의가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의 <표 Ⅱ-9>와 같다.

<표 Ⅱ-9>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구성과 기능

구분	내용
구성	•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 시·군·자치구의 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기능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

4)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에 129개 시·군·구에서 총 832개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행복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평생학습센터는 시·도 자치단체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마을배움터나 학습동아리 등과 같은 주민 거버넌스 중심의 평생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근거리 생활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시청(교육지원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생활권 마을배움터 간 지원·보고 체계는 [그림 Ⅱ-5]와 같다.



[그림 Ⅱ-5] 대전문해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자료

마. 시사점

1)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한계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되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연계가 유기적이지 않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산하에 설립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행정자치기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청 산하의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수준에서 시·도청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했던 필요성은 있으나, 그로 인해 교육부 소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간에는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한 연계·협력의 미흡으로 인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추진계획, 평생교육정책 등이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평생교육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지역의 평생교육 행정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한정된 기능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대부분 1년에 1~2회 정도 개최된다. 협의·조정·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와는 다르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의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2019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개 광역자치단체는 심의회를 2회 개최하고, 1개 광역자치단체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1회만 개최하였다.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원이 평생교육 전문가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협의회가 한정적으로 심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

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업무 약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화센터와 같은 나열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업무와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수행 범위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수준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권인탁, 2014).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평생학습센터와는 구별되는 본연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지역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등의 고유 업무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중복된 업무와 범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한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4) 시·도 평생교육 예산 및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지역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평생교육의 규모나 질 측면에서 편차가 심하다. 특히 일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 형태가 아닌 지정위탁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서 규모, 재정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지자체가 설치한 평생교육센터와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생교육관이 양립하여 연계가 필요하다. 평생교육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인 경우와 교육청인 경우로 혼재되어 있고, 기타 법령에 따른 기관들(예를 들어, 대학 평생교육원, 여성가족원, 도서관, 박물관 등)도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공간자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5)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무 미포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호에 교육감의 관장 사무의 하나로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제5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평생교육법(제21조)에 의하면, 시·도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지만,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6)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약소한 평생교육 담당 조직 규모 및 단위

중앙정부(교육부)를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국 단위로 설치된 지역은 2곳뿐이며, 과 단위로 설치된 지역은 1곳뿐이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평생교육 업무가 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일하고, 교육청에 평생교육과가 설치된 경우는 3개 지역에 불과하다.

7) 주민주도 평생학습 추진의 한계

시민단체 및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단체, 학습공동체 등의 지원사업 추진 방향은 자발적인 주민주도의 평생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업의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서 일부 전문가 자문만 제공되고 선정된 단체의 사업추진 관련 행정적인 절차 교육만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평생교육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주도 평생학습 지원사업 시민공모에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가 주로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형성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운영되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타부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관, 차관, 정책보좌관, 감사관, 대변인의 대표 조직과 산하에 3실 3국 3사업단의 형태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직업능력개발이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의 직무 주무부서는 직업능력정책국이다. 직업능력정책국은 산하에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인적자원개발과, 일학습병행정책과의 4개 과를 운영하고 있다.

4개 과는 각각 고유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표 Ⅱ-10> 참조), 직업능력정책과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간을 지원하고, 4차 산업 관련 훈련, HRD-Net,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인적자원개발 통계 및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능력평가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인정과 자격제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숙련기술장려, 특성화고, NCS활용 교육,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등을 운영·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적자원개발과는 디지털 교육훈련의 인증 및 학점부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 민간훈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 운영,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자영업자 훈련지원 및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등을 담당업무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학습병행정책과는 일학습병행 법률 관련 지원, 사업주 훈련 지원, 원격훈련 운영 지원, 기업대학 운영 지원, 계약학과 등 타 부처 연계 훈련 지원, 도제학교, P-TECH, 유니테크 지원, 대학형·재직자형·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고숙련 마이스터 지원, 학습기업, 훈련과정개발, 평가 및 자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용노동부, 202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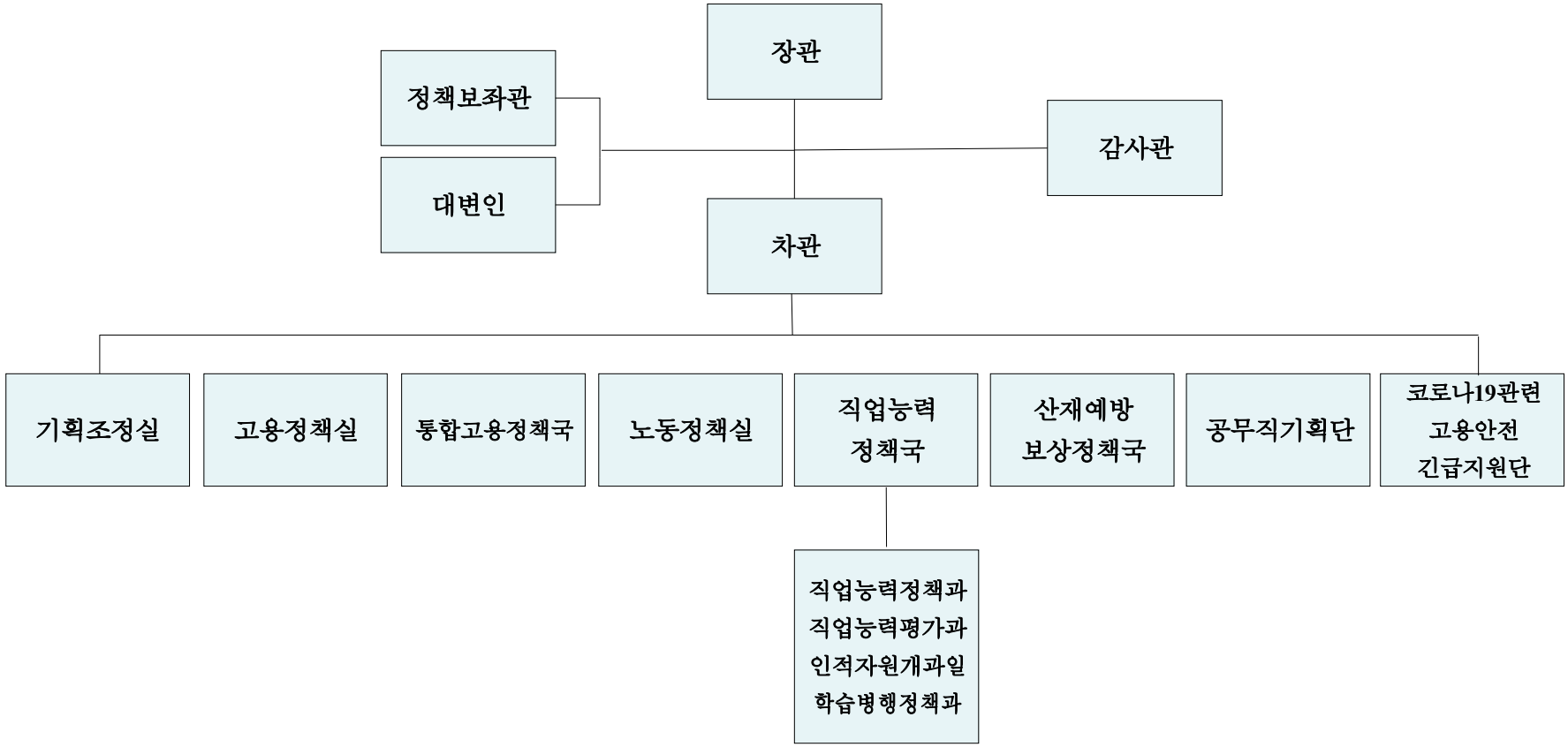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주요 업무로 추진 중이며, 50여 명의 인원이 배정된 '국'수준의 조직을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정책국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이나 다른 국에서도 직업능력훈련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상당한 규모로 직업교육훈련 중심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부처 중 하나로 평가된다.

<표 Ⅱ-1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산하 과의 담당업무

과	담당업무	인원
직업능력정책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단 - STEP, 4차 선도훈련, RSC, ISC - 한국직업방송 기획·관리, HRD-Net 구축·관리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직업능력개발정책 등 고용정책 관련 통계 및 관련 자료 분석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 지원 - 직능의 달 유공포상 관서운영비 집행 및 예산교부 등	15
직업능력평가과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관리 및 운영,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 자격정보시스템(Q-net) 관리, 국가기술자격 관리 및 운영, 국가기술자격 검정 통계, 사업내 자격검정, 공인 및 등록민간자격 - NCS 품질관리, 제도개선 SQF(산업별역량체계)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보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지원 및 활용 실태조사 점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지원, 국가역량체계(NQF) 및 산업별역량체계(SQF) 개발 및 활용 지원 -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숙련기술장려법령 개정, 숙련기술체험관 설립·운영 지원, 숙련기술장려 홍보, 인식제고 사업, 숙련기술장려 적립금 관리,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지원사업 관리, 우수숙련기술인 정보망 관리, 숙련기술전수 관리, 산업현장교수단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기본계획 마련 및 대상종목 선정,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11

	령, 시행규칙 등 법령 총괄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종목 정비(신설, 통합, 폐지) 및 절차개선 자격 관련 타부처 업무 협업(자격기본법, 기술사법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 숙련기술장려 적립금 관리, 국제·국내 기능경기대회 관리·운영, 개선 추진 기능한국인, 산업현장교수 제도 관리,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지원사업 관리 - 특성화고 교원 및 NCS 활용 연수사업 운영, 국가간 자격의 상호 인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인적자원개발과	-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평가 및 우수기관 운영 등, 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제도 개편 및 운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일반고 훈련과정 운영, 스마트 혼합훈련, 민간 LMS 임대지원 사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예·결산·집행, 내일배움카드 통계 관리 - 인증/통심(이수자 제외), 지정직업훈련시설/훈련법인 훈련교사 등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운영 지원, 훈련생 이수자 평가 운영 지원,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업무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자영업자 훈련지원 및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일반고 특화과정, LMS 임대지원	12
일학습병행정책과	- 일학습병행법률, 일학습병행 관련 통계, 법령 지원 - 사업주훈련지원(일반직무, 원격훈련 등), 사업주 훈련 지원, 원격훈련 운영 지원, 기업대학 운영 지원, 계약학과 등 타 부처 연계 훈련 지원 - 도제학교, P-TECH, 유니테크, 부정훈련예방, 지원기관, 현장실습 - 대학형·재직자형·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고숙련 마이스터 지원, 학습기업, 훈련과정개발, 평가 및 자격 지원	11

출처: 고용노동부(2020a)에서 정리.



[그림 Ⅱ-6] 고용노동부의 직제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b)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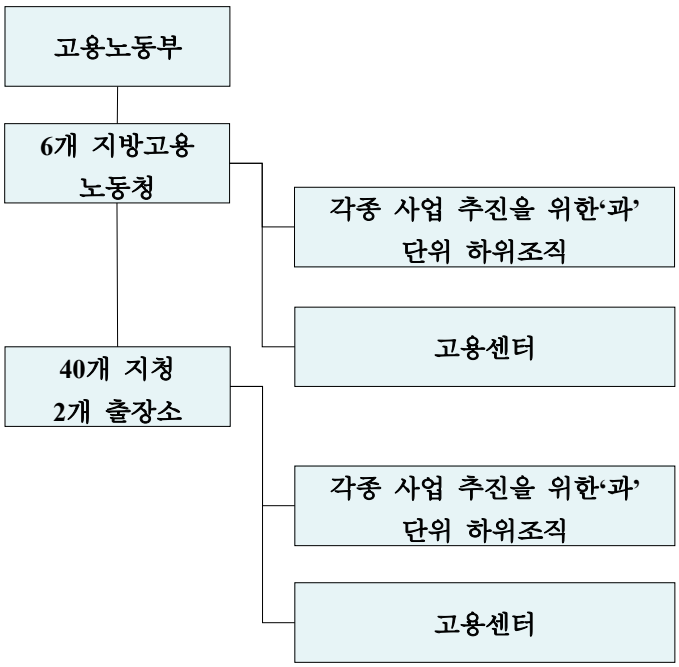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은 다양하다.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실업자 대상 정책, 사업주 대상 정책, 기타 정책으로 구분된다. 실업자 대상 정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다. 사업주 대상 정책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훈련 지원이고, 기타 정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숙련기술 장려이다(고용노동부, 2020c).

<표 Ⅱ-11> 고용노동부의 대상별 직업능력개발 정책

대상	정책	개요
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 · 고숙련 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고용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비 지원
사업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 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훈련 지원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기타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및 훈련성과를 인증 평가하여 부실훈련기관 진입 배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향상, 국민의 합리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택 지원
	숙련기술 장려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c)에서 정리.

각각의 사업에서 대상자는 다르지만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산하 기관이나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정책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고용노동부를 중앙 본부로 하고 광역지자체 수준의 6개 지방청과 기초지자체 수준의 40개 지청 및 2개 출장소로 구성된다([그림 Ⅱ-7] 참조). 6개 지방청은 서울,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광역지자체를 필요에 따라 묶어서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는 지청이나 출장소가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강남,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과 같이 권역을 구성하여 지청을 운영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등 14개의 지청이 있어서 가장 많은 지청을 두고 있다. 그 외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7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5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6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5개가 있다(고용노동부, 2020b).



[그림 Ⅱ-7]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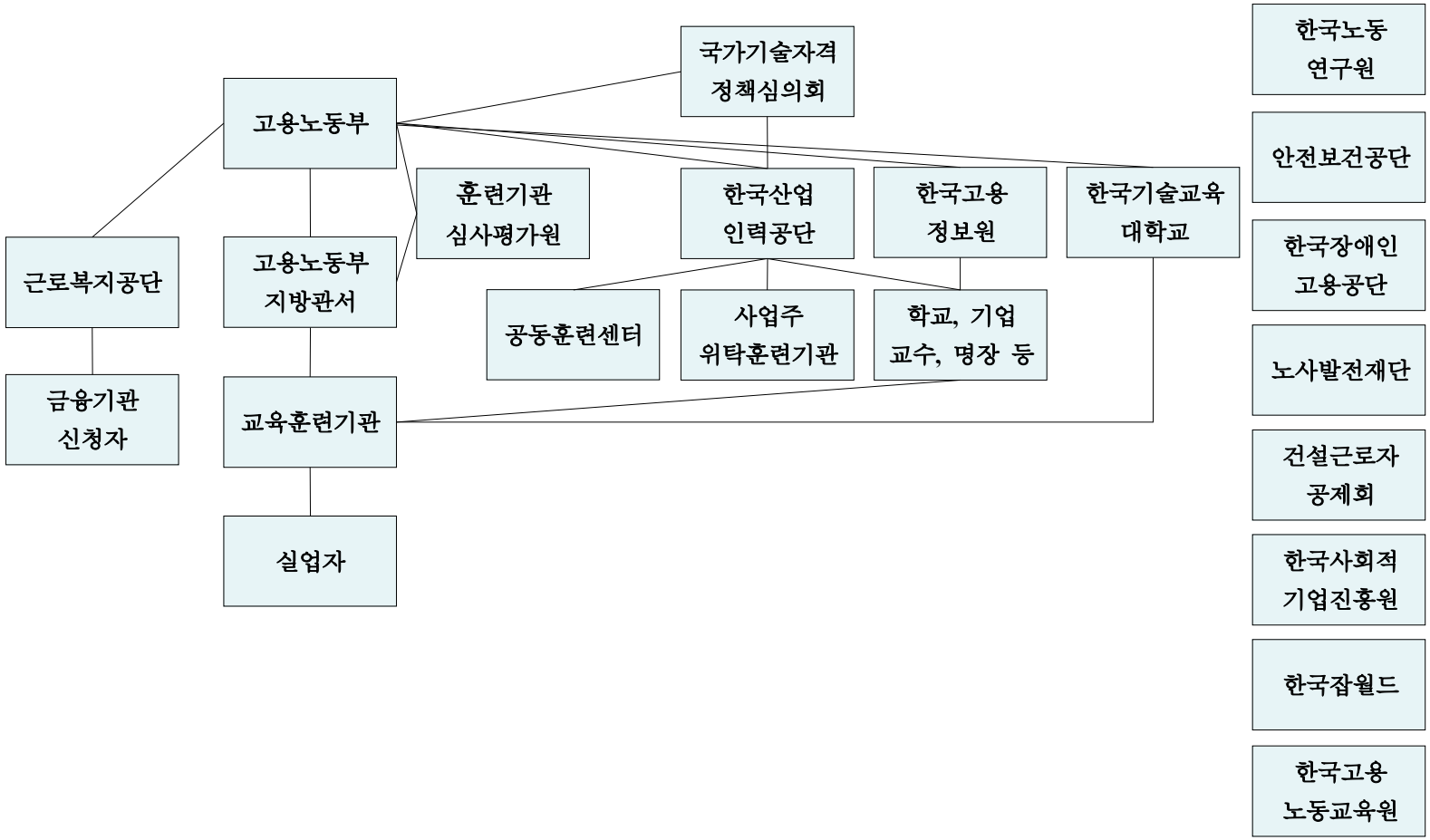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b)에서 정리.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은 하위 직제에 지역협력과, 협력지원팀, 부정수급조사과 등을 두고 또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Ⅱ-7] 참조). 예를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고용센터와 서초고용센터를 두고 취업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b). 다른 광역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도 유사하다. 즉, 광역 수준의 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과'와 '고용센터'의 두 가지 하위조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초지자

체단위에는 권역별로 지청을 운영한다. 지청에도 관련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과' 단위 직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단위의 고용센터도 운영한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는 정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앞서 <표 Ⅱ-11>에서 살펴본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추진체계를 누적하여 표현하면 [그림 Ⅱ-8]과 같다. 우선 실업자 대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사업신청 및 심사 그리고 평가는 훈련기관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훈련과정 인정, 훈련상담 및 카드 발급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실업자는 교육훈련기관에 소속되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이 훈련 실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도 고용노동부와 지방청 그리고 훈련기관 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되어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하고 관련 장려금이나 훈련비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b).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은 동일한 추진체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앞서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정책의 성격상 생계비를 실업자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실제적인 집행기관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주 대상의 정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 재직노동자 대상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공고 및 심사 등을 진행하고, 실제 사업 신청 및 실행은 공동훈련센터가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공공교육기관, 대학, 민간 협회 등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훈련센터에는 포스코, 삼성중공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협회 등이 있다. 사업 대상 정책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의 훈련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사업주나 위탁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진행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훈련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에 중소기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또 현장에서 직접 교수활동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제를 운영하면서 교수나 교수 파견기관도 추진체계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b).



[그림 Ⅱ-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추진체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c)에서 정리.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대상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일차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되며, 사업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기업, 개인 교수자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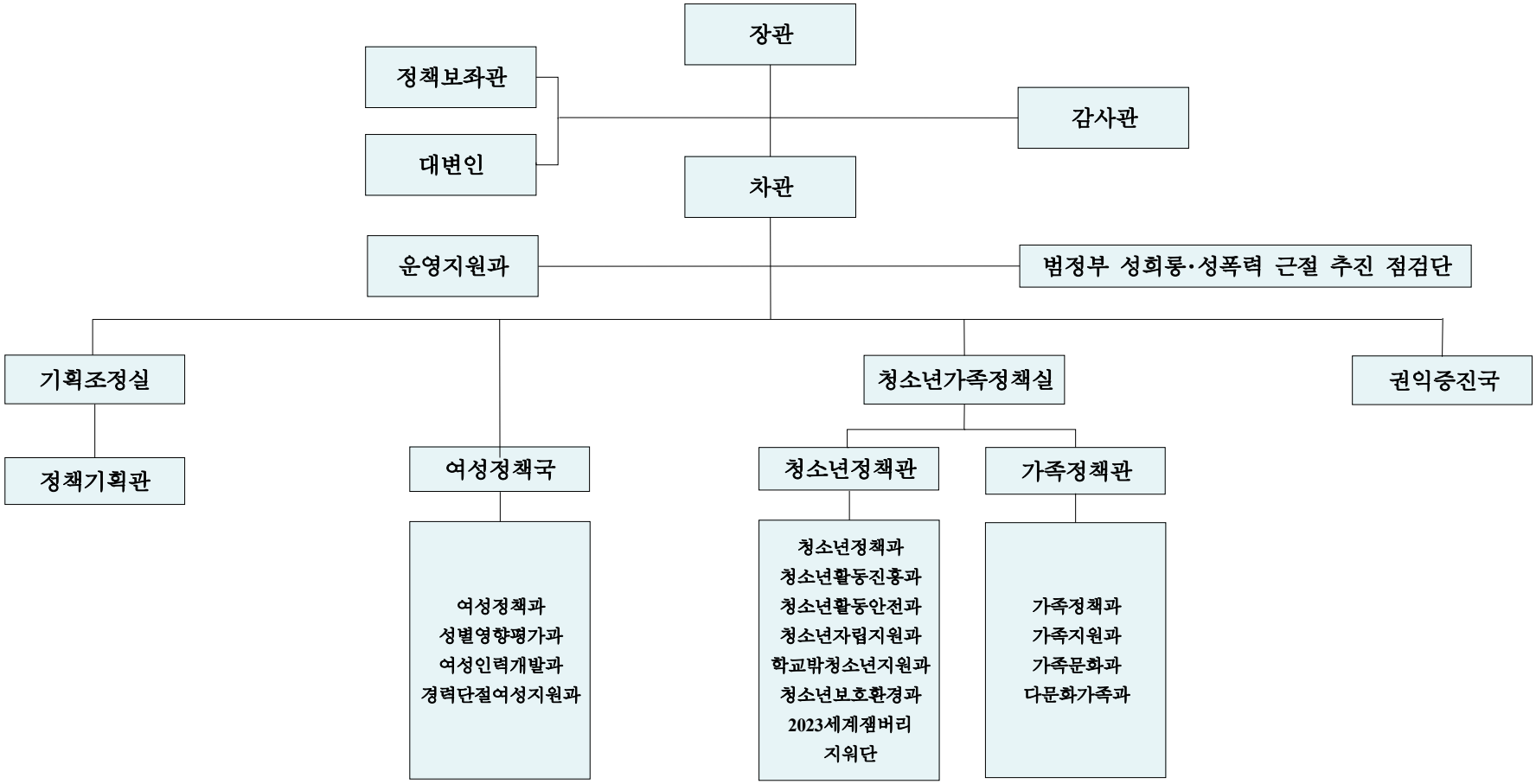
기타 정책 중 국가직무능력표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한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숙련기술장려의 경우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된다. 반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집체훈련이나 원격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및 인증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b).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정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직업과 노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단의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서 관련 정책이나 연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배경 국민 등 다양한 국민의 복지와 보호, 능력개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2010년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정책 실천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장차관의 지도체계 하에 2실 2국 1단의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a).

2실에는 기획조정실과 청소년가족정책실이, 2국에는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이 있다. 청소년가족정책실에는 청소년정책과과 가족정책관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Ⅱ-9] 참조). 이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핵심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별로 능력개발이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존재한다. 즉, 여성정책국의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관의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가족정책관의 가족정책과, 가족다문화가족과 등이 여성, 청소년, 가족 대상의 평생교육지원 기능을 갖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a).



[그림 Ⅱ-9] 여성가족부의 직제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a)에서 정리.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산하 과의 직무를 정리하면 <표 Ⅱ-12>와 같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각 과별로 다양한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표적으로 여성, 청소년, 가족 대상의 교육 관련 업무가 명시된 부서를 보면, 우선 여성인력개발과는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 능력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여성 멘토링 등의 정책을 맡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a). 여성인력개발과와 함께 여성정책과에 소속된 경력단절여성정책과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소개 센터도 운영, 지원한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관 산하의 학교밖청소년지원과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 인식 개선,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한다.

가족정책관 산하의 가족정책과는 가족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와 함께 지역별 가족지원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 및 감독,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다문화가족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총괄한다.

<표 Ⅱ-12> 여성가족부 평생교육 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과	담당업무	인원
여성인력 개발과	-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8

	–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총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 개발	
경력단절여성 정책과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운영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평가, 종사자 교육 등 기능 활성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창업 연계 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그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관련 사항	10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가족정책과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가족제도·가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3

	- 가정의 날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가족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감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 공동육아눔터 운영 등 돌봄 지원 - 건강가정사 자격 제도 운영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과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법령의 관리·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정책의 홍보 -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운영 - 결혼중개업 등록·신고의 관리 및 피해 예방 -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a)에서 정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대상의 다양성만큼 다양하다. 우선 여성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단체의 교육참여자들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된다. 집합교육은 개별 신청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과 기관·기업·단체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기관교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http://kwla-online.kr)에서 신청·참여한다. 교육대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 기업이나 조직의 중간 및 고위관리자, 지역공동체나 조합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여성리더 등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b).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여성역량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거점교육센터를 모집하여 2020년 현재 9개의 지역거점교육센터(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세종여성,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한국여성수련원(강원))가 정규교

육과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 2020).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취업지원과 함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지원하는 센터로 직영센터 또는 민간위탁센터로 구분된다. 더불어 중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지방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구분된다. 중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2020년 6월 기준 15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전국의 여성일하기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기능, 여성전문인력훈련 심사 및 운영 기능, 새로일하기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한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2020).

청소년 대상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다. 이른바 꿈드림 센터로 불리는 중앙 및 지방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다. 꿈드림 센터는 중앙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꿈드림센터로 구분된다. 중앙지원기관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앙지원기관은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원기관의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에는 학교밖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한 자유공간 설치 지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특성화 캠프 지원, 검정고시 합격자 대상 대입설명회 개최 등이다. 그리고 지방의 꿈드림센터 대상 지원은 종사자 대상 교육, 심층 컨설팅, 학업복귀 및 사업진입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꿈드림 홈페이지, 2020). 지방의 꿈드림 센터는 광역 수준의 시·도 꿈드림센터와 기초수준의 시·군·구 꿈드림센터로 구분된다. 각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 지정, 지도 감독의 역할을 한다. 광역의 꿈드림센터는 기초의 시·군·구 꿈드림센터를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기초의 시·군·구 꿈드림센터는 학교밖청소년의 발굴,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한다(꿈드림 홈페이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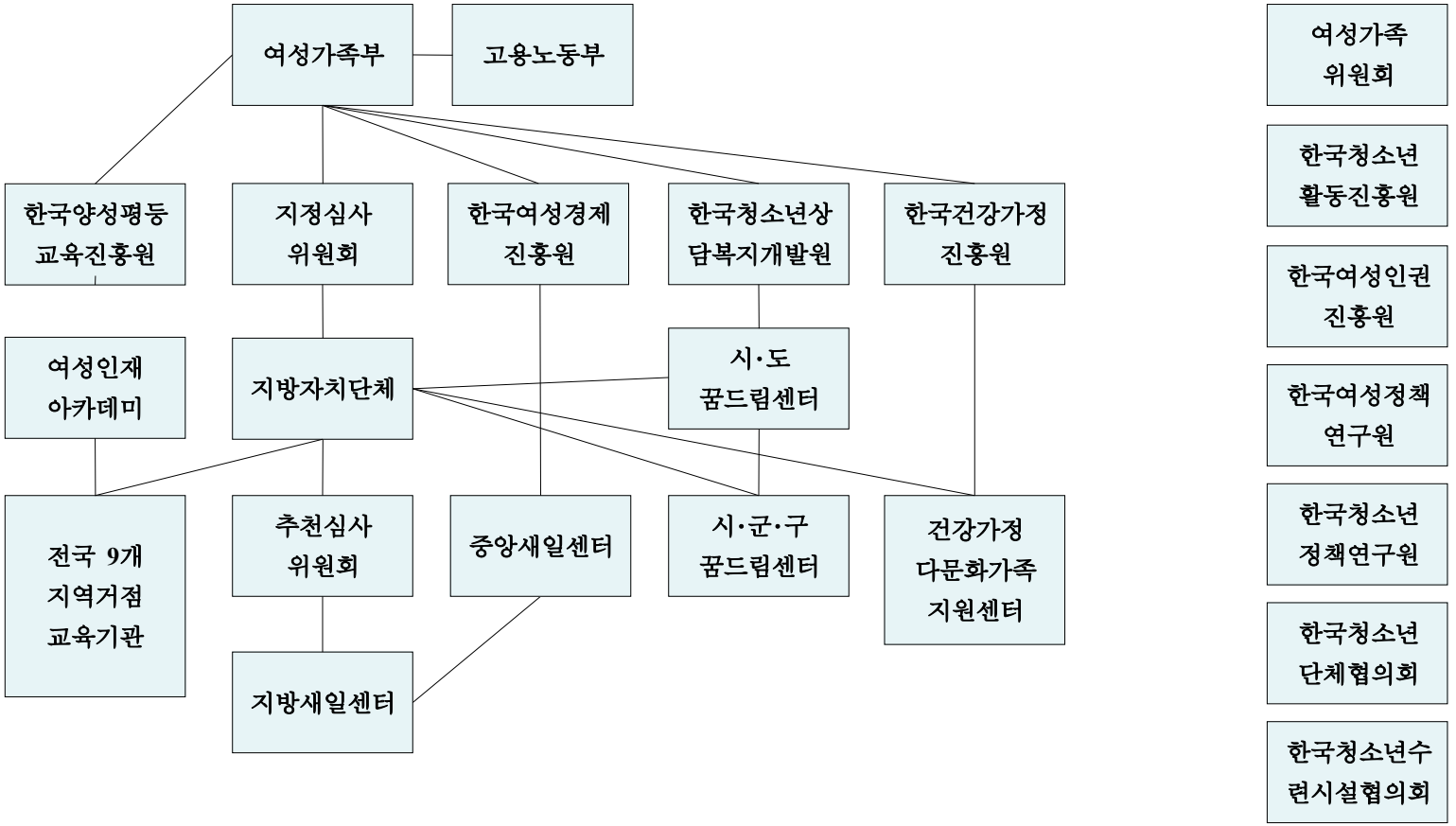
가족 전반이나 다문화가족 등 특수한 상황의 가족단위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관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에서 관할한다. 실제적으로 사업관련 운영과 평가는 한국건강가

정진흥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b).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 관련 지원사업의 다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에는 사업개발 조사·연구, 인적자원역량 강화, 센터관리 및 지원, 특성화사업 관리의 네 가지 영역에서 가족 대상의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과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2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센터는 196개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2020).

<표 Ⅱ-13> 여성가족부의 대상별 평생교육관련 정책

대상	정책	개요
여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미래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원함.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운영
가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서비스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b),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20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2020), 꿈드림 홈페이지(2020)에서 재구성함.



[그림 Ⅱ-10] 여성가족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b)에서 정리.

여성가족부의 평생교육관련 다양한 사업 중 여성, 청소년, 가족의 대표적인 사업인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위의 [그림 Ⅱ-10]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직접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위탁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대부분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거나 유관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청소년담당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사업에 따라 다양하다. 즉, 한 기관에서 사업을 독점하거나 모두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또는 사업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 사업은 교육 참여자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관련 센터나 교육이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여성가족부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서 중간 위치를 점하며 지방수준의 센터 지정이나 관리·감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수준으로 한정되는 경우(여성인재 아카데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초수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감독, 협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는 산하 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위원회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 2020).

-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함
-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 제83조)
- 여성가족부의 예산안·결산 및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 2)
-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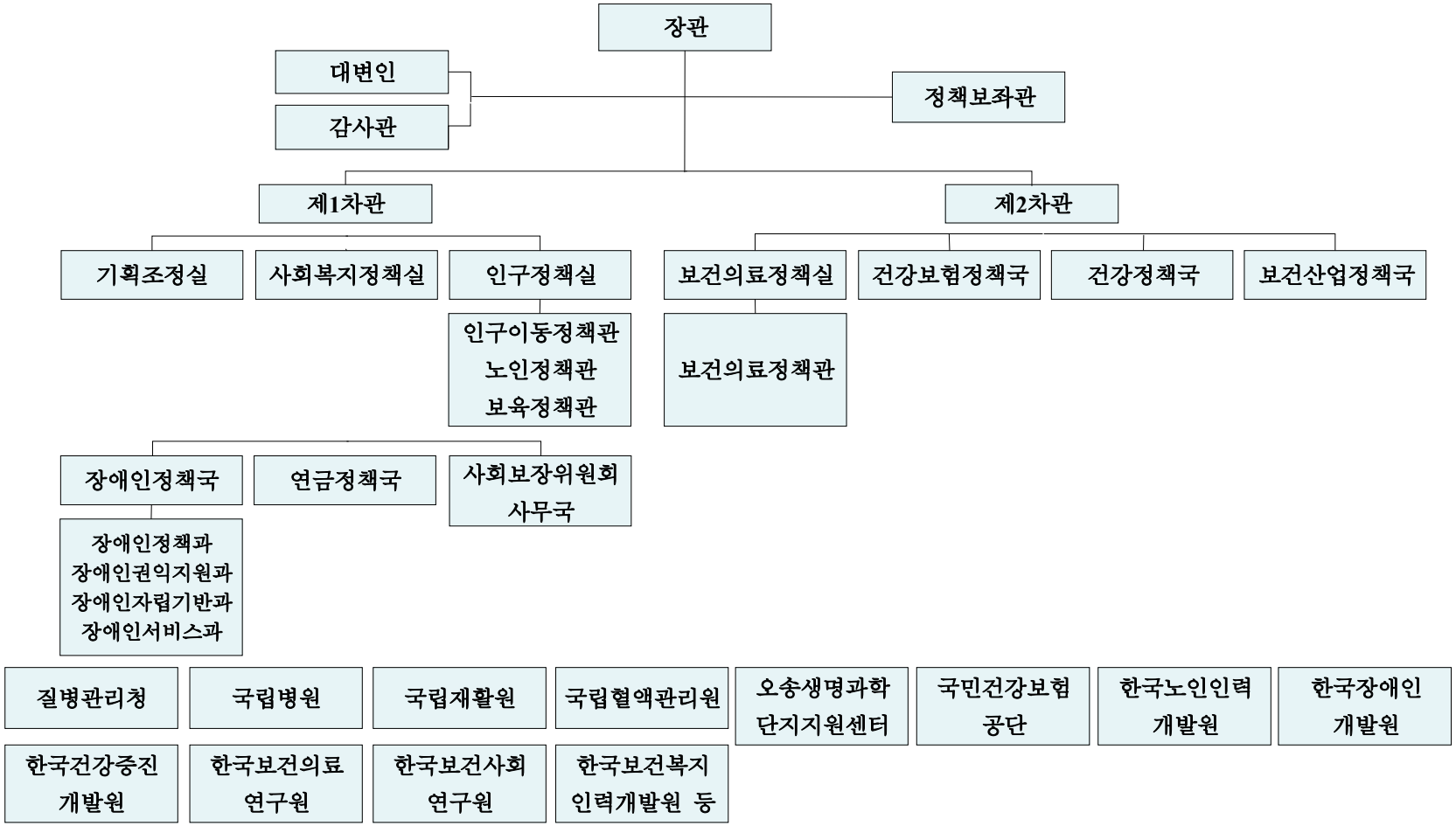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단체로, 국가연구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여성가족부의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수행의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이다. 물론 여성가족부 및 산하 진흥원은 자체 연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서비스와 관련된 자체 연구를 수행하거나 외주를 통하여 연구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948년 사회부로 시작하여 국민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주무부서로 정책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건과 복지의 2개 분야에 직접 관여함에 따라 차관도 1차관과 2차관의 2 트랙 형태로 운영된다(아래 [그림 Ⅱ-11]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다만 평생교육이나 인력개발 등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기능 수행은 장애인이나 보건복지 인력양상 등의 제한된 영역에만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여성, 가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는 다양한 평생교육 기능이 포함된다.

제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아동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이 있다. 이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직제인 인구정책실에는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이 있다. 그리고 노인정책관에는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가 있어서 노인관련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가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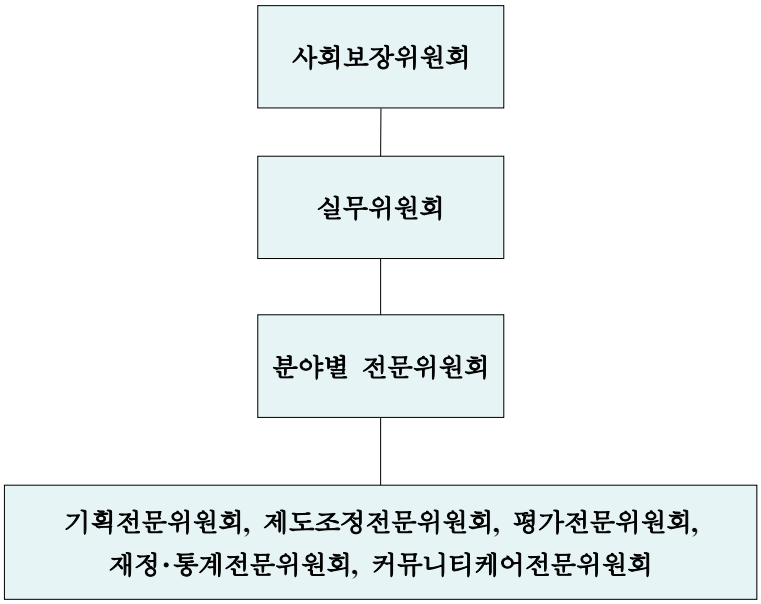
제2차관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있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에는 다시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이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 인재육성이나 계속교육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산하 기관이나 협력기관에는 보건 관련하여 국립병원이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있고, 복지 관련해서는 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그림 Ⅱ-11] 보건복지부의 직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a)에서 정리.

더불어 중앙부처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정부 위원회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분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기획 전문위원회 등 5개의 하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그림 Ⅱ-12] 참조)(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2020).



[그림 Ⅱ-12]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각 위원회별 구성과 역할을 정리하면 <표 Ⅱ-14>와 같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회는 각 부처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하위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실질적 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정부위원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1인이 선임된다(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2020).

전문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분야별 위원회이다. 5개의 전문위원회 중 기획위원회는 복지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 아젠다로서 또는 정책 방안으로서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는 각각의 분야별로 보건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2020).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을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사무국에는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의 3개 과에서 3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표 Ⅱ-14>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과	담당업무	임기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년
실무위원회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년

보건의료정책과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 기획전문위원회: 복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아젠다 설정(보편/선별, 국가와 지자체 역할 분담, 부처 간 산재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유사·중복 조정·연계 등 - 평가전문위원회: 현장 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체감도 분석,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안 제안 등 -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중장기 재정추계 시행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재원조달방안 모색, 사실과 입증된 통계 등에 근거한 정책 개발 -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관련 종합계획 및 선도사업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	2년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사회보장총괄과는 사회보장기본법령관련 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및 재원도달, 사회보장 연구·개발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조정과는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개선, 관련 제도 신설, 사회보장 홍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보장평가과는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행, 현장 모니터링, 사회보장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또한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협력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지원기관인 두드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입양원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기관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보건복지부의 각 부서 중 평생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노인지원과, 장애인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등이다(<표 Ⅱ-15> 참조). 물론 다수의 보건복지부 산하 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지원과, 장애인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는 노인, 장애인, 보건인력 등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노인지원과는 인구정책실의 노인정책관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

회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외에 장사정책,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노인 여가 및 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주관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특히 노인의 일자리 및 여가와 관련된 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관련 교육의 주무부서이다.

장애인정책과는 정애인정책실에 소속된 부서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평가, 장애인 복지 업무,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지원,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진로와 평생교육을 주요 정책목표 및 전략으로 정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b),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주무부서가 장애인정책과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관 산하의 부서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 재정 조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 및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주무부서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인력 공급이나 교육에 대한 계획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전문인 계속교육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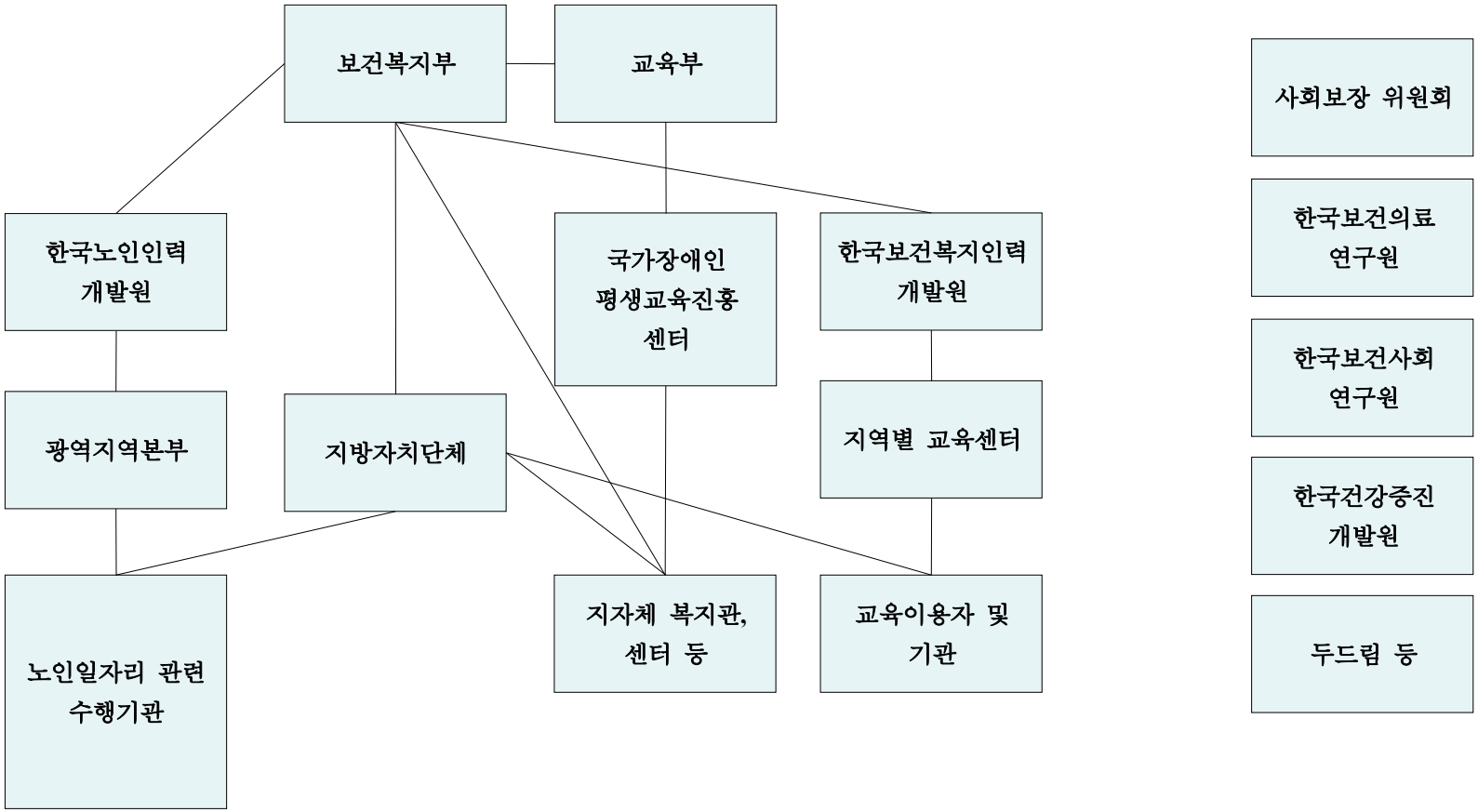
<표 Ⅱ-15> 보건복지부 평생교육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과	담당업무	인원
노인지원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관한 사항 -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 노인 여가·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2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5

	–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1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a)에서 정리.

보건복지부의 평생교육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Ⅱ-13]과 같다. 관련 정책 중 노인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사업 등 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역할과 관련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노인력개발원은 2005년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후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기·인천, 광주·전남, 중부, 강원, 전북, 경남의 10개의 지역본부를 두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2020a).



[그림 Ⅱ-13] 보건복지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b)에서 정리.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교육 측면에서는 60+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60+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종사자 교육의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2020b).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노인 대상의 사업을 실행하는 곳은 노인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이다. 즉,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등이 신청을 받고 선발,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a).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교육에는 중앙수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리고 광역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역본부, 기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추진체계의 주요 구성 주체이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은 보건복지부의 핵심 정책 및 전략으로도 제시된 사항이다. 특히 성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진로 및 교육 기능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장애인을 위한 기회보장으로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b). 다만 구체적으로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체계나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협력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정책연구, 일자리 사업, 편의시설 설계, 장애인식개선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인 두드림은 장애인 대상의 멘토링 사업과 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교육부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련 법 개정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만 파악된다(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2020). 다만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민간법인인 장애인부모연대가 운영하는 경우이고, 그 외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은 보건복지부 관련 시설이다.

보건복지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등의 기능 역시 직업교육이나 계속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교육, 사회복지분야 교육, 보건의료분야 교육, 온라인 교육을 교육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상의 교육 및 민간기관 대상의 교육도 운영한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 따라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 대상자는 보건복지관련 종사자를 넘어서 대국민으로까지 확대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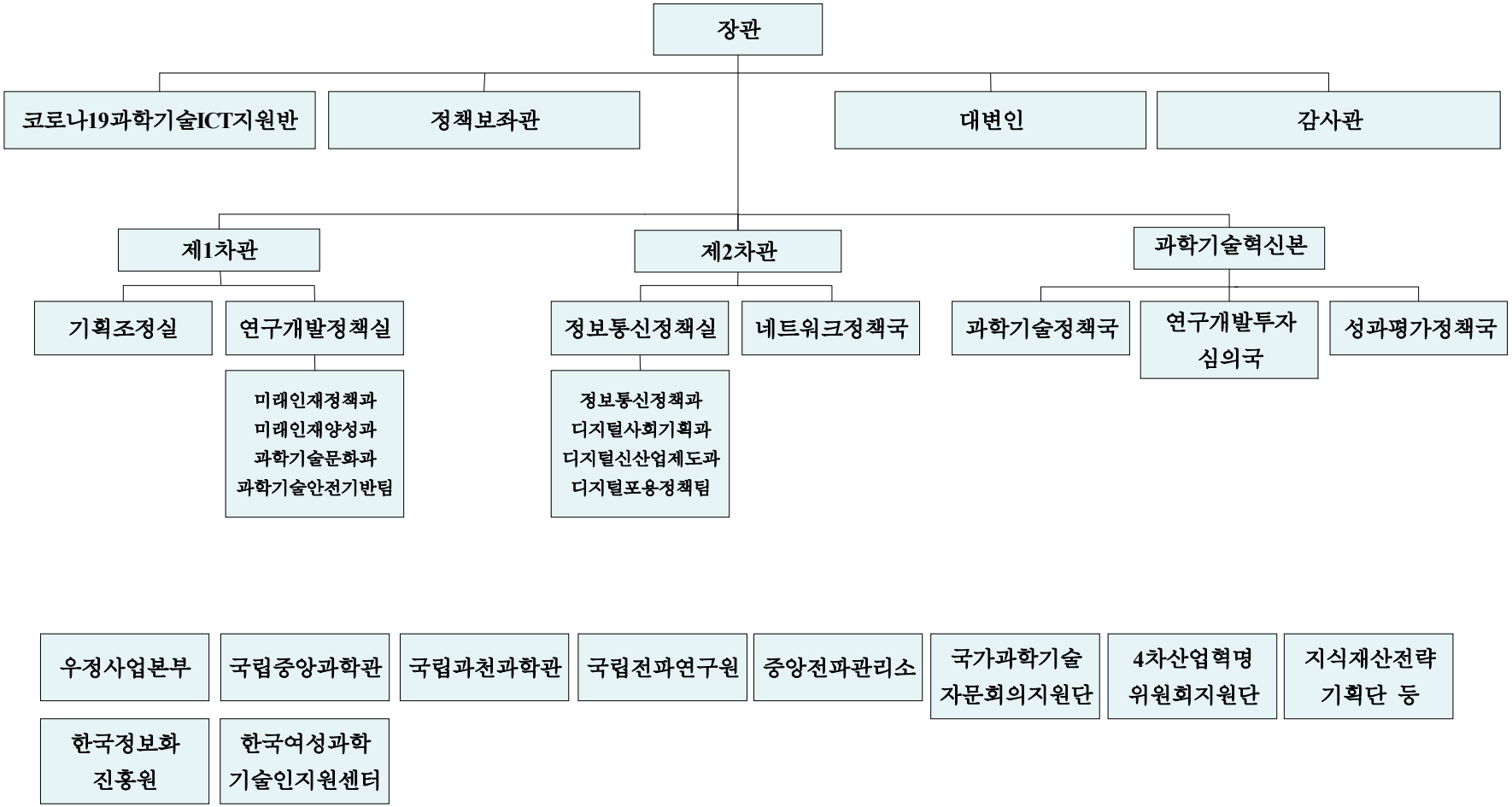
교육영역	대상 및 내용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 기관 교육	- 보건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 등 소속기관의 직급별, 역량별 교육 실시 - 체계적인 직급별 역량 교육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역량 향상 및 핵심 인재 교육 실시
사회복지분야 교육	-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읍·면·동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범위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주요 복지 정책 변화에 민첩한 대응 및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실시 및 인권보호, 학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보건의료분야 교육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질병관리, 감염병 관리, 식의약 안전 등 직무 전문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 유익하고 재미있는 보건복지정책 및 실무 교육 콘텐츠 등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환경과 기회 제공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분야와 통신분야를 통합하여 총괄하는 중앙부처로, 통신분야는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과학분야는 과학기술처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출범하였다. 과학과 통신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평생직업교육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성인의 학습 지원 등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준에서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교육과 같이, 인재육성사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제는 장관 아래에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 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사관을 두고, 2차관 및 1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Ⅱ-14] 참조). 1차관에는 기획조정실과 연구개발정책실의 2실이 있다. 기획조정실에는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이 있고, 연구개발정책실에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미래인재정책국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그림 Ⅱ-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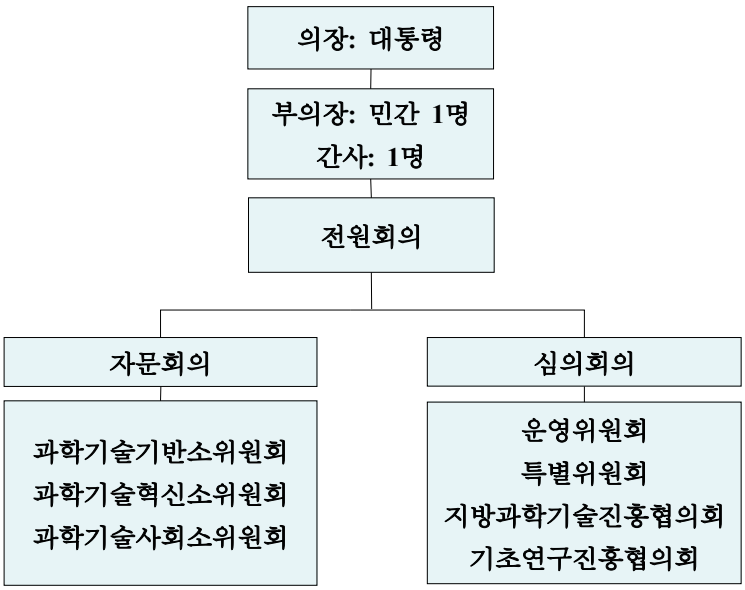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2차관에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의 2실이 있다. 정보통신정책실에는 정보통신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있고, 네트워크정책실에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전파정책국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의 3국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는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고, 별도기구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 있다. 또한 유관기관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워센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관련되는 국가위원회의 지원단이 2개 있다.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이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 위원회로서 직접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위원회 의장이 대통령인 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로 과학기술영역의 최상위 위원회이며 정책기구이다. 부의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2020).



[그림 Ⅱ-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89년부터 설치·운영되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정책 최상의 자문·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Ⅱ-15] 참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의 세 가지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체 회의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및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2020).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심의회의는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회의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외에도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2020).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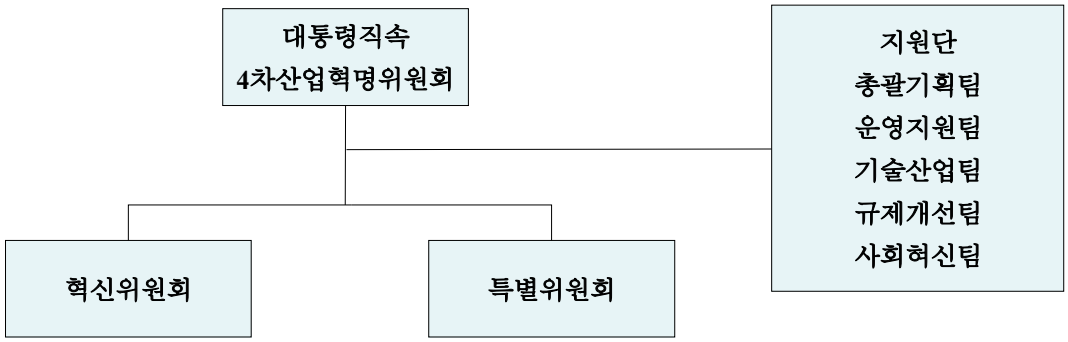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과학기술 분여의 전문가 또는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 분야의 전문가 중에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으로 임기는 1년이다. 정부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으로 구성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위원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다. 2017년 10월에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출범하여, 민간위원 21명, 정부위원 5명, 지원단은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한다. 임기는 1년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2020).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창출 강

화에 관한 사항,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2020).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그림 Ⅱ-16] 참조). 혁신위원회는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영역에서의 혁신정책의 마련과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주제에 대한 위원회로서 기능을 한다. 또 필요한 경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2020).



[그림 Ⅱ-1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다양하지만, 명시적으로 파악되는 대표적인 부서는 과학기술문화과, 디지털포용정책팀, 미래인재양성과이다(<표 Ⅱ-17> 참조). 과학기술문화과는 과학문화행사 및 창의재단 지원, 과학문화산업 혁신 지원 등이 주요 업무인 부서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여 평생교육과 관련성이 높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 경력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및 사업이다. 또한 남성 위주의 과학기술연구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문화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성평등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0).

디지털포용정책팀은 '과' 단위는 아니라 '팀' 단위라서 인원 등의 규모는 작지만,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디지털 포용과 관련되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중·고령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래인재양성과는 청소년 및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카이스트, 과기원, GIST, UNIST, 고등과학원, UST 등을 지원하여 과학인재 육성을 유도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를 선도 및 지원하고,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과학인재가 해외 경험을 갖도록 지원하는 ICT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을 담당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표 Ⅱ-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교육 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과	담당업무	인원
과학기술문화과	- 전문과학관 추진, 운영, 관리, 과학관법·제도 지원 - 과학문화행사, 창의재단 지원 -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 기획 및 실행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11
디지털포용정책팀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 -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 지원	4
미래인재양성과	- 카이스트, 과기원, GIST, UNIST 지원 - 고등과학원, UST 지원 -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지원, 혁신인재 양성 대학 지원 - ICT 글로벌 인재 육성 등	9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2020a)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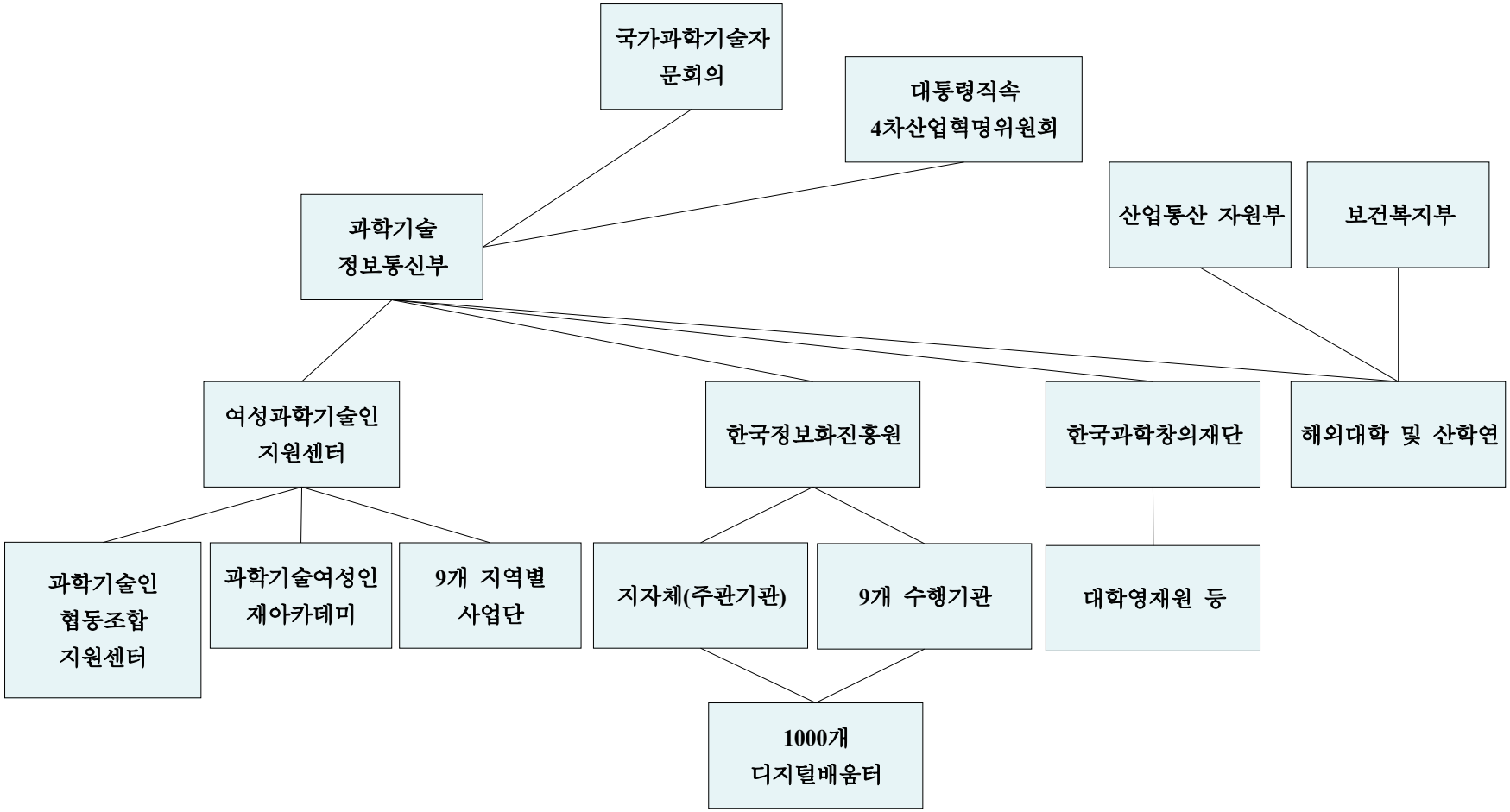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여 관련 추진체계를 파악하였다([그림 Ⅱ-17] 참조). 우선,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 사업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12년 법인설립 및 공익재단으로서 출범하였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여성과학기술인 종합 지원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써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하위에 다양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사업전담 조직으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 개설, 9개 광역 지자체 수준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와 9개 지자체 사업단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0).

한편,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역량 사업은 2020년에 계획이 발표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임팀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을 실제로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 역량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사업 추진체계는 지자체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주관기관이고 전문기관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지자체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SCO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예를 들어, 행정 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생활 SOC의 공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한다. 따라서 생활공간 SOC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주관기관을 지자체로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기관 또는 디지털 관련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9개를 지정하였다(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2020).

한편, 미래인재양성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과학인재 양성 정책은 국내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과 해외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카이스트, 과기원, GIST, UNIST, 고등과학원, UST 등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의 과학인재는 각 소속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육성된다. 후자는 ICT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산지원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국내 추진체계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파견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을 맺는 것도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20).



[그림 Ⅱ-17] 과학기술정통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출처: 과학정보통신부 홈페이지(2020b)에서 정리.

마.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2008년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출범하여, 2014년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다가, 2017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는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 전자 정부 및 정보 보호,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지원,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1a).

행정안전부는 장차관 지도체계 하에 1부, 4실 1국의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1부에는 장관 직제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고, 4실에는 기획조정실, 정부혁신조직실,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1국에는 디지털정부국이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에도 3실(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1국(비상대비정책국)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두고 있다. 또한 임시조직으로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지역균형뉴딜추진단이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1a).

평생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분권실과 안전정책실이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체계 강화, 지역밀착형 문제해결 기반마련을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프로그램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생활, 교통, 범죄, 보건 등의 안전교육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1a).

특히 지방자치분권실에서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을 보면(<표 Ⅱ-18> 참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사업,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참여협업과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안전정책실에서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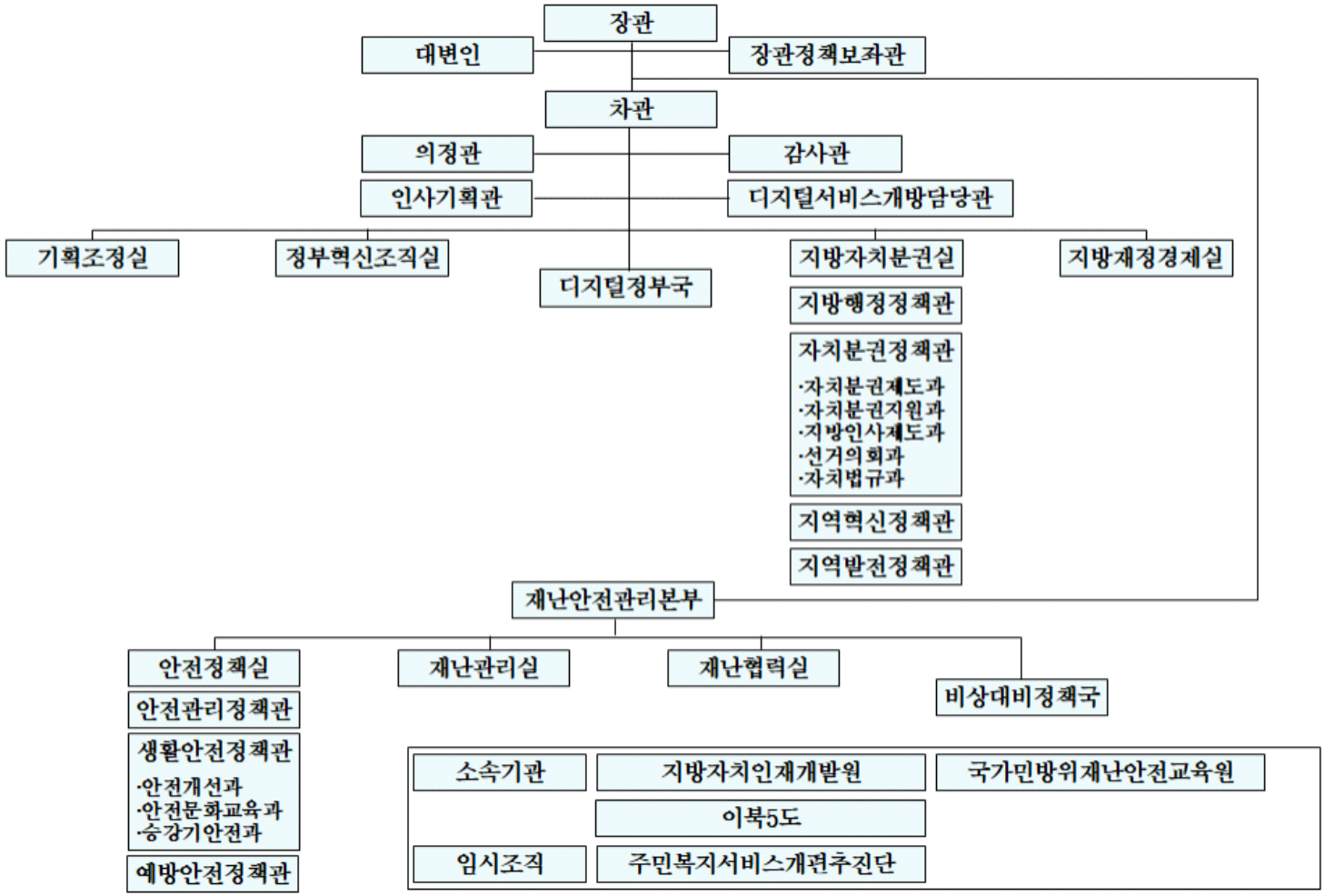
앞서 언급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정착 및 고도화, 지역사회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자치활동의 주체이다(김필두, 최인수, 2018). 2019년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에 3,119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주민편익 도모,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의 교육수준 향상, 지역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1a).

<표 Ⅱ-18> 행정안전부 평생교육 관련 산하 과의 담당업무

과	담당업무	인원
지역공동체과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 사회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제도화 기반 마련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16
주민자치지원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획 및 추진 - 주민자치 교육·컨설팅 지원	7
주민참여협업과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만들기 사업 -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운영	13
안전문화교육과	- 안전교육 콘텐츠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0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21b)에서 정리.



[그림 Ⅱ-18] 행정안전부 조직도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중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는 직업교육이나 계속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다. 먼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1965년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범하여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맞추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2021b).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단순한 직무 관련 지식 연수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개념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뉴노멀 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대상의 직무 전문성 제고, 공직자로서 기본소양 함양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교육운영방향을 살펴보면, 4개의 추진전략(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역량 강화, 국정과제 성과 창출 지원, 자치분권 및 지역 상생 실현, 개방·협력의 열린 교육 활성화)과 12개의 중점과제(뉴노멀 시대를 이끌어갈 '행정혁신' 과정 신설,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공직가치 내재화, 집단지성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및 국제전문가 양성 등)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 교육과정은 장기교육, 기본교육, 시책교육, 전문교육, 역량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장기교육은 고위·고급·중견·여성리더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리더십, 직무가치, 자기개발가치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교육은 중앙·지방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 비대면 소통역량 향상,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우리역사 바로알기, 주민자치 활성화, 체인지메이커 과정, 빅데이터 활용능력 향상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사이버교육은 자체 개발 콘텐츠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방향 학습 K-MOOC 등의 외부 강좌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2021a).

<표 Ⅱ-19>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계획(2021년)

교육과정	주요 대상 및 교육내용
장기교육	- 고위정책(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과정 운영 - 고급리더(지방 4급) 교육과정 운영 - 중견리더(지방 5급) 교육과정 운영 - 글로벌리더(지방 5급 및 지방 6급) 과정 운영 - 여성리더(지방 6급) 교육과정 운영
기본교육	- 5급 승진리더과정 운영 - 신규임용자

시책교육	– 한국판 뉴딜, 혁신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 읍·면·동장 워크숍, 포용을 통한 따뜻한 사회, 지역경제와 일자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민의 안전한 삶
전문교육	– D·N·A 기반 정책역량 향상,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 숙의기반 주민참여, 비대면 소통역량 향상, 국민참여형 정책 발굴, 미래인생설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치유명상교실, 도시재생 뉴딜, 우리역사 바로알기, 지방세무직 기초역량강화, 체인지메이커 과정,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인문기술 융합 리더십 향상, 사회적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 등
글로벌교육	–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 국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역량 교육	– FT 워크숍, 비대면 플랫폼 운영, 국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과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FT 코칭과정, 역량심화과정
지방 공기업	– 지방공기업 리더십 역량강화, 지방공기업 계약·회계실무, 신규자과정,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지방공기업 기획 및 보고서 작성 향상, 지방공기업 경영자과정
사이버교육	– 공직가치, 리더십역량, 직무공통, 직무전문, 어학, 정보화(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 대응전략, 소셜미디어의 활용방법 및 사례, 스마트시티·스마트네이션,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세상 등), 인문소양(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이해,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지역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배우는 역사, 논어와 함께하는 진성리더십, 퇴직 전 알아야 할 자산관리 전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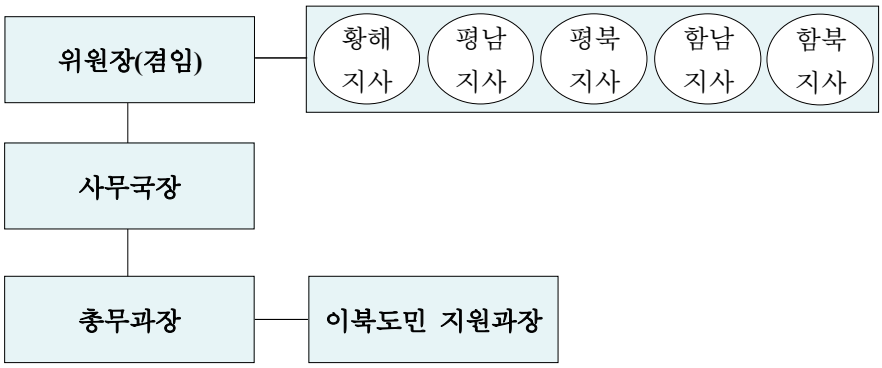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2021a)에서 정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에 있다(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 2021b). 2021년 교육운영방향은 글로벌 선도 재난안전 교육훈련기관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5개 추진방향(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체계 개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전 중심의 전문교육 추진, 재난안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육 선도, 재난안전 체험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글로벌 협력 및 파트너쉽 확대)을 제시하고 있다. 5개 추진방향 중 재난안전 체험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은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체험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 등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내 안전생활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생활안전 담당자 대상의 찾아

가는 재난안전 교실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 2021a).

세부 운영프로그램은 재난안전교육, 재난훈련교육, 비상대비교육, 방호방범 교육, 학교안전교육, 국제교육, 재난안전 체험교육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 교육은 관련 기관 종사자(공무원/공사·공단)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전문과정, 특화과정, 재난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합숙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사이버교육은 재난안전분야(재난관리의 이해, 안전관리, 자연재난, 사회재난, 국제교육), 민방위 분야, 시책·소양 분야로 나누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 2021a).

또한 이북5도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다. 이북5도의 구성은 5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주요 업무는 남북평화시대 이북도민 역할강화, 소통과 화합의 도민사회 구현, 북한이탈주민 포용 확대, 향토문화 계승·발전 지속 추진, 이북5도 기능·역량 강화 및 후계 세대 육성에 있다. 대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2021b).



[그림 Ⅱ-19] 이북5도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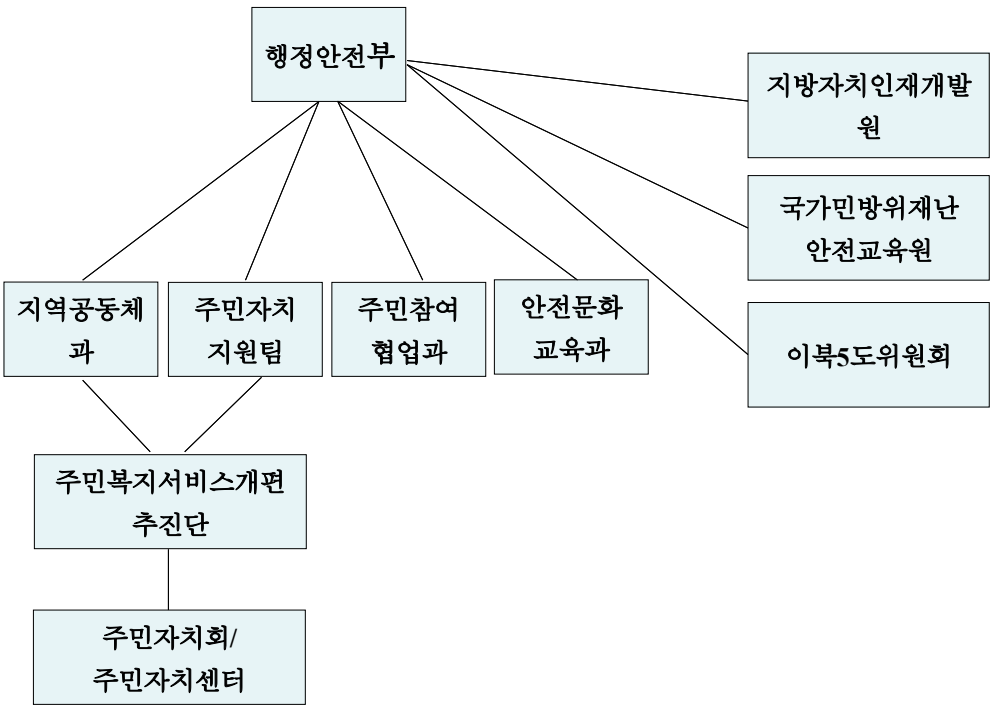
출처: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2020)에서 정리.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도민(실향민)과 교류하게 하여 정서적 동질감과 소속감을 형성함으로써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탈북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등 취업 지원, 이북도민과 탈북민간 가족결연 및 교류 지속화 사업, 이북도민 행사에 탈북민 참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2021a).

<표 Ⅱ-20>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세부 사업	주요 내용
탈북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남한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이북전통문화계승 과정, 한국문화정서 과정 등 운영 - 탈북학생 대상으로 진로 선택, 취업 면접 방법 교육,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 취업 경쟁력 향상 지원 등 후속세대 양성과정을 통한 통일리더로 육성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등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 및 안정적인 직장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이북도민 운영 기업체(의료, 영상, 물류, 사무직 등) 활용한 연수 교육
이북도민과 탈북민간 가족결연 및 교류 지속화 사업	- 이북도민-탈북주민 가족단위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부여 - 이북도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결연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류를 위한 지역문화 탐방 등 지원
이북도민행사에 탈북민 참가 지원 등	- 이북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

출처: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2021a)에서 정리.



[그림 Ⅱ-20] 행정안전부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20b)에서 정리.

바. 시사점

교육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평생교육 관련 부서의 규모 확대 및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 중 유·초·중등 교육의 상당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대학 및 이후 직업교육은 노동부에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다른 부처의 경우 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정책 계획 및 실행을 위해, 대상자별 직제 구성, 사업단 등 별도의 조직 운영 등의 방식으로 성인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 개편에 대응하여 평생교육전담 기능을 수행하는 실을 마련하여 평생교육 영역의 위상과 정책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이다. 평생교육이 시간적 범위에서 평생교육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만, 평생교육 정책이나 사업에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관련되어 전문가, 단체, 기관 등이 관여하게 된다. 이에 평생교육의 이념이나 포괄적 특성을 수용하지만, 성인교육으로 표현하여 다른 영역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관련하여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분명한 범위와 틀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성인교육으로 바꿔서 정책 및 부처 명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성인교육정책실'을 교육부 하위부서에 신설하고, '성인교육정책실' 아래에 성인교육기획과, 성인진로교육과, 취약성인교육정책과 등 성인교육으로 전문화된 직제를 구성하는 것이 추천된다.

둘째,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조직 구성 및 교육부 대응 조직 구성이 요청된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평생교육 관련 조직이 있더라도 평생교육의 생애 전 단계 포함 개념으로 인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등이 포함되어 정작 평생교육 관련 전문 정책 및 자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교육부 및 국가교육회의는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부문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과' 수준의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부처에서도 대통령직속 또는 유사수준의 위원회를 지원하고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를 묶어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부처를 보면,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 다문화교육은 여성가족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분되고 또 전문적 정책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교육 정책 중 평생교육은 국가 전체의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일치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단지 여러 부처의 정책을 모아놓기만 하거나 교육부 중심의 정책 계획만 모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실제적인 부처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국가 수준의 비전과 방향으로 적합화하고 부처별 장점을 살려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또 협력할 사항은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의 협력과 역할 분할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 평생교육 중앙협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국가 정책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면 국무총리가 직접 관련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 계획 및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칭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와 가칭 'A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협의회'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가칭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는 전국 수준에서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계기관 협의회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생교육 관련 대표기관이 모여서 전국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현재 전국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나 공식적 추진체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진체계로 포함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가칭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는 의견의 제시뿐만 아니라 광역시·도가 공동사업을 구상하여 예산을 공동부담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사 협의회의 운영 지원,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운영, 평생교육 데이터 추가 수집 지원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가칭 'A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협의회'는 특정 광역시·도 수준에서 광역평생교육 관계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 모여서 해당 광역시·도의 평생교육 진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광역시·도 수준에서 광역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기초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이 분리되고 서로 협의 및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A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를 포함하는 중앙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을 운영하고, 광역시·도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또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지원 방식이 문해교육, 취약계층 대상 교육 등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의 형태이다. 사업비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고 특수한 평생교육 정책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의도한 평생교육계획이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유의미하게 전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비만이 아니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지 센터나 기구를 지정하는 공문 발행의 수준으로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을 유도하려는 방식은 사라져야할 것이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의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교육부 등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청 등 교육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부처의 경우 자체 지방 행정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물론 여기에 지자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방 행정 추진체계인 교육청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변화시키고,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자원을 강화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자원인 각종 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이 일반행정의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행정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사업의 계획과 추진 등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해당 기관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그

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학습관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법인으로 설립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구가 전문성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사업 계획과 실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행정은 예산 지원, 감독 등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

여덟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진흥원 또는 기구의 설립, 운영, 위탁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총괄적 기능, 예를 들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총괄과 중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은 교육청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타기관으로 위탁하거나 공동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기능 과부화 해소 및 전문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변화 요구

가. 코로나 팬데믹과 에듀테크 발전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즉 '언택트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다. 언택트 사회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이용 급증을 통한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근무, 비대면 의료, 비대면 학습, 비대면 문화공연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경기연구원(2020)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직장인은 최근까지 1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 4월 20일 전국 초중고 학생 540만 명 대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여, 실시간 수업, 동영상 녹화, EBS 콘텐츠 시청 등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한시적이지만 의료기관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원격의료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 의료, 교육, 문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고 디지털 기술기반의 삶의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등의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변화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과 그 변화의 추진동력이 되어준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변혁시키는 계기임에 틀림없다(최운실 등, 2020).

따라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앞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소비, 교육, 업무, 여가, 건강관리 등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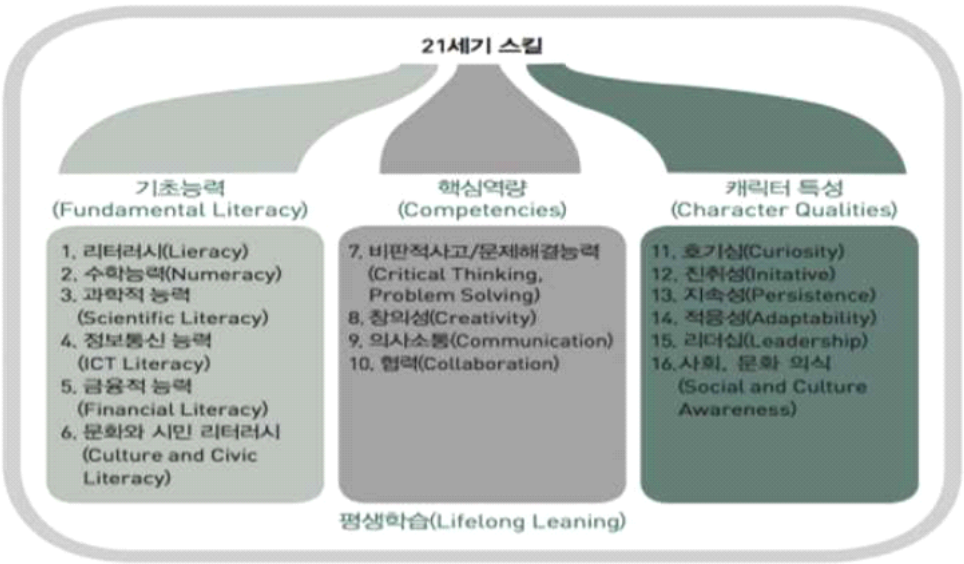
특히, 교육 분야는 원격학습이 확산됨에 따라 에듀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실시간·소통·체감형 학습 콘텐츠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에듀테크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3,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이러닝 산업은 2022년 2천 4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경기연구원, 2020). 이처럼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의 가상·증강현실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면 2008년까지 게임을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전 산업 분야와 융합되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이지혜, 2019). 그 원인으로는 기존 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콘텐츠 개발의 부재, 전문가 교육의 부족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에듀테크를 접목한 고품질의 평생교육 콘텐츠가 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스템 및 정책에 융화될 수 있도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로 실시되었던 교육들이 기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체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조금씩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온·오프라인 교육의 접목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확대는 인적, 물적 자원을 그나마 확보한 일부 평생교육기관에 매우 한정된 이야기이다. 지역 간, 자원 간 불평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나. 미래역량의 변화와 열린 평생교육 확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다변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메타분석을 통해 21세기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16개의 미래 핵심역량 모델을 도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터러시, 수학능력, 과학적 능력, 정보통신 능력, 금융적 능력, 문화와 시민 리터러시를 포함한 6가지의 기초능력(fundamental literacy), 비판적사고/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을 포함한 4가지의 핵심역량(competencies), 호기심, 진취성, 지속성, 적응성, 리더십, 사회/문화 의식을 포함한 5가지의 캐릭터 특성(character qualities, 또는 인성자질역량)을 제시하고 있다(WEF, 2015).



[그림 Ⅱ-21] 21세기 교육의 미래 핵심역량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5: 3), New Visions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이처럼 미래역량 모델에서 제시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기초적인 역량과 자질부터 시작해서 변화지향적이며 창조적 역량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 개인은 과거보다 점점 더 다양하고

어려운 역량들을 요구받게 되며,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교육의 담론에 있어서도 과거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의 범주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 평생교육 패러다임이 더욱 강조되고 확대될 것이라 기대된다(최운실 등, 2020). 과거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대신 성인기, 노년기 등을 포함한 전 생애 연령에 걸친 학습에 대한 투자가 고르게 일어날 것이며, 정형화된 수업 커리큘럼과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학교교육의 형태는 축소되는 대신,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선택이 반영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열린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운실 등,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 및 대책은 거시적 변화에 대한 교육전반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채 학교교육에 국한되고 있다. 김상미(2020)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기사 키워드 및 주요 이슈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온라인 수업과 강의, 2) 학습 공백 및 결손 가정, 3) 교육서비스와 플랫폼, 4) 개학 및 개강 연기 등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학교교육 중심의 온라인 교육의 확대 및 학령기 아동의 교육 공백 해결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인재의 역량 변화,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는 평생교육이 지금과 같은 평생학습에 그치지 않고 열린 평생교육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은 ICT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과 직업교육과 연계·융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국민이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필요한 핵심역량을 학습하고,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 및 직업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금홍섭, 2020).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조정·연계하고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 국민이 부처 내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다. 일과 학습의 일상화: 상시학습체제에 대한 요구

열린 평생교육의 확대는 앞서 언급한 에듀테크의 확산으로 교육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무너짐으로써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교육에서는 학교라는 장소와 학령기라는 학습의 시기가 주어졌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의 편의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학습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상시학습으로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조직(또는 일터)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같은

조직에서도 전통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프라인 교육 중심의 '업무 따로 교육 따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유영만 등, 2006).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어렵게 되자, 생존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중심의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학습 방법을 가장 빠르게 모색한 곳이 바로 조직이었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분기별 교육이 평균 7회 이상(33.5%), 20시간 이상(32.1%) 진행되었던 것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집합교육이 대폭 축소되고(2.4%), 온라인 교육이 현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76.4%).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변화추세와도 동일하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네스코(UNESCO) 그리고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 직업교육훈련 제공자, 노동 및 교육부의 담당자, 고용주 및 근로자 단체 126개국 총 1,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4%가 원격(fully remote)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16%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취소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2016년 기준 만 25~65세 성인 10명 중 3.5명만이 평생학습에 참여). 또한 학습 참여율에 비해 학습시간 또한 매우 저조하여 실제 학습참여율이 하루 평균 3~11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연령대 중 40대~50대 중장년층이 은퇴로 인한 직업전환 및 재취업 등 삶의 전환기를 맞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학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8).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기업 전체 고용의 87.7%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청, 2010), 대기업 근로자의 인력개발 활동 참여율은 88%인데 반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9.8%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열악한 상황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되며, 또한 업무시간 중 인력개발 활동 참여에 따른 업무 중단, 업무 대체로 인한 생산차질 등의 손실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이다(김한준, 이기성, 201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상시학습체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가상 교육훈련(virtual training),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등 온라인 중심 또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네크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모델 및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업을 통해 공동의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육의 방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고민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훈련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생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현재 성인학습자들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다. 2019년 직종별 직업훈련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미용, 음식, 돌봄서비스, 경영행정사무서비스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제조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기계설치 정비 생산직 등과 훈련 분야는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력 양성을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계 및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직장인들의 비대면 학습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형태로 더욱 확산될 것이며,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변화되는 일자리 수요에 따른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즉, '일과 후 학습'이 아닌 '일과 학습'이 삶 속에서 함께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변모되어, 결국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이슈와 더불어 일과 학습의 균형(work-learning balance)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오호영(2018)에 따르면, 과거의 평생교육의 경로는 '학업-취업-은퇴'의 생애주기에 따른 직선형 경로에서 발생했다면, 앞으로는'학습-노동-여가'가 전 생애주기에서 병존하는 복합형 경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과 노동, 여가가 병존하는 삶의 형태를 지원하는 데에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 개발 및 전파, 그리고 새로운 교육수요 발굴과 충족이라는 평생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지자체 간,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제도간 연계를 구축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라. 학습자원 공유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technology)이 아니라 인간(humanity)'임을 강조하고 있다(Schwab, 2016). 즉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기술의 변화는 인류에게 삶의 질 제고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 특징인 인간 중심의 인간 주도형 혁명이 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술 발전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반의 분절, 고립, 배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의 활용이 심화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학력, 소득, 지역 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평생교육 참여율 및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2017년 학력 및 소득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의 격차를 살펴보면, 소득 500만원 이상 성인의 참여율이 42.3%인데 비해 150만원 미만의 성인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로 조사 되었으며,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의 성인은 44.2%인데 반해 중졸이하 성인은 23%로 역시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이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계층 간 평생학습 불평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고립과 배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성인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활용한 체감형 시뮬레이션 교육은 고가의 장비 구입이나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게임 기반의 학습 플랫폼, 양방향 소통이나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이 가능한 학습 플랫폼 등은 학습의 재미와 즐거움뿐 아니라 학습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평생교육에서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의 고품질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학습플랫폼 구축을 현재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체적인 인적·물적 자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교육 인프라(온라인 플랫폼)를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교육서비스 구축이 요구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플랫폼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는 K-MOOC, HRD-Net, 지자체 다모아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합·연계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습이력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학점 학위취득이나 취업 및 고용지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최하영, 2021). 그러나 이러한 온국민 평생교육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one-stop 교육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 부처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훈련 관련 데이터가 모두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주도하고 관리·지원할 뿐 아니라 각 부처 및 기관 마다의 중복투자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기구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주도의 대국민 평생교육 통합서비스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평생교육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교육인프라는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진 지역 내 대학, 양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교적 빠르게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조이현, 2021).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평생교육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유경제 중심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학습은 지식 콘텐츠의 소유가 아닌 '공유자원으로서의 지식' 관점으로 재개념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김도헌, 2020). 따라서 지식의 연결성을 촉진하는 통합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현재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도전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명확한 추진체계의 정비 및 전담기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인 긴밀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자체 평생교육기관-대학-민간기업-기타공공교육시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또한 촘촘히 구축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 시사점

지금까지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평생교육 변화와 관련된 거시적 관점에서의 시대적 요구사항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이후 더디게 진행되었던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삶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AI, 빅데이터, 가상 및 증강현실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성과 향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에듀테크 기반의 고품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인재의 역량 변화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 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은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패러다임을 넘어 열린 평생교육 패러다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은 국민들의 디지털 기반의 삶의 질 향상과 직업교육과 연계·융합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조정·연계하여 온 국민이 부처 내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상시학습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과 후 학습'이 아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상시학습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온라인 중심 또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모델 및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업을 통해 공동의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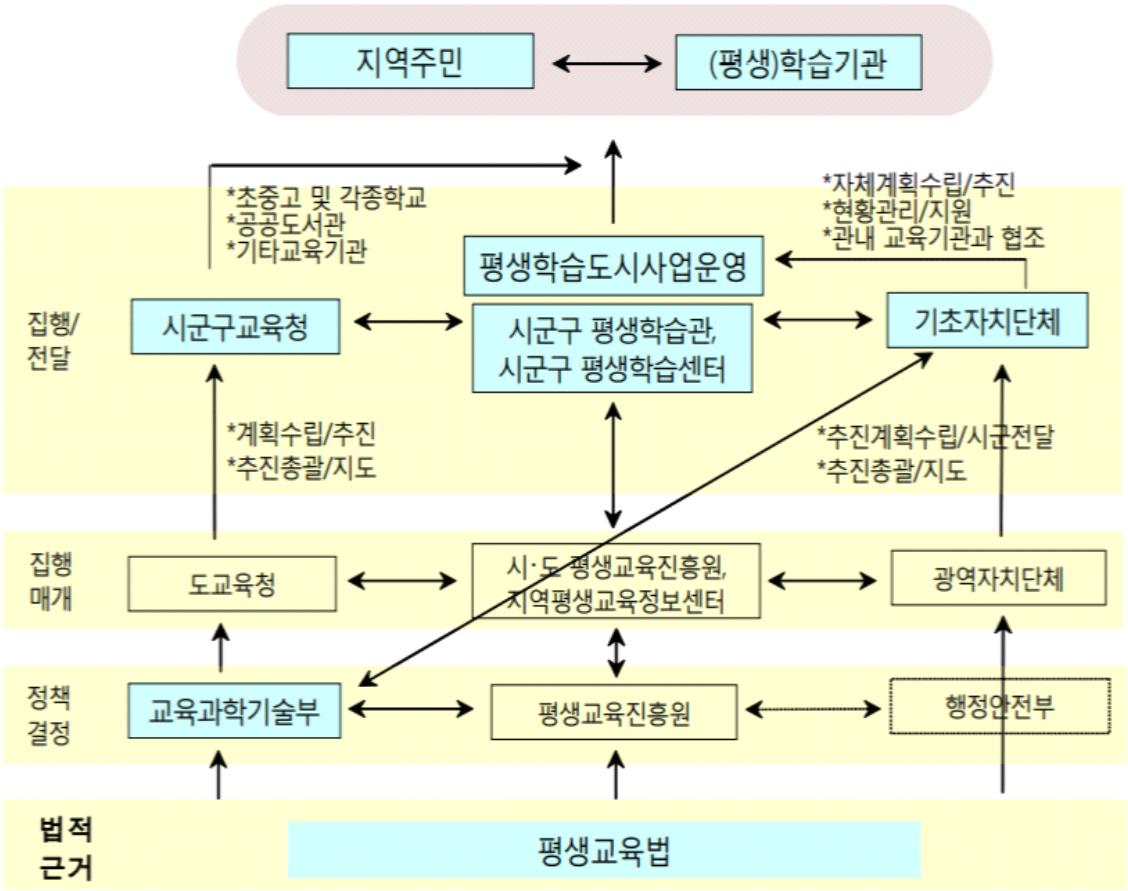
넷째, 디지털기술과 IT 인프라 기반의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계층간 평생학습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국민 온라인 평생교육 통합서비스(가칭 온국민평생배움터)와 같이 학력, 소득, 지역의 격차를 넘어 동등하게 누구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기반 one-stop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훈련 관련 데이터가 모두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주도하고 관리·지원할 컨트롤타워 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지자체 평생교육기관-대학-민간기업-기타공공교육기관 등의 수평적 네트워크 통한 활발한 교육 인프라 공유 또한 촉진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4.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미시적 변화 요구

가. 미시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 간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역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상호, 박수정, 2019).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평생학습의 실행조직인 시·도 평생교육센터, 시·군·구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와 지정 운영을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여 교육부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의 교육부보다 지역의 일반행정 조직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변경되었다([그림 Ⅱ-21] 참조). 최근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국가-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 조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 요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재호, 이승종, 2012). 첫째,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한 결과,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방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연계가 강화되었고,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형성되었다(아래 [그림 Ⅱ-22] 참조). 셋째, 평생학습도시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할 공식적인 행정지원조직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로 등장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재정적, 인적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이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그 결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가 증대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림 Ⅱ-22]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출처: 서재호, 이승종(2012).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연구: 교육과 자치의 조화 관점에서 본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4), 133-157. p. 143.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해 수준의 차이, 평생교육 참여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넘어 학습-고용-복지 순환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박인섭 등, 2018).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포스트코로나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재육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의 연계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계획과 실천이 가능한 기구 또는 추진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조대연 등, 2017).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이후 제기되고 있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선행연구에 나타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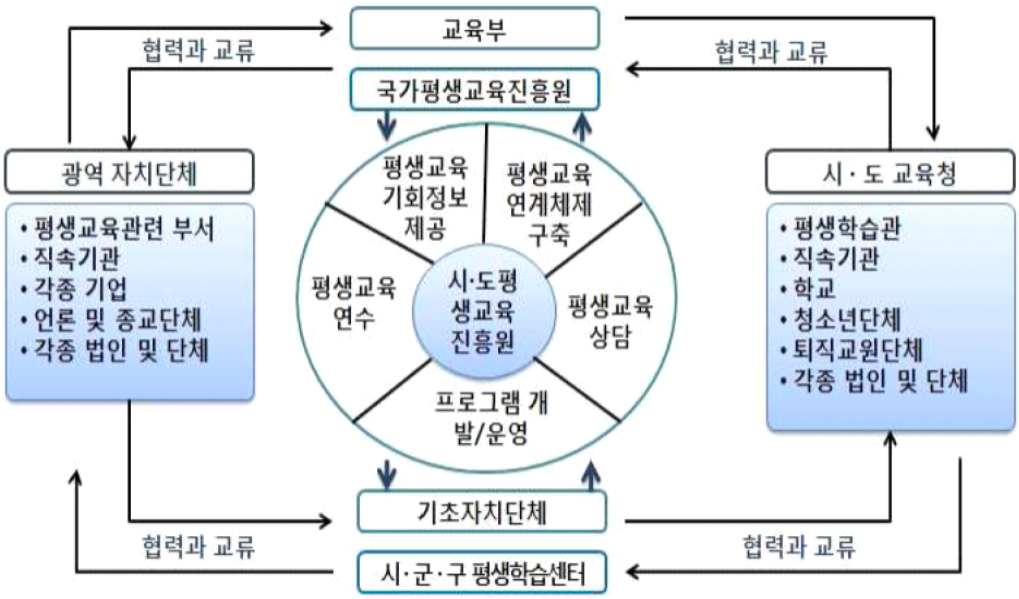
연구	문제점	개선 방향
고영상 등 (2011)	- 「평생교육법」에서는 지방평생교육 사항을 시·도단체장은 교육감과 시군구 단체장은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일반행정(시·도)과 교육행정(교육청) 간 적극적 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책임회피, 상호 불이해가 발생함 - 지방의 평생교육관계기관들은 평생교육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 - 현행 제도는 일반행정이 지방평생교육진흥의 책무를 가지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시군구내 평생교육조직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이의 관계, 시·도 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이 발생함	- 광역 단위인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기초 단위인 시군구청이 단위와 기능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독자적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 독자성과 함께 지자체 간 상호협조가 필요함
변종임 등 (2011)	- 광역단위에 실제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책무로 하는 기구 설치 없이, 선별적 기초단위에 평생학습센터와 같은 실행 전담기구만 설치된 상태임	- 광역 시·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광역진흥원의 설립 등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되는 전달체계로서의 추진체제 구축과 재정 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한숭희 등 (2011)	- 대학의 역할 전환 지체 - 교육체계 간 연계 미흡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산하에 직업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함 -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평생직업학습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기본법」을 통합 발전시킨 ‘평생학습지원법’ 제정이 필요함
양은아 (2013)	- 울산시 각 구/군별 평생교육 전담부서의 위상 및 조직구성 방식을 검토해보면, 복층의 추진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이들 아래층의 추진체계가 통일적이지 않음 - 구/군간 시설의 격차가 큼 -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학습)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평생학습 정책실행을 위한 에이전트를 명확히 하고, 이들 간의 핵심적 연결망을 조직하는 광역평생학습도시의 통일된 행정망이 필요함 - 도시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광역 단위 주체와 독자적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조건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별 특색에 맞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을 주도하는 행정적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각 주체가 고유한 권한과 영역 내에서

	- 5개 구/군에서 여러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구에서 설정한 학습도시의 비전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피드백 체계가 부족함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제공 의지가 필요함
권인탁 (2014)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법령상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형식적인 연계 조항으로 존재할 뿐 실제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다른 행정체제 상에서 연계·협력 체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 자체에 한계가 존재함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교육협의회가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일반자치단체가 지역평생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법령 조항이 수정되어야 하고, 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법령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평생교육추진 전담기구를 분리·설치할 필요가 있음
대구평생교육진흥원 (2014)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형식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시·도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상 한계가 존재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함 - 2007년에 일반행정으로 그리고 일원화된 평생교육 추진체계로 정비되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하게 법이나 조례 등에서부터 각종 사업까지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광역시·도의 해당부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함(예를 들어, 시·도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역할 강화 또는 전문적 심의와 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등)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청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이정석, 이충렬 (2014)	- 지자체의 진흥원에 대한 신규 역할부여 및 권한위양이 되지 않음.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한정된 역할만 수행 중임	- 광역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컨트롤하고, 관련 연구와 조사, 프로그램 개발, 현안과제 추진 등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요구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화를 통한 독립적인 사업 수행 권한을 부여해야 함
장희영 (2014)	- 지방자치단체별 환경과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 관심도와 필요성, 예산 편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 - 적은 예산으로 인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부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함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함.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협의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평생교육법을 개정을 통해 이원화 되어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 담당부서와 전담기관을 일원화하여 평생교육 정책, 예산을 통합하여야 함

	- 평생교육기관 이외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되지 않은 채 지자체별, 기관별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음	
전기창 (2015)	-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추진의지가 미흡함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평생교육 참여 조직 간에 연계·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박인섭 등 (2018)	- 지자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예산, 인프라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정책결정권자, 사업 담당자, 전산직 등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보망 운영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제공 등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함
이상호, 박수정 (2019)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평생교육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불완전한 정책 추진체제에 머물러 있음 -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용도에 대한 기관별 차이가 존재함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문유석 (2020)	- 국가 전반적인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구상이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위임 사무 집행 기구 역할만 수행함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평생교육정책 협력체제가 미비함	-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정책 체계 구성이 필요함 - 지역 차원의 (대학과)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박병영, 이정우 (2020)	- 평생교육의 공급 체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분리로 인한 문제가 있음 - 고용보험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의 한계가 존재함 - 일반대학과는 분리되어 운영되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체계의 한계가 존재함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분리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함 - 부처 간 연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형태의 방식을 검토해야 함

위의 <표 Ⅱ-21>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 전담, 심의·협의 기구 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영상 등(2011)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행 제도상 일반행정이 지

방평생교육진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기관 간의 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 협의회 등 심의·협의 기구는 법령상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권인탁, 2014; 대구평생교육진흥원, 2014).



[그림 Ⅱ-2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연계 체제

출처: 권인탁(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수준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분석과 발전과제. 교육종합연구, 12(1), 129-157. p. 14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연계 체제를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체제를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위의 [그림 Ⅱ-23]과 같다. 권인탁(2014)에 따르면, 법령상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생교육협의회는 행정적 협의나 조정이 불가능하며, 지역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심의와 총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령상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형식적인 연계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전기창, 2015),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적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인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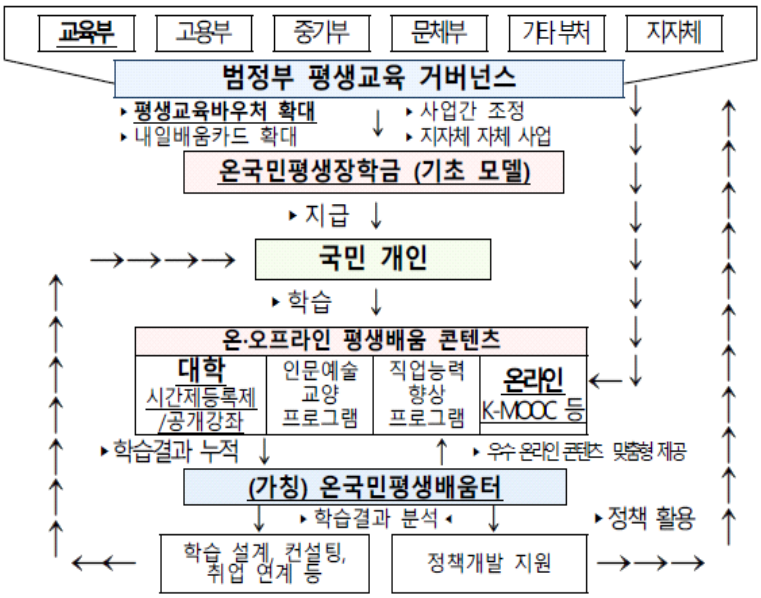
했으며(장희영, 2014), 경상북도 역시 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전기창, 2015). 이는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학습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비교적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운영 계획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양은아, 2013). 이로 인해 예산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인프라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박인섭 등, 2018),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어 사업 내용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영, 2014).

셋째,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속한 기구, 기관 간의 연계 부족이다. 한숭희 등(2011)에서도 교육체계 간의 연계 부족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다른 행정체제 상에 존재해 연계, 협력이 어렵다고 제시했다(권인탁, 2014). 이렇듯 다양한 평생교육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나 의사소통 체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각종 정보의 공유 또는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차원의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전기창, 2015). 평생교육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직업훈련기관,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가 되지 않아 기관별로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장희영, 2014). 또한,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도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상호, 박수정, 2019). 이러한 네트워크 활용의 어려움과 파트너십의 부재는 행정기구의 이원화와 전담 기구의 권한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정석, 이충렬, 2014).

넷째, 평생교육 추진체계 상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자체 진흥원에는 새로운 역할부여나 권한이양이 되지 않아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 중이며(이정석, 이충렬, 2014),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 집행 기구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유석, 2020).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분리된 체계에서 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박병영, 이정우, 2020). 손미정(2018)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의 직업교육 관련 법률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어 유사 사업이 중복되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양은아, 2013). 이상호와 박수정(2019)은 이렇듯 '불완전한 평생교육정책 추진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평생교육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지역과 계층 간의 평생교육 격차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국가 전반적인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구상의 미흡함에서 오는 것이며(문유석, 2020), 지역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추진체계를 중심

으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상호, 박수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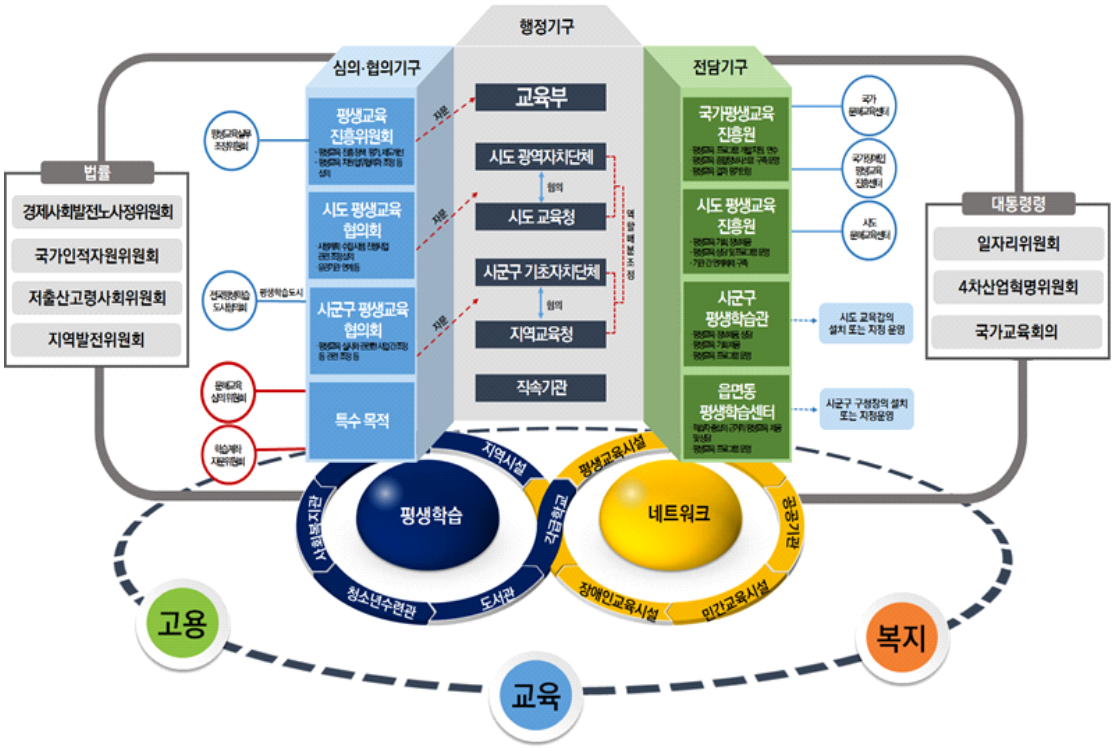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기존의 학교 체제를 넘어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전국민의 학습이 전생애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한다(한숭희 등, 2011). 이에 발맞춰 지역 평생학습정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 대응과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적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박인섭 등, 2018). 이를 위해 첫째, 국가차원의 새로운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형태의 범부처 연계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병영, 이정우, 2020). 아래 [그림 Ⅱ-24]와 같이 교육부 주관으로 각 부처 간의 사업을 조정, 연계하면 부처 간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 전략을 통해 정책 연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활성화를 바탕으로 교육과 고용 연계 서비스 체계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림 Ⅱ-24] 온누리평생배움 추진체계도(안)

출처: 교육부(2021).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 23.

둘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정보망 운영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 전담기구로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박인섭 등, 2018). 또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보다 긴밀한 하게 협력, 지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아래 [그림 Ⅱ-25] 참조).



[그림 Ⅱ-25] 평생학습 추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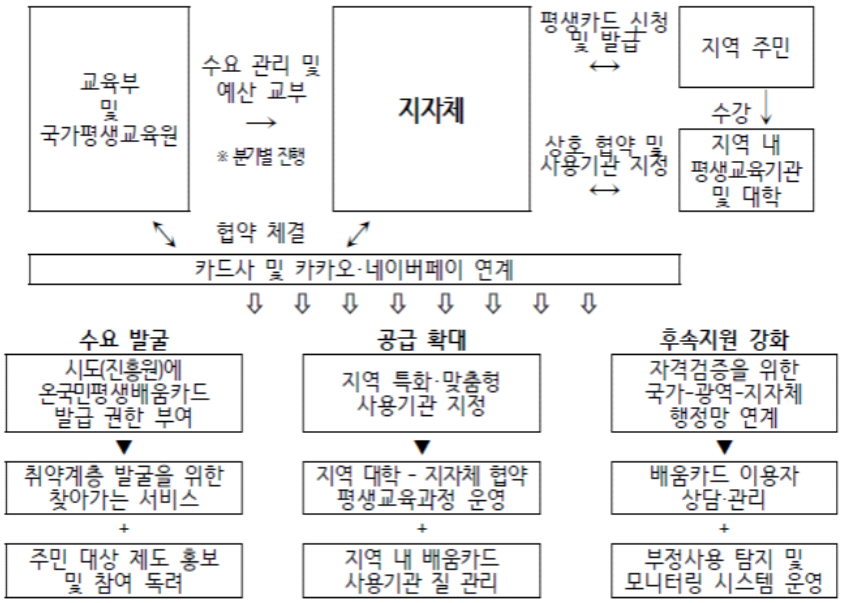
출처: 김태준 등(202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68.

셋째, 광역 차원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정석, 이충렬, 2014).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한 축인 광역단위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 책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또한 광역 차원에서는 평생교육 전담 기구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권인탁, 2014). 더불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장희영, 2014). 아래 [그림 Ⅱ-26]에서도 행정기구, 전담기구, 심의·협의 기구의 역할을 기관별로 명확히 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서로 간의 연계 강화를 강조한 형태의 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 특화 또는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그림 Ⅱ-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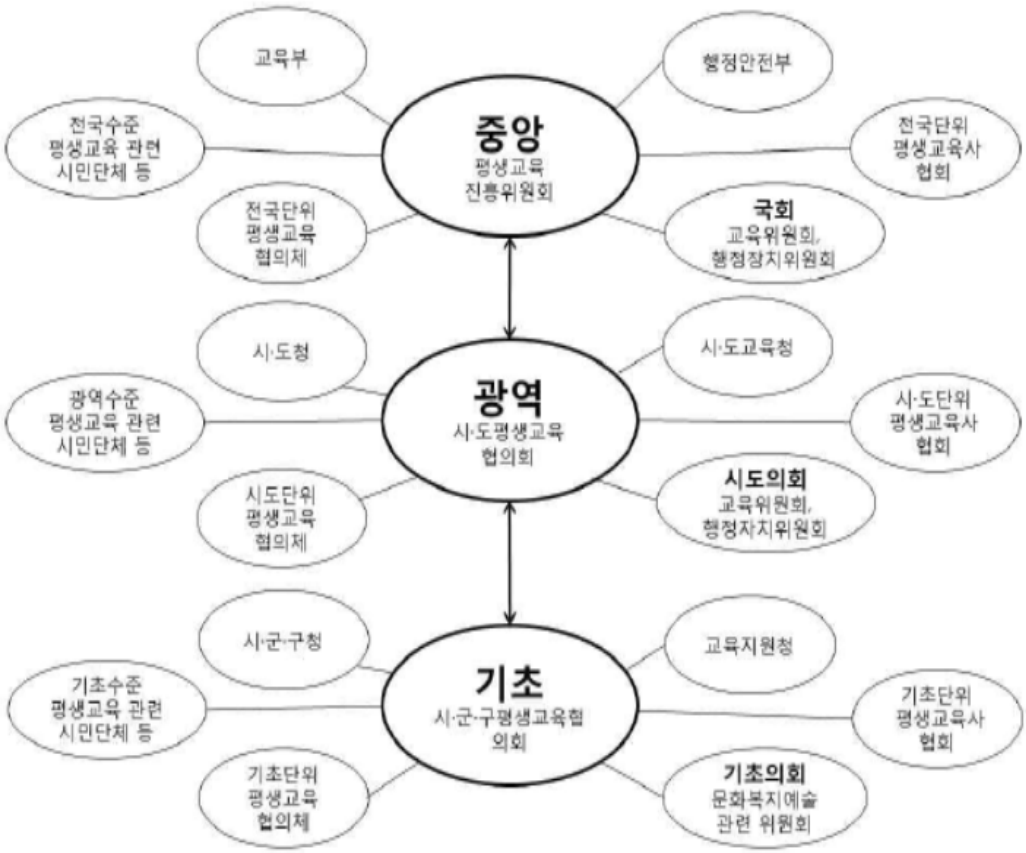
[그림 Ⅱ-26] 평생교육 정책의 거버넌스 모형

출처: 이희수 등(2015). 평생학습 주민요구도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서울중구청. p. 110.



[그림 Ⅱ-27] 지자체 중심 바우처 전달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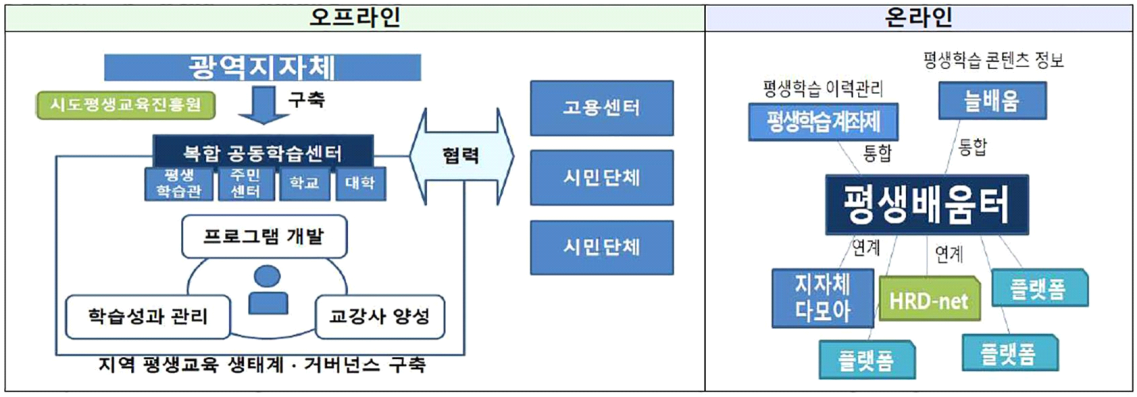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1).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 29.



[그림 Ⅱ-28]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

출처: 이상호, 박수정(2019).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교육연구논총, 40(3), 103-130.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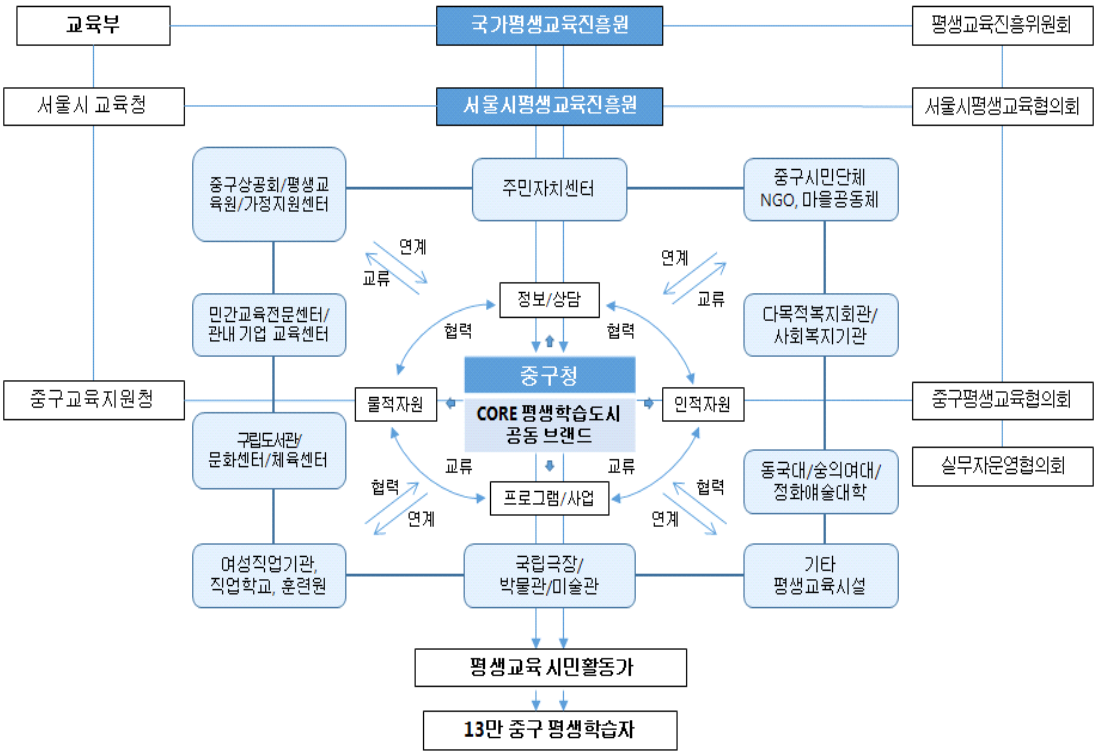
넷째, 지역의 특색을 가진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가 강조된다. 지역의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자발적 조직, 교육기관, 도서관, 평생교육 관계자 등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민간 영역들과 연계,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전기창, 2015). 이에 이상호와 박수정(2019)은 한국교육개발원(2015)에서 제시한 중앙-광역-기초 3차원에서 각기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교육적 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성해 교육 관련 다양한 지역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그림 Ⅱ-28] 참조).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에다 온라인 중심의 접근성 역시 동시에 키워야 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에 대비,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온라인 중심의 높은 접근성을 가진 전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그림 Ⅱ-29] 참조).



[그림 Ⅱ-29] 평생교육·훈련 전달체계 구축(안)

출처: 교육부(2021).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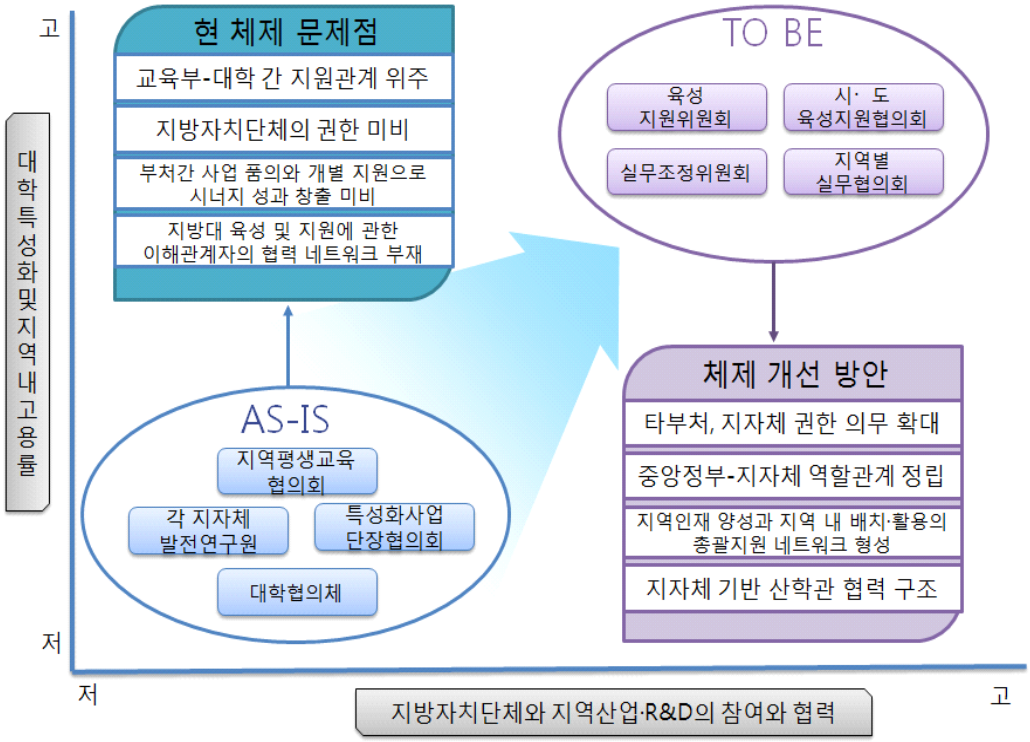
또한 아래 [그림 Ⅱ-30]과 같이 기초 단위에서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모형에서도 행정, 전담, 심의·협의 기구 외에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복지 기관, 기타 평생교육시설, 대학 등과의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다. 한숭희 등(2011)과 전기창(2015)도 기관, 대학, 산업체, 타 고등교육 기관 등 상호 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환을 중요시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Ⅱ-30] 기초지자체 단위(서울중구청)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모형 사례

출처: 이희수 등(2015). 평생학습 주민요구도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서울중구청. p. 111.

이희수 등(2015)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미비함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이나 지역인재 채용과 이로 인한 지역 고용 촉진 등이 제한적이었음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내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그림 Ⅱ-31] 참조).



[그림 Ⅱ-31]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As-is, To-be)

출처: 이희수 등(20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연구재단. p.174.

대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로서 교육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교육공동체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가 강조된다(이상호, 박수정, 2019). 양은아(2013) 역시 시·도 교육청과의 상시 연계 체제 모색을 제안했으며, 일반행정과 교육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구평생교육진흥원, 20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전달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허정무, 홍진옥, 2016), 전국민의 전생애적 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촘촘한 학습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구축과 재정비의 중요성 아래, 위에서 언급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처 간 분리된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의 총괄적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범부처 연계 조직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관계 법령 정비와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전담 기구의 최상위에 위치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강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 수행과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어, 광역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유명무실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행정, 전담, 심의·협의 기구 각 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더 체계적인 형태의 체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단체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기초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기관, 시민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연계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시·도청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청을 활용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촘촘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Chapter Ⅲ

해외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례 분석

주 요 내 용	
1	독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2	스웨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3	영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4	미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III. 해외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례 분석

1. 독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가. 독일 평생교육의 기본 사항

선진국으로서 독일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인력 공급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하여 평생교육 전반에 있어서도 독일은 우수한 체계와 정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방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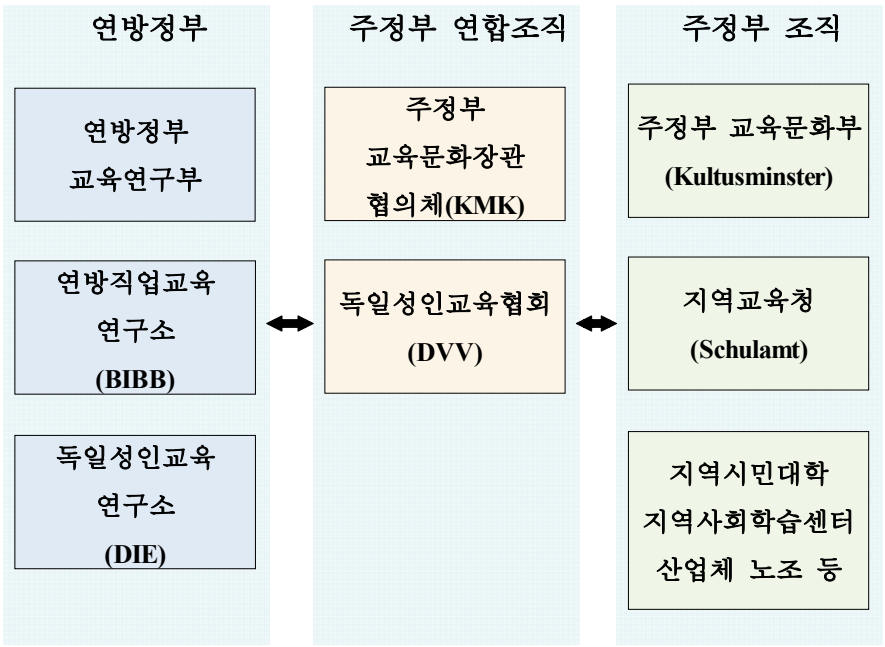
독일 교육의 기본적인 현황과 체계 그리고 주요 용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2020년 WES(World Education News)에 따르면 독일 전체 인구는 약 8천 3백만이고, 직업교육과 일반 학교교육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과정 운영이 구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WES, 2020). 이는 성인교육 단계에서도 유사한데,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이 대상 등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평생교육의 거시적 틀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즉, 모든 독일 국민은 모든 생애단계에서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초·중등교육 이후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는 전 생애의 조직적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으로 규정된다(김태준 등, 2020).

다만 독일은 대상이나 교육의 내용에 따라 `평생교육(Lenbenslanges Lernen)'과 `계속교육(Weiterbildung)'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다양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 성인교육이라고 규정된다. 반면에 계속교육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교육을 의미한다(Brandt, 2015). 따라서 계속교육은 직업 성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으로 보면, 평생교육은 정치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가족이나 가정교육 등을 포함하고, 계속교육은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재직자도 포함되지만 주로 실업자를 위한 교육이 포함된다(WES, 2020).

나.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체계

1) 독일 평생교육의 추진체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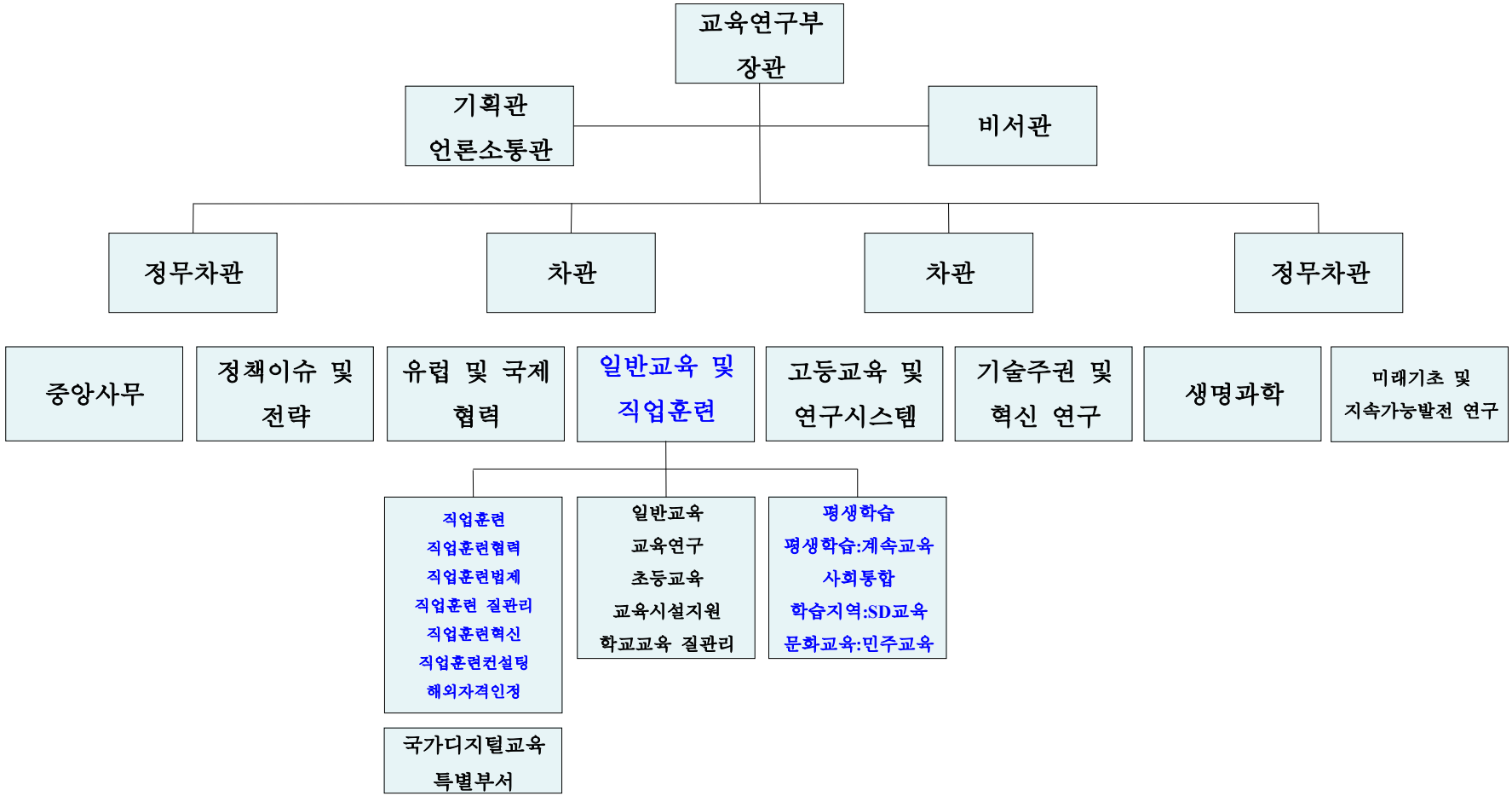
독일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은 기본적인 행정체계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 산하의 지역교육청 등의 행정체계에 따라 추진체계가 구축 및 운영된다([그림 Ⅲ-1] 참조). 연방정부는 한국의 중앙정부와 유사하지만, 주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Ⅲ-1] 독일 평생교육의 체계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중앙부처로서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연구부는 한국으로 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교육연구부는 교육 영역과 과학기술 연구 영역으로 구분된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정책은 교육연구부에서 담당한다(BMBF, 2020).

2021년 교육연구부의 상세한 조직 구조는 [그림 Ⅲ-2]와 같다. 교육연구부는 크게 교육과 연구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4명의 차관이 있다. 이 중 2명은 정무차관이고 2명은 직무차관이다. 직무차관은 교육과 연구 영역의 실질적인 직무를 관리하는 차관이다. 차관 아래에는 '국'이나 '실' 수준의 부서가 중앙사무부터 미래기초 및 지속가능발전 연구까지 8개가 있다(BMBF, 2021).



[그림 Ⅲ-2] 독일 연방정부 교육연구부의 직제

출처: BMBF(2021)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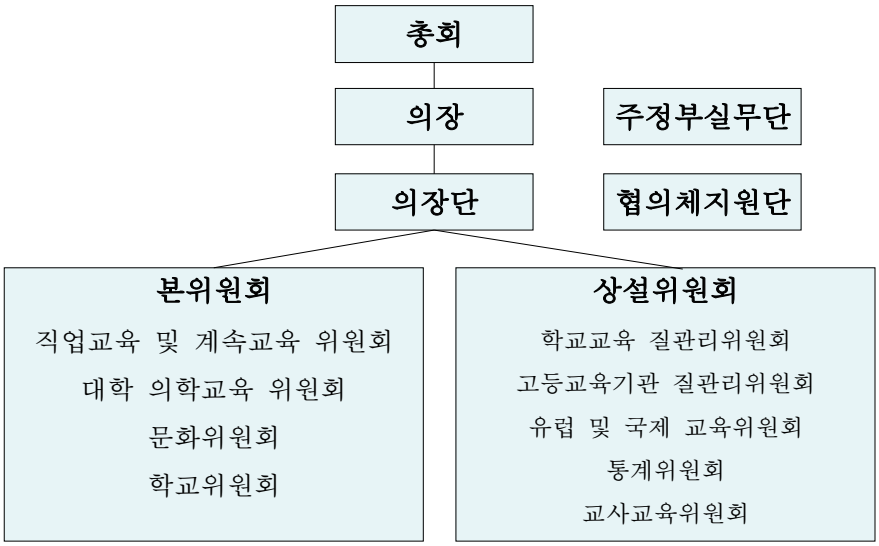
이중 평생교육관련 부서는 “일반교육 및 직업훈련: 평생학습(Gen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Lifelong learning)”이다. 그 아래에 ‘과’ 수준의 부서가 위치하는데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3개 과가 있다. 직업훈련과는 직업훈련협력, 직업훈련법제, 직업훈련 질관리, 직업훈련혁신, 직업훈련컨설팅, 해외자격인정의 담당관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는 평생학습: 계속교육, 사회통합, 학습지역: 지속가능발전(SD)교육, 문화교육: 민주교육의 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 참고로 일반교육과에는 교육연구, 유아교육, 교육시설지원, 학교교육 질관리의 담당관이 있다. 그리고 특별부서로 국가디지털교육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는 독립된 ‘국’ 수준의 조직 하에 직업교육 영역과 평생교육 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담당관이 개인 수준이 아니라 조직 수준이라는 점이다. 단지 담당관 1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의 보좌관이나 협력관이 함께 근무하는 방식이다(BMBF, 2021).

독일 연방정부 교육연구부는 국가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로 예산 기획 및 지원, 국가 수준의 교육시스템 운영, 학습 인정 시스템 운영, 국제 또는 대외 사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운영과 계획 그리고 법적 근거의 마련은 주정부 수준에서 진행된다.

독일 연방정부 수준에서 교육연구부와 함께 평생교육 부문의 연구와 정책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연방직업교육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와 독일성인교육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ur Erwachsenenbildung: DIE)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연방정부와 함께 주정부도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정부 개별적으로 연방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장관협의체(Kultusminister Konferenz: MNK)를 통해 연방정부의 교육 및 문화 정책에 대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한다. 교육문화장관협의체는 총회, 의장, 의장단, 주정부실무단, 본위원회, 상설위원회, 협의체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모든 주정부 장관이 모이는 전체 의결 및 협의 기구이고, 상임회의는 의장을 보좌하는 1년 단위의 조직으로 의장 1명, 부의장 3명,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주정부실무단은 각 주정부의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단이고, 협의체 지원단은 협의체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이다. 하위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상설위원회로 구분되는데, 본위원회는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위원회, 대학의학교육 위원회, 문화위원회, 학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위원회는 학교교육 질

관리위원회, 고등교육기관 질관리위원회, 유럽 및 국제 교육위원회, 통계위원회, 교사교육위원회, 스포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KMK, 2021)([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구성

출처: KMK(2021)에서 정리.

교육문화장관협의체는 주정부마다 있는 교육문화장관이 모여서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분야 정책을 의사결정 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다. 교육문화장관협의체는 주정부 교육문화장관이 모여서 독일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체로서 입법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협의체의 결정사항은 주정부에서 입법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독일 평생교육이 주정부 단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문화장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독일 평생교육의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 기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육문화장관협의체 의장은 각 주 교육문화장관이 순차적으로 맡고 있다(KMK, 2021).

주정부 연합조직 수준에는 독일성인교육협회(Deutsche Volkshochschul-Verband: DVV)도 있다. 독일성인교육협회는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시민대학의 연합회이다. 단지 시민대학의 연합회의 수준을 넘어서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행정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주정부 연합조직에 해당된다(DVV, 2021).

주정부 조직은 독일의 16개 주정부별로 설치되거나 주정부 하위 조직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우선 주정부는 하나의 정부로서 각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 장관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주정부 교육문화부(Kultusminster)가 16개 주정부마다 설치되어 있다. 교육문화부는 교육과 문화의 두 가지 영역에 관련

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주정부 산하에는 지역교육청(Schulamt)이 있다. 주정부에 소속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교육청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교육청은 한국의 기초지자체와 같은 행정구역인 'Kresi'에 설치되어 있다. 독일 전역에 'Kresi'는 약 300개가 있고 'Kresi'단위별로 교육청이 설치된다. 다만 2개의 Kreis를 합쳐서 하나의 지역교육청이 설치되기도 한다.

2) 독일 평생교육 관련 기구 및 협회

독일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연방정부 기구나 주정부 연합기구로서 각종 연구소나 협회(연방직업교육연구소, 독일성인교육연구소, 독일성인교육협회 등)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상 정책 결정, 정책 기획, 정책 운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 실제 평생교육 정책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은 교육 관련 정부기구, 연방 교육 협회, 교육 관련 사회단체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독일의 평생교육 관련 기구 및 협회를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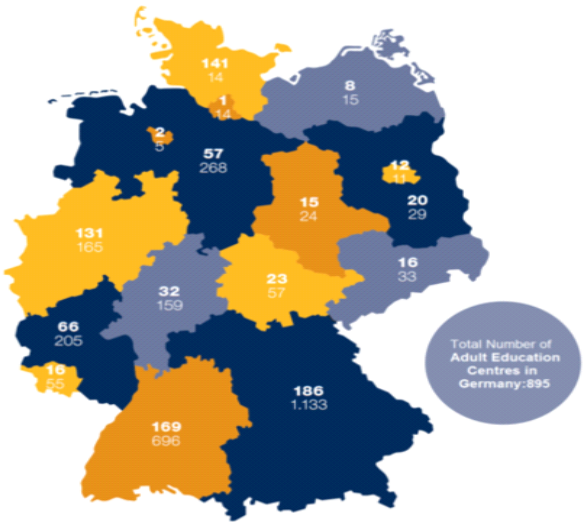
<표 Ⅲ-1> 독일 평생교육 관련 기구 및 협회

유형	기관	홈페이지
교육 관련 정부기구	- 독일 성인 교육 연구소	www.die-bonne.de
	- 연방 직업 교육 연구소	www.dihk.de
연방 교육 협회	- 독일성인교육협회	www.dvv.chs.de
	- 독일상공회의소연합	www.dihk.de
	- 연방직업교육기관연합회	www.bildungsverband.info
	- 독일평생교육단체총괄협회	www.dvwo.de
	- 사립학교총괄협회	www.dvwo.de
	- 원격교육및학습미디어전문협회	www.forum-distance-learning.de
	- 성인교육을 위한 독일카톨릭협회	www.keb-deuchland.de
	- 성인교육을 위한 독일 개신교 협회	www.dead.de
	- 교육 및 과학 노동조합	www.verdi.de, www.gew.de
	- 일과 삶에 관한 연방 조직	www.arbeitundleben.de
	- 독일교육 확립을 위한 활성화 기구	www.adb.de
	- 가톨릭 사회 교육 협회	www.aksb.de
교육 관련 사회단체	- 독일교육과학협회성인교육부	steam.human.uni-postdamde/sektion-eb/
	- 독일 평생교육 연구원	www.dgwf.net

출처: 조선아(2018)에서 정리.

이 기구 중 교육 관련 정부기구는 연방직업교육연구소와 독일성인교육연구소이다. 연방직업교육연구소는 독일 직업교육의 핵심인 마이스터 제도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구이다. 마이스터 제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주요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독일성인교육연구소는 독일 본(Bonne)에 위치하여 연방정부 재정과 주정부 재정이 각각 50%씩 출연한 라이프니쯔 학술공동체(Wissenschaftsge mainschaft Goffreid Wilhelm Leibniz: WGL) 소속의 연구소이다. 1957년 개소하여 성인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성인교육 실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7).

독일성인교육협회는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로 독일 성인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연방단위의 기구이다. 시민대학은 독일성인교육센터로서 전국에 89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위에 현장사무소가 독일 전역에 약 3,00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1년에 70만 개 이상의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운영되고 있다(DVV, 2021).



[그림 Ⅲ-4] 독일 시민대학의 분포

출처: VHS(2017)에서 정리.

독일성인교육협회는 단지 평생교육기관의 연합체로서 역할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연방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이나 주정부 연합체의 평생교육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다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독일성인교육협회 소속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만큼 독일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이 영향력이 로비 수준이 아니라 정식행정 채널을 통해 발휘된다는 점에서

독일성인교육협회는 공식적 정책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독일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평생교육 실천 주체이다.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교회, 정당, 노동조합, 기업, 민간 평생교육기관 등이 있다. 이 조직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연합하여 연방정부에 대응하는 조직체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평생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9년 10월 24일).

다. 시사점

평생교육의 선진국으로 독일은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의 계획과 실행은 주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장관의 협의체를 통하여 많은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각 주정부 수준의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을 갖게 되고 평생교육 실천으로 진행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장관 협의체와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가 있으나 법정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상황이라서 의사결정이나 정책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이에 광역시·도 평생교육협의체를 설립하고, 광역시·도의 평생교육 책임자,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구성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정책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광역시·도 평생교육협의체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체의 결정사항이 정책 및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독일의 평생교육 관련 연방정부는 평생교육을 중요한 이슈로 인정하고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국' 수준에서 설치하고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하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부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국' 수준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미래교육, 진로교육, 이러닝 등을 통합한 부서로 평생교육은 1개 '과' 수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향후 평생교육의 확장, 성인단계의 교육기회에 국가적 책무성 강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대상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국'이나 '실'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정책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생교육 대신 성인교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성인교육 중 직업교육 영역과 평생학습 영역으로 구분하여 성인교육의 정책적 영역이나 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구분하는 것도 교육부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이나 기구의 연합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평생교육의 정책 및 사업 결정과 자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추천된다. 독일은 독일성인교육협회 등 다수의 성인교육기관 연합회가 존재하고, 이중 대표적으로 독일성인교육협회가 주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에 포함될 정도로 활발한 정책 참여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민간단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구성, 해당 단체의 대표성과 공신력 등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민간단체 연합회의 참여는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원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추천된다.

2. 스웨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로 대표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평생교육은 노동자, 즉 피고용자의 필요에 의해 출발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 학습체제로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학교 교육체제, 노동시장 교육체제 그리고 시민사회 교육체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한숭희, 김경애, 이정은, 2006). 특히, 스웨덴은 1970년대에 통일성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체제의 단위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호응 되도록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한숭희, 김경애, 이정은, 2006).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는 한국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살펴봄에 앞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가. 스웨덴 평생교육의 기본 사항

스웨덴은 교육정책이 경제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민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과 공동체 그리고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이윤미, 2011). 따라서 스웨덴 교육 체계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 교육청에서 밝힌 평생학습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은 교육에 대한 총체적 관점이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평생과 생활 전반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평생 차원은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며, 생활 전반 차원은 모든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학습을 포괄한다(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0, p. 7; 최영렬과 황규희(2005)에서 재인용)."

특히,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성인교육,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연구부는 2010년에 신 교육법(The New Education Act)을, 2011년에는 성인교육법(The Ordinance of Adult Education)을 공포, 발효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성인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은 지자체 성인교육과 민중 교육(Liberal adult education)으로 구성된 성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Eurydice, 2020). 스웨덴 국민은 만 56세까지 후기 중등교육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 학습 지원 제도는 부모나 가족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지자체 성인교육 기관은 학교장이 운영, 관리하고, 학교 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1명 이상의 부교장에 의해 운영된다. 성인교육은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민중 교육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나,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민중교육은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 스터디 써클, 관련 연합회가 있으며,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체계

1) 스웨덴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관

스웨덴은 지자체 분권화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의회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Eurydice, 2020). 국가 차원에서는 주로 사미(Sami)족 학교, 청각 장애 학교, 고등 교육 기관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 모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 지자체는 대학 아래 모든 공공 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의무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별 학교의 운영자가 학교의 퀄리티, 성과, 결과에 책

임을 진다. 주 정부 활동은 주 중앙 행정 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의회 승인 후 매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관계 부처에 활동 내역을 보고 한다. 이렇듯 스웨덴의 추진체계는 크게 중앙정부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스웨덴의 중앙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스웨덴의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관련 산하 기관이 있으며, 스웨덴 교육 체계의 중앙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Eurydice, 2018a). 스웨덴 헌법(Grundlagen)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장되는 교육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이며,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를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계열과 취학전 교육부터 기초학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는 정규 학교교육과 특수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법'으로 구분된다(노기호, 2015). 이에 따라 현재 교육연구부는 2 장관 체제(교육 장관, 고등교육 및 연구 장관)로 되어 있으며, 5개 부서(학교부, 중등교육 및 성인교육부, 고등교육부, 연구정책부, 정책분석 및 국제 업무부)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부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정부 법안을 뒷받침할 자료를 만들고, 산하 기관과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웨덴의 교육연구부의 부서별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스웨덴의 교육연구부 부서별 업무

부서(Division)	주요 업무
학교부 (Division for Schools)	예비학교, 여가 활동 센터와 기타 교육 활동, 예비학교 수업과 의무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의무학교, 특수 교육 학교와 사미족 학교
중등교육 및 성인교육부 (Division for Upper Secondary and Adult Education)	중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중등학교, 성인교육,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중등교육 이후 직업훈련과 성인 기술 개발 프로그램, 민중 교육
고등교육부 (Division for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기관 활동, 학생 재정 지원, 학생 복지 문제
연구 정책부 (Division for Research Policy)	일반적인 연구 정책 문제와 EU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인 연구 협력
정책 분석 및 국제 업무부 (Division for Policy Analysis and International Affairs)	OECD의 EU와 국제 이슈, 북유럽 각료회의와 유럽 평의회, 그리고 1개 이상의 분과와 관련된 다른 국제 협력 포럼, 교육·연구 분야 발전 모니터링, 교육 분야 국내외 비교 등을 목적으로 통계를 처리·분석하는 특수활동

출처: 스웨덴 교육연구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education-and-research/organisation/)

주로 교육연구부는 교육 제도의 틀을 정하고, 산하 관계 기관들은 법과 조례를 시행한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교육연구부와 관계된 산하 기관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스웨덴의 교육연구부 산하 기관

기관명	주요 특징
스웨덴 교육청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학교 업무 분야에서 가장 큰 중앙 행정 기관 - 예비학교, 학령기 돌봄, 의무학교, 중등학교, 지자체 성인교육 담당 - 지자체 성인교육과 보조금 지원 학교의 교육의 질과 성과 검토 및 활동 감독 - 강의 요강과 성적 기준과 같은 운영 문서를 개발하고, 보조금 지원 학교에 관한 검증 문제를 담당함 - 학교장 연수 프로그램, 교사와 학교 인력의 역량 개발, 교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교원 장학금 지급 등 학교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대학에 배정함
스웨덴 학교 조사국 (The Swedish Schools Inspectorate)	- 지자체와 학교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함 - 예비학교, 학생 복지, 학교 운영, 성인교육 등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모든 학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학교 허가 업무를 수행함 - 학교에 규제를 가하거나 조건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국립특수교육청 (The National Agency for Special Needs Education)	- 특수 교육 현안에 공적 자금을 지원함 - 학교에 장애학생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함
스웨덴 고등교육청 (Swed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	2013년 스웨덴 국립 고등교육청에서부터 스웨덴 고등교육청과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로 분리됨 고등교육의 질 검토 학위 수여권 부여 고등교육기관의 법률 및 규정 준수 확인 고등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모니터링 스웨덴 고등교육 관련 공식 통계 관리 고등교육 동향과 개발 모니터링 고등교육 관리자 전문성 육성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 (Swedish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HEIs를 대신하여 스터디 프로그램 입학 관리 국제 협력 참여 촉진(예: Erasmus+)

스웨덴 연구 지원 위원회 (Swedish Board for Study Support)	- 학생 지원과 관련된 중앙 행정 기관 -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전달과 상환 담당 - 다양한 연구 지원 시스템을 평가함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 비영리 기관이며, 스웨덴 국립 연구 연합, 스웨덴 지방 당국 및 지역 협의회, Folk High School 운동 단체 등 3개 회원(The Swedish National Federation of Study Associations, Interest Organisation for Popular Movement Folk High Schools,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와 의회의 위탁 하에 위원회가 성인교육 연합회(The Swedish Adult Education Assosication)와 Folk high school에 국비를 지원하고, 정부에 회계 보고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함 -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 평가함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함
스웨덴 국립고등직업교육청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 2009년 7월 중등교육 이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함 - 고등 직업 교육 과정은 광범위한 직업 영역을 포괄하며,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춘 고급 직업 교육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짐 - 전국의 직업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담당하므로, 교육과정 결정, 기관 예산 할당, 기관 평가 및 감사,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출처: Eurydice(2018a)의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 및 재구성함

3)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스웨덴 지자체(Kommun)는 입법적 틀 안에서 교육 제도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Eurydice, 2018b). 따라서 시(도) 의회는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의사 결정 기관이다. 지자체는 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주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교육 활동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가 지원은 지자체 수입의 약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며, 지자체의 권한에 따라 의무교육에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Eurydice, 2018b).

지자체의 주요 교육 업무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의무학교, 고도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중등교육, 지자체 성인교육,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 교육, 이민자 교육 등이다(Eurydice, 2018b). 지자체 성인교육은 성인학습자들에게 초·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력인증 성인교육기관으로, 일종의 학습센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방자치에 의해 제공되는 또 다른 특징적인 교육 체제 중 하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성인교육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학교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전문성 개발에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시(도) 의회는 법, 주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최상의 교육 여건이 조정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학교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과 규제 준수 여부 확인, 지자체 예산 지급, 자격 있는 교직원 모집과 역량 개발, 학교 내 시설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는 학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 각 학교 역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Eurydice, 2018b).

한편, 스웨덴 성인교육의 특징은 비형식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며, 이는 스웨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10개의 스터디 연합회(Study Association)가 존재하며,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각 연합회는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 이민자 보호, 환경 문제 등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10개의 스터디 연합회에는 전국의 374개의 회원 기관과 약 280,000개의 학습동아리(study circles)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마다 약 340,000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자 기획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은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의 특정 조건과 지침에 따르며, 각 학교 교장이 학교의 목표와 내용 설계 등을 책임진다. 모든 학교는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수업료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이다. 포크하이스쿨에서 일반 과정은 전체 활동에서 적어도 15%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의무교육이나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스웨덴에는 151개의 포크하이스쿨이 존재하며, 주의회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도 43개가 있다. 나머지 108개의 포크하이스쿨의 경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한다. 이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각 학교가 가진 특정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 시사점

스웨덴은 고등교육의 무상화, 개방적인 성인 정규교육 기회 제공 등의 측면에서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지방 분권화된 교육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며, 주

정부와 의회에 높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성인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각 기관이 성인교육의 질과 성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발전적인 모습을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산하 기관의 적절한 역할 부여와 실질적인 구동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교육연구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교육청, 스웨덴 학교조사국,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등은 지자체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의 성인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성인교육기관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전반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역할 정립과 이에 따른 권한 부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스웨덴은 비형식, 무형식적 학습인 자발적 성인학습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습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터디 써클과 포크하이스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성인들은 사회적·경제적 배경,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터디 써클과 포크하이스쿨은 자발적 성인학습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읍·면·동 평생학습관이 전달체계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즉, 자발적인 성인학습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3. 영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가. 영국 평생교육의 기본 사항

영국은 OECD 회원국 중 국민 개인의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교육으로부터 받은 이익

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주경란, 2005). 그러나 영국은 역사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일부 국민층을 대상으로 엘리트 양성 위주의 교육정책을 펼쳐왔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국은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의 인적자원 수준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편 및 평생교육 정책을 새롭게 개혁하는 등 성공적인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평생교육의 추진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현황으로 교육대상, 평생교육의 정의 등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의 평생교육(further education)은 중등교육(7~11학년, 만 11~16세) 이후의 학업을 모두 포함하지만 고등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1988년 교육개혁법(The Education Reform Act)을 통해 “추가교육이란 의무교육 연령이 넘은 이들을 위한 전일제 교육과 조직적인 여가활동으로 고등교육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수준에서 계속교육을 담당하였던 폴리테크닉(Polytechnic)을 계속교육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 대부분의 폴리테크닉은 유니버시티(University)로 개칭되었다. 계속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산학연계프로그램, 교육휴가제도 등을 포함한 컬리지(College)에서의 학습과 일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영어나 수학을 배우는 과정부터 국가고등교육과정(Higher National Diplomas, HND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만 16~19세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응용자격증명(technical and applied qualifications)도 일부 포함한다(에듀인뉴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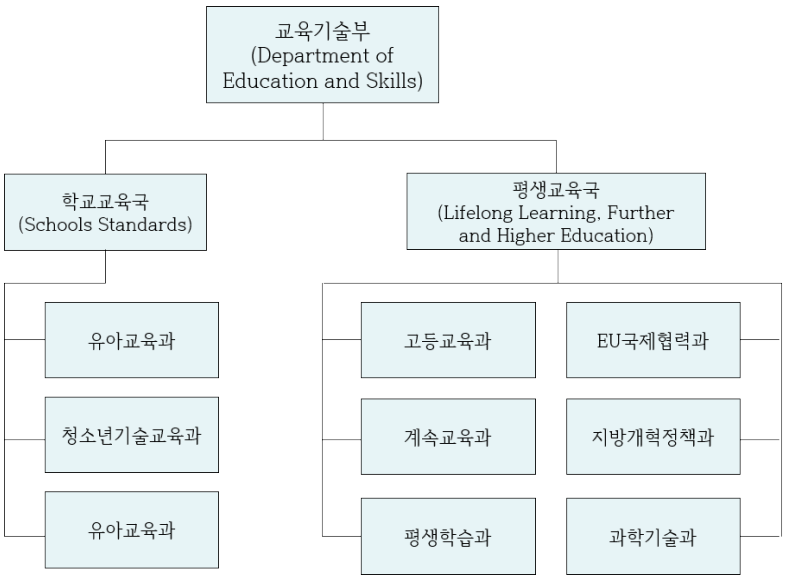
나. 영국 평생교육 추진체계

1) 영국 평생교육 중앙부처: 교육부

영국의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이다. 영국의 교육부는 2010년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와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가 분리되면서, 아동학교가족부가 주로 수행했던 역할, 즉 아동복지와 교육(의무교육 및 고등교육), 견습교육, 기타 기술교육을 이관하여 담당하였다. 이후 고등교육의 경우 분리되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로 편성되었다(CSW, 2016년 7월 14일).

영국의 교육부는 학교교육국과 평생교육국으로 구분되며, 평생교육국(Lifelong Learning,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산하 고등교육과, 계속교육과, 평생학습과, EU국제협력과, 지방개혁정책과, 과학기술과 등 6개의 과를 두어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관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평생학습 추진전략은 ‘모든 이들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잠재력 개발 및 기회 창출 도모’에 있으며, 이를 위해 연령단계별로 나누어 ‘성인의 능력 향상과 학습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 직업능력(기술)을 하나로 묶어 교육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과 연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0년 전후로 계속교육개정협의회, 훈련 및 기업협의회, 지역교육청 등 각각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조성·운영되고 있어 평생교육 사업의 중첩 등 일관성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평생학습 추진 총괄기구인 ‘학습 및 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를 설치하게 되었다. 학습 및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부처 내 아동, 학교, 가족부와 혁신, 대학, 기술부 장관이 임명하는 1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하고, 16세 이상 학습자들의 모든 교육과 훈련의 기획,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8개 권역 약 100여 개의 지역 ‘학습 및 기술위원회’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림 Ⅲ-5] 영국의 교육부 행정조직

출처: https://www.gov.uk/

교육부의 주요 업무는 유아교육, 학교와 아카데미, 추가교육, 고등교육, 도제제도, 기술 훈련 등이다. 이에 다수의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16개의 산하 기관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집행한다.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교육부 산하 기관 및 협력기관

구분	기관명	주요 업무
비정부기관	자격시험감독청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 중등자격검정시험(GCSE) - 대입시험(A-levels) - AS levels - 직업과 기술자격 자격 기준
	교육표준·아동사무국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와 전 연령 학습자 대상 교육 서비스 검사 및 규제
책임집행기관 (EA)	교육기술자금기관 (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	- 도제제도 - 아카데미 기금 - 추가교육 기금 - 학습이력제(LRS) - 우선지역 학교 건립 프로젝트
	교수와 리더십을 위한 대학 (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 Leadership)	- 학교 시스템 요구 충족 - 인력 모집 및 개발 - 학업 표준 향상
	표준시험기관 (Standards & Testing Agency)	- 유아교육부터 아동교육 평가
비정부 공공기관 (NDPB)	건설산업교육위원회 (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Board)	- 건설 산업 기술 및 경쟁력 향상 - 건설사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영국고등교육기금위원회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고등교육기관에 정부 예산 배분 - QAA(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을 통한 교수 학습 평가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교육위원회 (Engineering 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Board)	- 기술 훈련 및 자격 제공 - 해당 분야 경력 개발 지원
	도제기관 (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 높은 수준의 도제 기준 보장 - 각 표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자문 요청
	평등과 인권 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평등 보호 및 인권 감시
	국가 아동 위원회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있어 아동의 권리, 견해 및 이익 증진
	공정한 기회보장기구 (Office for Fair Access)	- 대학 감독 기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성 확보
	학생대출회사 (Student Loans Company)	-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위한 대출 업무 관리
비정부 공공 자문기관 (ANDPB)	교원노사조정기구 (School Teacher's Review Body)	- 학교 교사의 임금, 전문직 및 근무 시간에 관한 권고안 작성 - 교육국장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
	사회적 이동위원회 (Social Mobility Commision)	- 영국 내 사회 이동성 개선 방향 방법 모색 및 촉진
기타	평등부(Government Equalities Office)	- 정부 조직 간 평등 전략 및 입법안 담당
	학교지원입학분쟁조정위원회 (Office of the Schools Adjudicator)	- 학교 입학정책에 대한 법적 명시

출처: 이희수 등 (2017).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42

2)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은 고등교육을 제외한 중등학교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 또한 대상과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영국의 평생교육은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교육기술 자금기관(Education and Skill Funding Agency, ESEFA), 고등교육기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도제기관(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IFA), 학습과 노동기관(The Learning & Work Institute), 노동자 교육기관(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 등이 있다.

교육기술 자금기관(ESEFA)은 2010년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가 폐지되고 교육기술지원부(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와 청년학습부(Young People's Learning Agency)로 개편되면서 교육기술지원부로 분리된 기관이다. 이후 교육자금기관(Education Funding Agency, EFA)과 기술 자금기관(Skill Funding Agency, SFA)이 담당하고 있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교육과 기술의 자금 지원을 단일 기관인 교육기술 자금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교육기술 자금기관에서는 도제제도, 아카데미 기금, 지불 및 준수, 학습이력서비스, 추가교육기금, 우선지역 학교건립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금위원회(HEFCE)는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고등교육을 통해 선진경제, 민주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등교육기금위원회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협업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각 고등교육기관이 맞이하는 기회와 위기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며, 고등교육 제공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 규제를 실시하는 등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및 집행하고 있다.

도제기관(IFA)은 2009년「도제제도, 기술과 학습법(Apprenticeships, Skills and Learning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도제제도는 교육과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생겨난 제도이다. 도제제도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제도로, 중급(Intermediate), 상급(Advanced), 고급(Higher), 학위(Degree)의 총 4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의 수준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학업과 동시에 실무적인 훈련 과정이 병행된다. 또한, 일부 과정은 졸업장과 같은 추가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학습과 노동기관(The Learning & Work Institute)은 1921년에 설립된 자선적 성격의 비영리/비정부 평생교육 기관인 성인계속교육연구소(The National Ins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와 경제사회통합센터(Centre for Economic & Social Inclusion, CESI)가 전략적 통합 관계를 맺은 조직이다. 학습과 노동기관은 평생학습, 성인학습자, 저임금 및 실업자를 위해 활동하며, 이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를 수행한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크게 평생교육을 통한 삶과 사회의 발전, 일과 경력, 시스템 향상, 학습과 기술홍보 4개의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영국 내 최대 평생학습 축제로 매년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주간(Adult Leaner's Week), 다양한 취업 연령에 맞는 평생학습 프레임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독립 연구 프로젝트 IFLL(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 영역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 칼럼, 뉴스 등을 싣는 계간지 성인학습(Adult Learning) 발간 등이 있다.

노동자 교육기관(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WEA)은 1903년에 설립된 성인교육기관으로 중앙협회(National Office) 아래 9개의 지역(Region)과 500여개의 지점(Branch)을 갖고 있으며 1,200여개의 학습과정에 약 111,00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의 성인교육기관이다. 노동자 교육기관의 특징은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획과 운영을 지역사회 단위에 두고 주민들의 교육 요구를 면밀히 살펴 반영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학습 챔피온(Community Learning Champions) 자원 활동가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사회 학습 챔피온은 평생학습 홍보대사로서 친구, 이웃, 혹은 평생학습을 접해보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점을 홍보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 교육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 사회 통합과 발전을 꾀한다.

다. 시사점

영국의 사례는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국은 교육부와 고용부의 역할을 통합하여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영국은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과 OECD의 순환교육 정책을 반영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이다. 특히, 일터와 학습을 연계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역할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OECD의 시장중심형 학습사회론을 추구해왔다. 이에 직업교육 자격증을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식스폼 칼리지(Six Form Colleage), 일반 평생교육 칼리지(General Further Education Colleges)와 같은 기관을 통해 T-레벨(Tech Levels), 기술자격증(Technical Certificates), 일반응용자격증명(Applied General Qualifications) 등 자격증 취득 및 대학 입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

이,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도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의 적절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은 교육부 산하 및 협력 기구로 독립적인 비정부기관(Non-Ministerial Government Department)을 두어 교육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교육표준아동사무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은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가 아닌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기구로, 유아교육기관, 공립학교, 사립학교, 고등교육기관,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업무 및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러한 비정부기관의 감시·평가 역할은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의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일조한다. 한편, 영국의 교육표준·아동사무국(OFSTED)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을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기관의 평가 대상을 평생교육 기관으로 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국내 평생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은 평생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육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3섹터 조직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고등교육의 상품화, 엘리트화에 대한 저항으로 대안교육운동(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이 있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 세계 경제 위기 등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대안교육으로는 텐트 도시 학교(Tent City University), 사회과학센터(Social Science Centre), 개방 학교(Really Open University), 리버풀 자유 학교(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 등이 있으며, 이들은 평생교육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민간평생교육은 교육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내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역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통합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평생교육은 정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연계를 통해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그림으로 구성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미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미국의 평생교육은 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이다. 미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정책과, 성인교육정책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정책으로는 크게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과 인력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이 있으며, 특히,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제2편에 속하는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AEFLA)이 미국의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연방정부는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의 수행은 연방정부의 산하 기관 중 교육부 내의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OCTAE)의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과(Division of Adult Education and Literacy: DAEL)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AACE)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 미국의 평생교육정책

1) 인력투자법(WIA)

인력투자법(WIA)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성인교육을 위해 1998년 제정되었다. 1981년 제정된 성인교육법(Adult Education Act), 1991년 제정된 국가문해교육법(National Literacy Act)이 1998년에 폐지되었고, 인력투자법(WIA)도 2003년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미국 교육부의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비, 노동부의 직업훈련비, 후생 및 인력자원서비스 관련 부처의 교육훈련비 등은 아직까지 인력투자법(WIA)을 근거로 집행되고 있다.

2)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7월 22일 미국의 핵심 인력 훈련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을 제정, 공표하였다. 인력투자법(WIA)이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체계 개발 및 향상에 제한적이고, 훈련, 기금 서비스 제공 설계에 있어 한계점을 노출함에 따라 공공 인력 체계가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주요 내용은 아

래 <표 Ⅲ-5>와 같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은 총 5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인력개발 프로그램, 제2부는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 제3부는 와그너-페이저법 개정, 제4부는 직업재활 프로그램법 개정, 제5부는 일반 조항이다.

<표 Ⅲ-5>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부 인력개발 프로그램 (Workforce Development Activities)	Subtitle A. 시스템 조정 - 주정부 인력개발 이사회(Workforce Development Boards) 규정, 지방단위 인력개발 영역, 기금, 성과 책임제 및 통합적・협력적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Subtitle B.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제공자 - 원스톱(one-stop) 시스템, 직업훈련 및 청소년 인력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한 제공기관 규정 - 청소년, 성인 및 실직자 및 일반 고용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금 규정 Subtitle C. 직업기술 교육기관 (Job Corps) - 독립 연방프로그램으로서 Job Corps의 목적, 조직, 지원, 운영 및 프로그램 등 규정 Subtitle D. 국가단위 프로그램 - 원주민, 이민자 및 계절노동자, 실직자 및 기술자 등 노동인력에 대한 평가, 연구 및 프로그램 규정 Subtitle E. 행정 - 요구 및 제한사항, 기금배분 및 관리, 조사 및 평가, 기획 등 행정체계 규정
제2부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 (Adult Education and Literacy)	Subtitle A. 연방정부 Subtitle B. 주정부 - 주단위 행정, 기금조성, 리더십, 기획 및 프로그램 등 규정 Subtitle C. 지방 조항 - 기금조성 및 제공기관, 지방행정 및 예산 등 규정 Subtitle D. 일반 조항 - 행정사항, 국가단위 리더십 및 통합 문해교육 및 시민교육 등 규정
제3부 와그너-페이저법 개정 (Amendments to the Wagner-Peyser Act)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고용지원 부서(Employment Service Offices) 관련 기획, 성과 측정 및 인력 및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Workforce and 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 관련 사항 규정
제4부 직업재활 프로그램법 개정	Subtitle A. 소개 조항 Subtitle B. 직업재활 지원 프로그램 - 기획, 조직, 관리, 평가, 관련 프로그램 등 규정

(Amendments to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Subtitle C. 연구 및 훈련 -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국립 연구기관(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설립 등에 관한 규정 Subtitle D. 전문성 개발 및 특별 프로젝트 - 기술지원 및 이민자, 계절 기술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규정 | Subtitle E. 국립 장애인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Subtitle F. 권한 - 시스템 연계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 이사회 및 협의회 등 규정 Subtitle G.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Subtitle H. 자립 지원 센터 -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사항 등 규정
제5부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s)	Subtitle A. 인력 투자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련 분석 및 기록 역량 확대 및 전환 조항 등 규정 Subtitle B. 기타법 개정

출처: 교육부(2017).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3) 직업능력투자법/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Workforce Investment Act/AEFLA)

1998년에는 성인교육법이 폐지되고, 직업능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과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 제2부(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Title II)은 통합되었다. 현재 미국 성인교육의 근간이 되는 직업능력투자법/성인교육 및 가족문 해교육법은 매년 미국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4,000개 이상의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성인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연방 규칙과 규정들이다.

나. 미국의 평생교육 행정체계

1)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이 있다. 연방정부는 법령에 의거하여 주정부의 평생학습정책을 지원하며, 주정부의 지방기관 및 단체들과 더불어 평생학습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2)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는 WIOA의 Title II(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와 Title IV(직업재활 프로그램법)를 모두 관리하며, 산하 기관으로는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국(Th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OSERS), 직업, 기술 및 성인 교육국(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OCTAE), 초등 및 중등 교육국(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ESE), 고등 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OPE), 시민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 기획, 평가 및 정책 개발국(Office of Planning, Evaluation and Policy Development: OPEPD), 재무 및 운영 사무국(Office of Finance and Operations: OFO)이 있으며,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OCTAE), 고등 교육국(OPE)이 있다(ED, 2021).



[그림 Ⅲ-6]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

3)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OCTAE)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OCTAE)은 성인교육 및 읽고 쓰는 능력, 직업 및 기술 교육, 지역 전문대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은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과, 학업 및 기술교육과, 커뮤니티 칼리지로 구성된다(OCTAE, 2021).

4)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과(Division of Adult Education and Literacy: DAEL)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과(DAEL)는 성인들이 중등학교의 수료, 향상된 가정생활, 시민권 획득,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인이 읽기/쓰기, 수학/영어 능력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적인 근로자, 가족 구성원 및 시민이 되도록 돕는 성인교육 및 문해력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과(DAEL)는 각 주에 대한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AEFLA)의 공식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질, 책임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성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리더십 활동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5) 학업 및 기술교육과(Division of Academic and Technical Education: DATE)

학업 및 기술교육과(DATE)는 모든 학생들이 도전적인 학업, 기술 및 취업 능력을 습득하여 중등교육 후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학업 및 기술교육과(DATE)는 Carl D. Perkins의 직업 및 기술교육법(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주정부가 프로그램 관리, 구현 및 책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고, 양질의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OCTAE)의 커뮤니티 컬리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그 개념을 우리의 시스템에 맞춰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2년제 대학이기도 하면서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중간교육기관이기도 하며, 직업학교나 제도 교육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기관이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력 개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모든 미국인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및 훈련을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구축하며, 교사/관리자/학생/학부모 및 고용주를 위해 시기적절하고 실행가능한 지침을 만들고 보급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증 및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7) 고등 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OPE)

고등 교육국(OPE)은 교육 보조금, 기회 부여 및 인증 절차와 고등교육 정책 및 규정 개발에 있어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등 교육국은 단과대학들의 역량

을 강화하여 개혁, 혁신 및 개선을 촉진하고, 미국 학생들의 대학 이수율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등 교육국은 고등 교육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Programs: HEP), 국제 및 외국어 교육 사무소(Office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FLE), 국제 및 외국어 교육 사무소(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Innovation: PPI), 3개의 부서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8)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노동부는 WIOA의 Title I(Adult, Dislocated and Youth service) 및 Title III(Wagner-Peyser Act)를 관리한다. 노동부는 기금 지원 및 지원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금은 직업과 관련한 기술훈련 또는 직업준비훈련에 참여하는 성인직업훈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노동부는 성인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실직 노동자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청년 취업 및 훈련 프로그램, 와그너-페이저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WIOA의 Tile I과 Title III를 관리하고 있다(DOL, 2021).

9)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보건복지부(HHS)는 "안전한 보건 복지의 향상"을 모토로, 효과적인 건강 및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 공중 보건의 기초가 되는 과학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의 건강과 웰빙 향상을 목표로 한다. 1979년 교육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부분은 교육부로, 보건 복지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었다(HHS, 2021).

보건복지부(HHS)는 Head Start 사무국(Office of Head Start: OHS)을 통해 Head Sta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1,600개 기관과 커뮤니티에 자금 지원 및 감독을 한다. 또한 Head Start 사무국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교육 및 기술 지원(TTA) 시스템을 제공하여 적격 아동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장 취약한 어린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5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 학습, 건강 및 가족 복지의 핵심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서 약 1백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센터, 보육 가정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CLKC, 2021).

10) 주정부(예: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주는 교육부 산하의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과(DAEL)에서 성인교육과 직업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Hub기관을 두고 각 지역 내에서 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성인교육을 위해 구분된 지역은 Northwest, Central-Northeast, Southwest, South-Central, Southeast, Philadelphia이며, 직업교육을 위해 각 지역별로 전문 직업능력개발센터(Regi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s)를 운영하고 있다(평생교육진흥원, 2008).

11) 성인계속교육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AACE)

성인계속교육협회(AAACE)의 임무는 성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고, 이론, 연구, 정보 및 모범 사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성인계속교육 분야를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인계속교육협회는 직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직업과 관련한 정책과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 1982년, 공공 및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and Continuing Adult Education: NAPCAE)와 성인 교육 협회(Adult Education Association: AEA) 합병의 결과로 성인계속교육협회(AAACE)가 설립되었다. 2000년 AAACE 성인기초교육위원회(Commission for Adult Basic Education: COABE)는 AAACE를 떠나 독립 기관이 되었지만, 두 기관은 계속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AAACE, 2021).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협회(AAACE) 내에는 크게 7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며, 각 위원회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력(Adult Basic Education and Literacy: CABEL)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력 분야에서 정책 및 관행의 연구, 토론 및 시행을 촉진한다. 또한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력 분야의 전문가 개발을 담당한다.

나) 지역사회 및 소수자 비정규교육(Community, Minority, and Non-Formal Education: CCMNFE)

CCMNFE는 소수자 및 비정규 평생학습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촉진한다. CCMNFE는 소수자 및 비정규 평생학습자가 생산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 발전과 인간 성취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관련 공공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헌신한다.

다) 원격 학습 및 기술(Distance Learning and Technology: CDLT)

CDLT는 네트워크 학습 환경에서 성인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 및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인 학습에 대한 온라인 및 원격 학습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네트워크 학습 환경에서 성인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상 기술을 통한 학습에 대한 지식과 실습을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계, 직장, 커뮤니티 등 기타 환경 전반에 걸쳐 성인 교육자들 간의 의사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성인대학원생 지원(Graduate Students of Adult Education: CGS)

대학원생 구성원에게 교수 및 기타 전문가와의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CGS는 회원들이 컨퍼런스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GS의 목표는 대학원생 회원들에게 성인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교수 및 기타 전문가들과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 국제 성인교육(International Adult Education: CIAE)

성인교육과 관련된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을 주관한다. CIAE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성인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성인교육협회와 연계와 전 세계 성인 교육자들의 회의 참여를 장려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바) 성인교육 교수(Professors of Adult Education: CPAE)

성인교육자의 학업 준비와 관련된 중요 현안의 토론을 위한 포럼을 주관한다. CPAE는 다양한 직급과 연령대의 성인 교육 교수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 연대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또한, 가을 연례 AAACE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연사와 네트워킹 이벤트,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패널을 진행하고 있다.

사) 인력 및 전문 개발(Workfor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CWPD)

인력진의 역량, 지식, 경력 기회 및 개발을 증진하는 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담당한다. CWPD는 조직 환경에서 성인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 교육자 및 교육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인력 및 전문 개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다.

다. 시사점

미국의 평생교육은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과 인력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제2부에 속하는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AEFLA)이 미국의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협의회 차원에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첫째, 미국의 사례는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에서는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주정부에서는 교육부의 산하 기관인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국(OCTAE)에서 정책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평생교육 정책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평생교육법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각 기관별 정책의 시행에 있어 각자 해석의 범위와 역할이 모호하여, 업무의 중첩과 결핍이 존재하고 있기에 평생교육법의 수행에 대한 동일한 해석과,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주정부의 정책 수행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수행이 각 주 별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평생교육 정책은 각 지자체 별, 기관 별로 수행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 정책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 별, 기관 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협의회 차원에서는 성인계속교육협회(AAACE)의 7개의 위원회가 각각 본연의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고, 이에 따라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평생교육협의회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최근 4차산업혁명이나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평생교육협의회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Chapter Ⅳ

분석 결과

주 요 내 용

1 면담 분석 결과

2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IV. 분석 결과

1. 면담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현황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에 이어, 추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령 미비, 추진동력의 부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 전문인력의 부재, 추진체계 내 전담기구의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네트워크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1) 법령 미비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선행 요건 중 하나는 법과 제도의 정착이다. 따라서 전문가들로부터 헌법,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상 제시된 용어의 일치와 법 체계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다. 특히, 평생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안에 위치하고 있어 그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전문가 H) "**평생교육의 용어들의 법령 상에 있어서 체계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는 평생교육,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에는 사회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에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조차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들이 법제정의 목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평생교육이 교육기본법에서의 관한 규정에서는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권이라던가 사회교육 실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규 상에서 혼용되고 있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서 법체계화를 해야하는데. 현재 평생교육법이 사실은 정의를 하는데 학교 이외의 모든 교육 이렇게만 해놓고. 사실은 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쫙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안에 있단 말이예요.**"

(전문가 A) "**그리고 평생교육법 26조에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배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뽑지 않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더욱이 교육부 산하에 대학 평생교육원에 전화해봤는데 전부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 1명 정도. 자격증만 빌려서. 이게 굉장히 교육부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에요. 교육부 자체가 제일 큰 문제인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부를 없애고 차라리

행안부 소속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조항도 현장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다수의 기관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추진체계의 중심부에 있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조항의 불이행은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의 어려움이나 전문인력 부족과도 맞닿아 있다.

2) 추진동력의 부재

둘째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추진동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분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교육의 영역과 대상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그에 상응하게 매우 복잡해진 현장의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추진체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F) “그런 것들이 **각각 알아서 다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추진체제라고 하는 게 되게 힘이 약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 중에서 메인은 학교교육 쪽이니까 교육부 내에서도 평생교육정책 하는 데가 제일 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중앙정부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서 정책들이 내려오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어져 내려오니까.”

특히, 교육부 내 평생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같은 힘의 논리가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심의·협의 기구인 국가평생진흥위원회, 광역시·도 진흥위원회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부부처간, 광역간, 기관간 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생교육 추진체계에는 행정기구, 심의·협의 기구, 그리고 전담기구가 존재하고 수평적, 수직적으로 그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절적으로 존재하며,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문가 E) “**국가평생진흥위원회라던가 광역시·도진흥위원회라던가 교육감협의회든 평생교육기관장협의회든 조직이 있으나 사실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통정리한 것이 아니라, 국평원도 이름 바꾼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합의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평생교육추진체제 동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선만 있는 것이지.**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예를 들면 구청장 말 듣지, 평생학습관도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산하, 지자체 그것도 따로 놀아요. 교육청 산하는 교육감 말 듣고, 다른 쪽은 구청장 말 듣고. 완전 따로 노는 거죠.”

또한 지자체로 평생교육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지자체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이 추진동력의 부재로 이어지고 결국 지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추진동력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평생교육 분야 자체의 예산도 부족하지만,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지원과 관심의 정도가 예산과 직결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F) "교육 섹터는 전부 서울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국이 있지만, 그 국 안에 청소년 문제, 급식문제, 그리고 교육청지원 문제, 그 다음에 평생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평생교육과 예산이 제일 작아. 일이 없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 B) "도시 총회하면 **교육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의욕적으로 오셨다가, 아 교육청의 역할이 없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안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의무도 부여하고,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계속 예산도 배정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3)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

다수의 전문가들이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분리였다. 정부개정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체제는 마련되었으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분리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지자체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 H)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서 교육행정이 사실은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법령의 허가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실천은 지금 허가원이나 이런 것은 없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반행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주민들의 그냥 학습에 대한 그 어떤 흥미, 즐거움 외에는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안 잡힌단 말이죠**."

(전문가 F) "그런데 일단 그런 간극부터가 교육부에서 일반행정 섹터를 통제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교육부 장관 이야기를 일반행정은 안 들어요. 딱히 귀 기울여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이야기를 들어야지**. 지침이 내려오면 행정안전부 사업을 하면 했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행정과의 연계로 인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고유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했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지며, 사업의 지속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관, 기구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에서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F)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그 신뢰 관계가 한 번만 잘 형성되어서 쭉 가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보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마다 그 신뢰 관계를 새로 쌓아야 돼요**. 이건 모든 진흥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진흥원들의 관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순환보직이니까 그 담당 파트너를 알려 주는 것. 예를 들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면 저희 업무 보고를 그 때마다 드리러 가야 돼요."

4) 전문인력의 부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부 내부에 평생교육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체계적 구상 또는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평생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부재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 E) "우리가 말하는 직업진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평생교육인데 그 기능이 사실 교육부에 없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기존에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멤버들 저희 전원이 사실은 초중고에 대해서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오히려 반대로 **대학졸업 이후에 대한 전문가는 교육부 공무원도 없고, 교수도 없고, 고민할 사람도 없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것을 고민하고 알아야 땡겨 오거나 만드는데. 지금 매일 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또 대학은 대학교수가 대학에 있잖습니까. 전문성이. 그럼 **대학 이후에 전문성을 갖고있는 공무원과 연구진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전문가 B)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나 컨트롤타워 안에 평생교육 전문가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에요**. (중략)...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10대 의제를 작성을 한 게 있는데 평생교육은 정말 관심이 없구나. (웃음) 생각했어요. 10대 의제에 추진체계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정말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일부 중에 일부. 저는 어떻게 돌봄하고 마을 공동체 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인데."

전문인력의 부족은 비단 교육부 내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추진체계 자체보다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평생교육사와 같은 전담인력의 부족은 현장 상황을 사업에 반영할 수도 없으며 평생교육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전문가 A) "**그래서 추진체계는 되어있지만 전담인력이 안되어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장하고 괴리가, 현장의 일과 연계가 되어서 가야하는데 현장은 현장대로 놀고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놀고 있으니 오히려 서로가 힘들고 예산은 못 만들어가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학교 평생교육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도, 사실은 이게 평생교육의 영역

이 자꾸만 쪼개져서 다른데로 넘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전의 뭐 프로그램하는 이게 평생교육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프로그램은 하나의 조그만한 거고, 그걸 만들어가기까지의 많은 그 평생교육의 영역들, 기반을 다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

(전문가 A) "그 민간도 죽어버릴 수 밖에 없는게, 평생교육에 공공영역이 공무원으로 제대로 임용이 되고, 그 직렬이 있으면 거기 표준이 만들어져서 민간이 그 표준을 갖고 따라갈 수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온 평생교육사 자체가 직렬이 없으니까 이게 막 흔들리니까 민간도 어디 기준을 두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자격은 전부 다 자격에 의해서 임금이 체결되면 평생교육사는 그냥 최저 기준점에 하지 자격을 갖고 해주지 않는거에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비정규직을 뽑을 때도 자격증을 갖고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최저임금으로 하는데가 더 많은거에요. 그래서 이게 직렬이 급선무하게 되어야하고, 지금 채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직렬이 없으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사실은 임기제 공무원이 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는 그 제도인데도, 이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뽑는 일이다 보니 비정규직은 정년까지 할 수도 있다 해서 그걸 오히려 더 정식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장이 지금 있는 거에요."

동시에 전문가들은 전문인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사는 직렬이 없어 5년 단위의 한시적 채용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법령 미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추진체계 내 전담기구의 현실과 어려움

먼저, 추진체계에서 광역시와 시·도 진흥원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은 임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중앙단위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전담기구나 협의기구, 전달체계 역시 강제 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각 기구의 역할이 모호하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일부만이 평생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어 진흥원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평생학습의 중장기 발전 계획 없이 시(市) 행정 방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전문가 D) "진흥원이 못 할 수밖에 없는 예산과 조직을 줘 놓고 진흥원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흥원의 무능함을 강조하는데, 진흥원의 설립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시가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전담 기구의 탓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해주지 못한, 분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전문가 B) “그리고 진흥원의 기능, 뭐 이런거 이야기 할 때 **중장기 계획을 광역은 보고를 해야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없는 도시들이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물론 뭐 다 5년이어야 하는 법은 없지만, 나름대로 3년, 5년 해가지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쭉 가야되는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없는데가 많아요.”

또한 심의·협의 기구 기능이 부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차원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협의기구인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B) “뭐 광역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제적인 어떤 심의기능을 운영하려면 권한이 있는 협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로봇처럼 와서 다 예스, 예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의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조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을 거에요. **평생교육 시행 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박수부대 같은 이런 것이 서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H) “너 지금부터 네가 다 결정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서 정한다고 해도.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는데. 또 지자체장이 이거 귀찮은데 왜 위원회 만들어서 내가 다 할 건데. 감나라 배나라 왜 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 F) “**일단 심의기구들이 거의 구동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시만 해도 지난번에 서면으로 되어 있고, 행정기구하고,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자치 교육청, 특히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가 별로 협업하는 것을 못 봤어요.** 사이가 더 안 좋아. 당연히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도 협의를 잘 못 할 거예요.”

이어 교육지원청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협의’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나 지정에 관련 사항이 교육감의 협의 대상이다. 또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부의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지정해, 시·도 교육청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교육지원청을 통한 평생교육 영역 확장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B) “그래서 **사실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팀도 아니에요. 평생교육학원관리팀이에요. 팀 이름이.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전담할 수 없는 구조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맨날 뭐 학원점검**.”

(전문가 A)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뭘 못하고 있냐면, 그 복지쪽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요. 근데 그게 이제 복지만 들어가서는 안되지. 교육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교육복지가 들어가면 복지사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평생교육사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복지사를 학교에 배치시겠다고, 학교 복지사라고 또 만들었어요. 근데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아무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 문제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역시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초자치단체 일반자치 측면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로 구분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경우 평생교육정책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위의 사례처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폐지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듯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평생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 A) “옛날에는 학습관이 그래도 교육청 소속이 주였으니까. 국평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학습도시 되고 나서부터 이제 예산이 국평원으로 나가면, 국평원도 이제 예산이 작으니까 이걸 지자체 대응투자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거에요. **그럼 지자체 사람들이 돈 투자하면서 교육청 학습관을 주겠어요? 자기네 지자체 학습관을 주지. 그러니까 예산이 오는게 하나도 없는거야. 교육청 소속 학습관은 아예...** 교육청도 그렇고, 국평원하고는 연계가 거의 안되고 있는거에요.”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로 인해, 교육지원청 역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교육이 중심인 관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개발 측면에서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D) “학교평생교육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점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매번 돌아오는 답은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할 수 없다 라는거죠.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면서 폐쇄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전국의 교육청과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 교육청의 최근 답변이었죠. 예를 들어 학부모 역량개발센터라고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성인교육을 하는, 문해교육센터도 있지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 그건데 그 부분만 하고 더 이상 열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교육청으로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6) 네트워크의 부재

평생교육의 추진체계는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갖추

고 있으며, 지방조례 제정 등으로 법적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이에 전문가 다수는 구축된 추진체계의 내에서의 문제점은 기관, 기구 간 네트워크 부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B) "일단 일반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인식시키는 데는 광역진흥원이, 지금 그런 거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여요. 구 입장에서는. 서울진흥원도 예를 들면 시민교육국에 60억 예산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20억의 자치구에 학습관 있는데서 시민대학 열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아직 평생교육을 인식하는게 적기 때문에 어쨋든 지금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그런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이렇게 교류하는 컨텍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전문가 F) "**협치가 잘 안 된다.** 말 그대로.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와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다른 부서는 시하고 저희 같은 전문 집행 조직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대박 싸우고 감사 나가고 이런 흉한 꼴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중략) **추진 체제를 뭔가 법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 놓는다고 현장에서 그게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전문가들은 평생교육 추진체계 자체보다 이를 현장에서 운영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문제를 주장했다. 전담기구, 협의기구 간의 교류나 협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으며, 현재 추진체계가 제시한 이상적인 그림이 현실에서는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

전문가들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크게 용어 재정립, 법령 재정비,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전문성 확보, 학교 평생교육의 강화, 네트워크 확장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용어 재정립

먼저, '평생교육'이 가지는 이념적인 측면, 그리고 대상과 영역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 대신 성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E) "다 평생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유아교육도. 차라리 개인적으로 Adult Edu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교육이라고 영역을 해야 안 건드리지**. 고등교육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 같이 교육행정이 가져가지. 초중고는 절로 가져가지. 이름은 다

평생교육을 붙여요. 알맹이는 전공자가 볼 때는 다 자기 얘기고 무늬만 평생교육이에요. **우리도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체계와 틀은 있더라도 성인교육, 국가성인교육진흥위원회라고 차라리 타이틀을 해야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남들이 덜 건드리지**."

(전문가 H) "그러니까 고등평생교육이 지역화되고 지역화되는 어떤 추진 체제와 직업교육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의 추진 체제 일을.. 지원하고, 제도를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체제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 전담 체제도 좀 바꿔줘야한다는 거죠. (중략) 우리나라 딱 애들 빼고 70%가 성인이야. 평생교육이 대다수야 70%. **그러면 그 70%도 성인들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직업교육에서 언제 감당하고 단기적인 교육밖에 안되잖아. 앞으로 대학도 교수들도 이제 현장하고 같이해서 주문식으로 양성시켜주고 기업은 자기들 데려다가 양성시키고..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해. 앞으로."

이처럼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과 교육기본법에 갇힌 평생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으며, 용어를 성인교육으로 바꿔서 영역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향후 미래 성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법령 재정비

이어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의 계획 수립 시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관련된 헌법 용어,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진흥법 등을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체계상의 기구, 단체들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법령의 체계화는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전문가 H) "**현재 교육 전담기구의 기초자치, 광역자치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담기구 용어도 지금 바꿔야되요**. 저번에도 얘길했는데. 학습관은 교육기능이예요 학습기능 그죠? 근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시군은 학습관이라고 해놓고 읍면동에다가는 또 센터라고 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센터가 더 큰 개념이예요 사실은. 교육기능을 갖다가 학습관에다 넣어 놓은 것을 이렇게 우를 범해놓고 법제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요 사실은. (중략)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의 체계화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해야해요.** (중략) **교육기본법 안에 있으면 대개 교육에 관련된 평생교육법이라고 종속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 부처가 연관되서 작용할 수 있는 법, 평생교육진흥법 사회교육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진흥법을 분리를 해서 아예 교육기본법 밑에 있는 것보다는 교육기본법에 동등하게 하고 모든 부처에서 하는 교육기능들이 평생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병렬적으로 되어져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그런 정비, 헌법부터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바꾸어가느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봅니다."

법 재정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추진체계 내에 있는 기구, 기관들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에서부터 교육기본법, 평생교육진흥법들을 현장에 맞도록 실효성 높은 방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H)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대가 블럭체인화 시대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블럭을 불러와서 체인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제도와 법령에도 이끌어.. **평생학습이 그런 식으로 연계체계로 가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단건 단건 두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지. 이런 제도 법령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안했어 노력을. **법 정비 해야할거 아니예요**.”

(전문가 C)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상 평생교육은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왜 그거를 고유사무로 해야 하냐 하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의 학습권의 실현이 차별화되는 거는 막아야... 학습권은 개인의 인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인권을 많이 강화시켜주고 어느 지자체는 인권 강화가 낮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중략) 그것이 고유사무가 돼야 평생교육 직렬이 생길 것이다.”

(전문가 H) “(예를 들어) 대학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지켰니 안 지켰니. 위원회 실제로 했어? 퍼센트는 맞아? 이거를 정량적으로 다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학교가 지원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묶여서 학생들 장학금도 지급할 수 없고, 아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실질적으로 하기 싫어도 구동을 하는거예요.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위원회도 굴러갑니다. 그래야 거기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고유사무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 A) “**저는 가장 급선무가 직렬이 생겨야 된다는 거에요. 직열이 생겨야 되는데, 평생교육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업무 조항이 있는데 직렬이 없으니까, 임용을 임기제로 뽑거나 비정규직으로 뽑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직렬이 생긴다면, 그 직렬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채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기관에도 표준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임금 체계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어디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임금 체계 표준이 없으니까 모두가 같이 죽는거에요.”

특히,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고유사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사무가 되어야 지자체장의 의지를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의·심의 기구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고유사무가 되어야 직렬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민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새로운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타부처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C)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또, 기초지자체, 행복학습센터,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 부처는 전달체계가 없어요. (중략) 그 사람들은 컨텐츠만 있지 어떻게 이걸 전국민 대상으로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예산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나 광역진흥원에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있는게 있으니, 너희들 원하면 금융위원회에 나와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게 할게. 그래서 우리의 전달체계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라고. 그 다음에 뭐, 학점은행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 다양한 제도나 전달체계를 가지고 타 부처의 교육 내용들을 전달시켜 줌으로써 그 안에서 겹치지 않게**.”

(전문가 H) “아직도 평생교육이 전부 어디로 가있어요? 학위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정규학교 체제에 얽매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산학, 그리고 이런 평생교육 사업이 관산학으로 이끌어지면서 직업교육과도 연계가 가능해요. **지자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 받아서 얼마든지 운영하거든요? 그런 협업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중략)”

(전문가 F) “우리 평생 교육에 중앙 광역 기초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행정의 칸막이 라인으로 물 흐르는 통로를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평생교육이 관여되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전체 행정에서 각 협업 구조들이 중앙에서든 예산에서든 한 통으로 해 가지고 지역으로 쭉쭉 내려 주고 지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것들을 그 예산을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어 교육부의 평생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책 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연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장 중심의 제도 도입, 정책 평가 모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B) “일단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정말 120%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사람 한사람이 정말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 전체를 보시는 연구를 하시면서 그 연결망이라던지, 법적으로 탄탄하게 하는 것, 교수님들이 그런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가 좀 커져야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현 상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려면 아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바로바로 유연성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결정자의 관심, 정치력,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야 되지 않나**.”

(전문가 G) “디지털교육, 기업맞춤형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점점 바뀌고 있어요. 아마 직업 훈련 중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계좌제. 2010년도에 바뀌었다면, **지금 스마트훈련, 기업맞춤형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이 2020년인데 10년 만에 최대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훈련기관들이 그런 제도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나눠질 부분도 있고, 통합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H) “지금 학습도시에 평가가 있잖아요. 학습도시 평가 제도도 전환해야해요. 이게 뭐냐면 효율 중심의 평가란 말이예요. 평생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형식, 비형식인데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평가한다고 거기에 시장 경제에 입각한 간이 모형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효율성 그런거잖아요. 학습 도시에 무슨 뭐 학생이 얼마나 됐냐 이런 차원에서 그냥 어느 기관, 사업체 기관, 영리 기관의 수익을, 효율성을 어떻게 하냐는 평가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려 몇 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도하는 쪽으로 개도하고, 진단해서 개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평가모형으로 전환을 해야하는 거죠**.”

4)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치 및 역할 정립

이어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체계 전반의 변화 모색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존재했다.

(전문가 C) “그런데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족을 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힘이 실릴 거 같다.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국회 및 의회 참여 확대에 관심 많죠. 국회가 최근에는.”

(전문가 F) “위원회로 청와대나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나 아무튼 각 부서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 조직으로 평생교육원 입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C) “사회부총리로써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법에 있는 인적자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동을 시켜라.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뭔가가 될 것이다. 그 인적자원위원회 안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논의하면 될 것 아니냐.”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회부총리 체제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적자원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주장한 전문가도 있었으며, 국무총리 산하로 하여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통해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존재했다.

(전문가 F) “교육위원회라도 당장 강력하게 추진 조직을 만들어 주셔서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나 위원회 조직으로 평생교육은 거기서 담당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예산과 추진 인력을 실어 주시는데 순환보직자 말고 몇 년 동안 있을 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교육 회의는 필요가 없어요.”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존재했다. 현재 전담기구로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한정적이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관계에서도 교육부의 전달체계로서, 평생교육 로드맵을 전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E) “**국평원은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서평원이 국평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평원이 국평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산이 국평원 보다 서평원, 경평원이 더 많을 거예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말을 듣겠죠. 그거에 대한 고민. **기존에 국평원이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는 이상 경평원 서평원은 말을 안 듣죠**.”

(전문가 A) “이게 좀 여기에 국가진흥원에서 이쪽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거야. 이쪽이 연결이 되야 협치가 되는거지 **교육부에서만 내려지고 국평원에서 이게 안되면 협치라는게 교육부에서 맨날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엮어줘**.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교육부를 대신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체계 간의 협력과 협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기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새로운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시대가 앞당긴 비대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디지털 체계,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D) “저희의 역할은 지금 전담기구로서 지역 특성에 맞게 디지털 온라인 컨텐츠 개발이나 그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완비를 해야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이 그래도 이 시기에는 이 학습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 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추진체계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기관이 연계된 형태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주도의 종합 온라인 학습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체와 연계하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생할 수 있는 신개념 추진체계 구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7) 전문성 확보

전문가들은 앞서 제시한 평생교육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성인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전문가 E) "교육부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학하고 평생교육에 판을 벌리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대학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그럼 과연 평생교육은 뭐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는 더 지금 연구용역을 더 벌리고, 판을 벌려야지. 고민도 안 하고 전문가도 없이 뚝 떨어질 방법은 없죠. 오히려 그쪽으로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판을 키워야 한다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듣고 판을 벌려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인교육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특히,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앞서서 설명한 평생교육의 고유사무와 직렬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으며,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 신분 보장, 그리고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A) "법이 정해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정해져야되요. 법이 바뀌어야해요. 그래서 법이 지난번에 되어 있는데 그게 5년내에 하는거니까 아마 내년쯤에 시행이 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거죠. **공무원쪽에서도 평생교육사는 그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면 하는거고 자기 혼자 계산하는 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가 1년에 몇십 시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안받으면 승진이 안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평생교육사는 자기 혼자 받거나 말거나 이게 체계도가 안되어 있는거에요.**"

(전문가 H) "**평생교육 신분 보장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평생교육사 인력제도가 공무원 인력제도가 아마 경력직, 기능직 그런.. 지금은 딱 하나, 두개에요. 하나는 그냥 일반 경력직, 그리고 일반 임기제 두 개로 딱 나뉘었어. 그리고 다 통합되어 버렸잖아요. 그 일반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 티오를 잡는 거예요. 일반 경력직은 한번 들어가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일반 임기제는 5년 정도에서 정원 티오를 잡으면서 그 공무원은 계속 티오는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은 5년씩... 저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죠. 일반 임기제와 선택제로 나뉘어져요. 선택제도 5년 후에 재고용하는데 적어도 일반 임기제에 고용할 수 있는 1-2명 받더라도 선택직이라도 해서 이제 일반 임기제 최소 한명은 되야하고... 선택적으로 많이 고용을 확대하고 그게 안되면 공무직으로도 바꿔주기도 하고. 그게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수 체제를 정비하여 확산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C)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찾고**, 우리가 발굴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과정들, 정보교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의 **연수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8) 학교평생교육의 강화

전문가들은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가장 높은 주민 접근성을 지닌 공간 자원이므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전문가 H) "학교 평생교육을 왜 활성화시키자고 했냐면 지금 현재 대도시 지역만 빈익빈 부익부 평생교육이예요 지금. **그런데 학교 평생교육을 해야하는 이유가... 농촌에 있는 학교밖에 없어요**. 거기에 교육인력이 교강사로써 평생교육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밖에 없어요. 교사들이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두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런 제도가 주요 사각지대의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중략)"

(전문가 A) "그래서 **일보다는 자원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협업을 만들어가야하지**, 지금 우리 마포에 있던 센터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면서 학교평생교육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한 수료자들이 학교에 가서 다시 돌봄 교실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교육청 소속이라 좀 신뢰하고 써보고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지역 인적자원을 평생교육에서 결과물이 나온게 학교의 평생교육으로 다시 연대해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것도 결국 평생교육이 만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평생교육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또한 학교 평생교육은 지역 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9) 네트워크의 확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가들은 기존의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는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이라고 언급했다. 그 중 대학은 주민 접근성이 높으며,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학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C) "**대학의 문을 열어라**. 랩실, 컴퓨터 실, 강당, 회의장 카페 시설물 엄청 좋아요. 도서관? 텅텅 비어요. 그걸 열어야 그걸 열어야 공짜로 열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여기 대학이 참 좋네. 저기서 뭐 한다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어? 무료라는데? 아니면 뭐 싼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생겨서, 대학에서 더 전문적인 걸 하게 되고**. 나 이거 한번 전공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전문가 H) "**근데 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해요. 할려고 생각한다면 대학부설 평생교육 지원해야해요. 그래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거**.. 그러니까 관산학연으로 이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야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시·군 협의회처럼 새로운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핵심은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고, 서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D)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포럼처럼 따로 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시·군협의회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시 빼고 구군협의회인거죠. 구군들을 다 모아서 진흥원에서 하면 되니까. 시에서 할 필요 없이. 각 구군의 평생학습관에 관장님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어떤 레벨까지 하는가는 맞춰봐야겠죠. 한편으로는 **시군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한 협력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 말고 완전 전문가. 포럼이 됐던 무엇이 됐건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으면서 숙제를 줘가지고 답을 받아서 왜냐면 지금 고민하시는 집단학습이나 온라인 쪽으로는 어떻게 가야할까. 물론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낼 순 없겠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가 나갈 수 있고."

2.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문헌 분석과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 과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1,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문헌 분석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11개 주요 개선 과제와 59개의 세부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세부 개선 과제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구분	번호	세부 개선 과제	평균	표준편차	CVR	최대값	최소값
1. 용어 재정립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	2.67	1.86	-0.75	7	1
2. 법령 재정비	2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5.96	1.23	0.33	7	4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5.88	1.30	0.33	7	2
	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6.33	0.82	0.75	7	4
	5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6.46	0.93	0.75	7	4
	6	평생교육법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6.33	0.92	0.75	7	4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7	교육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 기능 강화	5.88	1.23	0.50	7	2
	8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6.00	1.18	0.58	7	3
	9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5.75	1.36	0.42	7	2
	10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5.96	1.40	0.67	7	1
	11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5.71	1.52	0.33	7	2
	12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예산, 인건비 등 포함) 직접 지원	5.83	1.37	0.50	7	2
	13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의 역할 강화	5.00	1.64	-0.25	7	2

	14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 담당 인력 확대	5.17	1.69	−0.08	7	2
	15	평생교육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교육부 전권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구(광역진흥원, 기초평생학습관 등)의 독립성 보장	5.46	1.41	0.25	7	2
	16	평생교육 관련 일반행정 기관의 역할을 예산 지원 및 감독으로 제한	4.50	1.67	−0.42	7	1
	17	시·도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4.50	1.79	−0.33	7	1
	18	시·군·구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3.92	1.72	−0.75	7	1
	19	시·도교육청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4.29	1.78	−0.42	7	1
	20	전국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및 운영 지원	5.46	1.50	0.08	7	2
4.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21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6.38	0.92	0.75	7	4
	22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6.08	1.56	0.50	7	1
	23	국가교육회의를 지원하는 교육부 내 부서 조직 신설	5.29	1.46	0.08	7	2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6.13	1.26	0.75	7	2
	25	평생교육기능(온라인 디지털 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준의 중앙정부 정책 기구 신설	4.63	2.10	0.00	7	1
	26	전문성 강화 위해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은 교육청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타기관으로 위탁 또는 공동 추진	4.04	2.14	−0.25	7	1
	27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5.42	1.64	0.33	7	1
6. 추진체계 내 기구	28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5.46	1.61	0.25	7	2

역할 강화	29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공식적 협의 기능 부여	5.42	1.61	0.17	7	2
	30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기능 부여	5.17	1.63	0.08	7	2
	31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5.46	1.56	0.25	7	2
	3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 간 역할 구분의 명확화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33	1.49	0.00	7	2
	33	시·도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 강화	5.67	1.37	0.50	7	2
	34	시·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등 구축 및 운영	5.96	1.20	0.33	7	2
7.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35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6.04	1.33	0.50	7	2
8. 전문성 확보	36	평생교육 전문가 협회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5.54	1.38	0.25	7	2
	37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6.04	1.08	0.67	7	2
	38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	6.13	1.08	0.75	7	2
	39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전 보장	6.54	1.18	0.83	7	2
	40	평생교육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제 강화	5.96	1.08	0.58	7	3
9. 학교 평생교육 강화	41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5.63	1.44	0.33	7	2
	42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원으로서 학교 교사 활용	4.21	1.74	−0.67	7	1
	43	지역평생교육기관 또는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5.25	1.67	0.00	7	2
	44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	5.58	1.64	0.25	7	2
10. 긴밀한 네트워크	45	지역학습공동체와 단위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학교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5.63	1.35	0.25	7	2

구축	46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5.71	0.95	0.25	7	4
	47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협의회(전국 수준의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계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5.54	1.47	0.25	7	2
	48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협의회(특정 광역시·도 수준의 광역 평생교육 관계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계 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5.46	1.44	0.17	7	2
	4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4.54	1.74	−0.25	7	1
	50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5.92	0.93	0.42	7	4
	51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6.42	0.88	0.67	7	4
	52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6.46	0.83	0.75	7	4
	53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 확대	5.54	1.06	0.08	7	4
	54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6.46	0.98	0.75	7	3
	55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6.04	1.33	0.50	7	3
	56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등)와의 정책 연계 강화	6.04	1.30	0.58	7	3
11.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57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	6.50	0.78	0.83	7	4
	58	시민사회, 지역학습공동체 등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6.04	0.95	0.33	7	4
	59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5.83	1.17	0.17	7	4

위의 <표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CVR값과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온 문항은 추진체계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의 세부 개선 과제 중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평균: 6.50, CVR: 0.78)”였으며, 이어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문항 중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평균: 6.46, CVR: 0.83)”,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평균: 6.46, CVR: 0.98)”,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평균: 6.42, CVR: 0.88)”, 법령재정비 문항 중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평균: 6.46, CVR: 0.93)”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평균: 6.33, CVR: 0.82)”, 전문성 확보 문항 중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전 보장(평균: 6.54, CVR: 0.83)”과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평균: 6.13, CVR: 0.75)”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법령 재정비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세부 개선 과제의 평균값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 24명 대상 CVR 기준값 .37을 충족시키지 못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용어 재정립의 1번 문항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 교육부의 역할 강화의 13번 문항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의 역할 강화”, 16번 문항 “평생교육 관련 일반행정 기관의 역할을 예산 지원 및 감독으로 제한”, 17번 문항 “시·도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18번 문항 “시군구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19번 문항 “시·도교육청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의 25번 문항 “평생교육기능(온라인 디지털 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준의 중앙정부 정책 기구 신설”, 26번 문항 “전문성 강화 위해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은 교육청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타기관으로 위탁 또는 공동 추진”, 추진체계 내 기구역할강화의 30번 문항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기능 부여”, 학교평생교육강화의 42번 문항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원으로서 학교 교사 활용”, 43번 문항 “지역평생교육기관 또는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의 49번 문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등 35개 문항이 CVR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용어 재정립의 1번 문항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에서 주관식으로 제시된 ‘평생교육’의 명칭으로 추천하고 싶은 표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생학습”, “성인계속교육”, “지속가능

한 학습", "자발적 교육", "성인교육", "성인평생교육" 이라고 응답하였다.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의견은 아래 <표 Ⅳ-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Ⅳ-2>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리

구분	전문가 의견
1. 용어 재정립	- 성인기의 교육적 경험이라는 초점의 명확화가 요구
2. 법령 재정비	- 평생교육법 체계에 따른 공무원 임용령 "평생교육" 직렬 신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평생교육법 개정 시 보건·교육복지 영역을 추가하여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보건·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 마련 -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교육을 법적 시스템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국가자격인 평생교육사 자격 가산점 제도, 자격수당 부분 - 「교육기본법」에서 '사회교육'이라는 법률 용어 사용으로 법률 용어의 통일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6조의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평생교육"을 추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강화 필요 - 국가의 총리실 산하로 국가평생교육진흥처를 설치하고, 국가평생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정부부처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 교육부는 실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적 역할과 총괄적 역할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향의 체제 개편 요구 - 앞으로 나아가야할 교육방향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부의 중심 역할 강화
6.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	- 교육부와 고용부의 이원화된 구조
7.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강화 - 비대면 교육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생활밀착형 학습체제
9. 학교 평생교육 강화	- 교육행정 부문인 교육감과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
10.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교육행정 부문인 교육감과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 - 수평적 네트워크는 더 긴밀하게, 수직적 네트워크는 과도하지 않게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바람직
11.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 분권화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평생교육의 경험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제 재구축 - 전생애 경력개발 지원체제 구축

나.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3>과 같다. 1차 델파이와 동일하게 59개 문항에 대한 2파 델파이는 동일한 CVR 기준이 적용되었고,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도 산출되었다.

<표 Ⅳ-3>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구분	번호	개선 과제	평균	표준편차	CVR	최대값	최소값
1. 용어 재정립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	2.33	1.09	-0.92	6	1
2. 법령 재정비	2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6.04	0.95	0.33	7	4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5.75	0.99	0.33	7	3
	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6.54	0.59	0.92	7	5
	5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6.67	0.56	0.92	7	5
	6	평생교육법 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6.67	0.56	0.92	7	5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7	교육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 기능 강화	6.08	0.83	0.83	7	3
	8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6.21	1.06	0.67	7	3
	9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5.63	0.97	0.42	7	3
	10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5.83	1.24	0.67	7	2
	11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5.83	0.87	0.50	7	3
	12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예산, 인건	6.21	0.66	0.92	7	4

		비 등 포함) 직접 지원					
	13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의 역할 강화	5.00	1.06	−0.50	7	2
	14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 담당 인력 확대	5.08	1.18	−0.33	7	2
	15	평생교육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교육부 전권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구(광역진흥원, 기초평생학습관 등)의 독립성 보장	5.63	0.97	0.33	7	3
	16	평생교육 관련 일반행정 기관의 역할을 예산 지원 및 감독으로 제한	4.63	1.21	−0.58	6	2
	17	시·도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4.42	1.47	−0.50	6	1
	18	시군구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3.50	1.18	−1.00	5	1
	19	시·도교육청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4.08	1.25	−0.75	6	1
	20	전국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및 운영 지원	5.83	1.01	0.42	7	3
4.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21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6.54	0.66	0.83	7	5
	22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6.50	0.78	0.83	7	4
	23	국가교육회의를 지원하는 교육부 내 부서 조직 신설	5.50	1.32	0.33	7	2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6.29	0.75	0.83	7	4
	25	평생교육기능(온라인 디지털 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준의 중앙정부 정책 기구 신설	4.42	1.77	−0.25	7	1
	26	전문성 강화 위해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은 교육청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타기관으로 위탁 또는 공동 추진	3.79	1.44	−0.58	6	1
6.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	27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5.83	0.92	0.58	7	3

	28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5.88	1.03	0.42	7	3
	29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공식적 협의 기능 부여	5.63	1.06	0.17	7	3
	30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기능 부여	5.42	1.14	0.33	7	3
	31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5.75	0.99	0.50	7	3
	3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 간 역할 구분의 명확화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71	0.86	0.33	7	3
	33	시·도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 강화	5.96	1.20	0.75	7	2
7.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34	시·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등 구축 및 운영	6.21	0.88	0.83	7	3
	35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6.33	0.96	0.75	7	3
8. 전문성 확보	36	평생교육 전문가 협회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5.96	1.00	0.75	7	3
	37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6.25	0.90	0.83	7	3
	38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	6.25	0.90	0.83	7	3
	39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전 보장	6.71	0.69	0.92	7	4
	40	평생교육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제 강화	6.21	0.72	0.83	7	4
9. 학교 평생교육 강화	41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5.79	1.02	0.42	7	4
	42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원으로서 학교 교사 활용	4.21	1.59	−0.67	7	1
	43	지역평생교육기관 또는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5.21	1.28	0.08	7	2
	44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	5.75	1.26	0.50	7	2
10.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45	지역학습공동체와 단위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학교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5.63	1.13	0.33	7	2
	46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5.58	1.06	0.42	7	3

	47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전국 수준의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계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5.42	1.38	0.33	7	2
	48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협의회(특정 광역시·도 수준의 광역 평생교육 관계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계 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5.42	1.06	0.08	7	2
	4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4.42	1.38	−0.75	7	1
	50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5.92	0.72	0.42	7	5
	51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6.58	0.58	0.92	7	5
	52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6.63	0.49	1.00	7	6
	53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 확대	5.83	0.70	0.50	7	4
	54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6.58	0.72	0.92	7	4
	55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6.42	0.78	0.67	7	5
	56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등)와의 정책 연계 강화	6.38	0.82	0.75	7	4
11.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57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	6.54	0.78	0.83	7	4
	58	시민사회, 지역학습공동체 등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6.08	0.88	0.67	7	4
	59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5.92	0.83	0.42	7	4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전문가 24명 대상 CVR 기준값 .37을 충족시키지 못한 문항은 삭제되었으며, 1차 델파이에서 35개의 문항이 탈락했으나 2차에서는 22개의 개선 과제가 탈락하였다. 1차 델파이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11번, 20번, 27번, 28번, 31번, 34번, 36번, 41번, 44번, 46번, 53번, 58번, 59번 문항은 전문가들의 조정 의견에 따라 2

차에는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37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다. 최종 과제 도출 결과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는 다음 <표 Ⅳ-4>와 같으며, 총 10개의 개선 방향과 37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표 Ⅳ-4> 최종 개선 과제 도출 결과

구분	번호	개선 과제
1. 법령 재정비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2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3	평생교육법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2. 교육부의 역할 강화	4	교육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 기능 강화
	5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6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7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8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9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예산, 인건비 등 포함) 직접 지원
	10	전국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및 운영 지원
3.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11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12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5.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	14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15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16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17	시·도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 강화
6.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18	시·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등 구축 및 운영
	19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7. 전문성 확보	20	평생교육 전문가 협회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21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22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
	23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전 보장
	24	평생교육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제 강화
8. 학교 평생교육 강화	25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26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
9.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27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28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29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30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31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 확대
	32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33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34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등)와의 정책 연계 강화
10.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35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
	36	시민사회, 지역학습공동체 등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37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라. 정책 과제 도출

위의 <표 Ⅳ-4>에서 제시된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보다 명확하게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대분류의 용어를 수정, 보완하고, 이에 맞게 세부 개선 과제를 재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법령 재정비는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리,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는 지자체 중심의 각 기구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므로 '광역시·도지자체의 체제 정비'로 변경하였다. 이어 전문성 확보는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로, 학교 평생교육 강화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은 합쳐서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로 재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은 기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 '미래 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이라고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 과제로서 구체적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상기의 6개의 대분류에 맞게 델파이 문항들을 재조정하였으며, 비전과 전략에 해당하는 델파이 문항 또는 세부 개선 과제는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진 협의에 따라 기타 의견에 제시된 의견은 전원 합의에 이른 경우 정책 과제 내용에 포함하였다. 이에 6개 대분류와 21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정책과제 도출

대분류	연번	정책과제	정책과제 연계 델파이 문항
1.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1-1	평생교육 직렬 신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1-2	기본권 및 지자체장의 의무조항 신설 등	지방자치법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평생교육법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2.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2-1	중앙-지방 간 협의 기능 강화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2-2	교육부의 협의 기구 및 체계 개선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2-3	직접 예산 지원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예산, 인건비 등 포함) 직접 지원
	2-4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부처 간 연계조직 운영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2-5	국가교육회의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2-6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및 역량 개선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3. 광역시·도지자체의 체제 정비	3-1	광역시·도 지자체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관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 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등 구축 및 운영
	3-2	평생교육 담당 체계 강화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 안전 보장
4.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4-1	평생교육전문협회 역할강화	평생교육 전문가 협회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4-2	연수 체제 강화	평생교육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제 강화
	4-3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전국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및 운영 지원
5.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5-1	주민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5-2	지역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 확대
	5-3	초중등학교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

	5-4	대학 네트워크 역량 강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5-5	광역시·도 지자체의 부처간 연계 강화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등)와의 정책 연계 강화
6.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구축	6-1	온라인 비대면 교육 체제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6-2	전생애 경력개발 지원체제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6-3	생활밀착형 학습체제	전문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 체제 개선

Chapter Ⅴ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주 요 내 용

1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2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3	광역시·도지자체의 체제 정비
4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5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6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

V.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광역시·도지자체의 체제 정비,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 등 6개 분야와 이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과제의 배경, 목적, 내용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가. 평생교육 직렬 신설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전환 필요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변화 속에서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평생학습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니즈
-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과 함께 추진체제의 정비, 학습기회의 확충 등
- 평생학습 참여 비율이 2000년 17.2%에서 2019년 43.4%로 비약적 증가
-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직화가 시급히 요청됨
- 2007년 법 개정 이후 공공 평생교육전담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평생교육사의 고용이 확대되었지만, 고용의 질 문제도 대두됨
-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인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비율이 15.9%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재직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편임(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자격을 소지하고도 현재 일용직 형태로 배치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 한계 소재 불명확함
- 평생교육사 배치 유무에 따라 교육의 질에 큰 차이가 발생

○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사 배치 확대, 고용 불안정

- 공적 평생교육 전담 시설 증가와 함께 평생교육사 배치 급격히 확대, 그러나 고용의 불안정 지속됨
-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구조의 고용이 극복되어야 함
- 지자체, 교육청, 평생교육계, 교육부 등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의한 평생교육사의 공무원 직렬화 시·도로 이어져 옴

○ 국가·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책무 증가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1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업무 증가

○ 시·도 및 시·군·구에 평생교육 관련 직무수행 공무원 수요 급증

- 시·도 및 시·군·구의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수요: 최소 약 750명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포함 시 공무원 수요 증가
- 2011.04.25.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추진위원회. 평생교육 직렬 신설 건의

○ 정책목적: 평생교육사 배치 현실화와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 직렬화를 통해 공공에 전문인력 배치를 현실화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공공성 확보
- 평생교육사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 평생교육사 자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 책무성을 제고시킴

2) 정책내용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을 통한 배치 기준의 현실화
- 단계별 평생교육사 배치 계획 수립
- 교육부 관련 기관 의무배치
- 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의무배치

3) 기타사항

○ 평생교육 업무의 특수성

- 평생교육 업무는 '학습요구 조사, 교육사업 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습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전문적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생교육 업무는 성인학습자라는 특정한 주민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이자,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교육공간에서 주로 수행되는 교육지원 업무로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 지속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점

- 평생교육사 미 배치: 순환 배치된 공무원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보다는 특성화되지 않은 교양취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
- 평생교육사 배치: 일부 지자체(평생학습도시 중심)는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 담당부서 등에 전문계약직 형태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단기 계약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 확보와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

○ 직렬 요구의 다각화와 법제도화 추진 시·도

- 2011년 평생교육 5단체 연합의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추진위원회' 구성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직렬화 요청
- 2018년 국회 평생교육법 개정입법
- 2021년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평생교육' 직렬화 요구

나. 기본권 및 지자체장의 의무조항 신설 등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평생교육 사무 불명시에 따른 행정의 어려움과 지역 간 격차

-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의 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 한계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정책목적

-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정책내용

○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

○ 평생교육법 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운영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3) 기타사항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우려

- 교육 대상마다 별도의 교육법령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법적 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음

-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이란 실정법을 두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새로운 법률('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음

2.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가. 중앙-지방간 협의 기능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추진동력의 부재

- 국가평생진흥위원회, 광역시·도진흥위원회, 교육감협의회, 평생교육기관장협의회 등의 조직이 존재하지만, 각 조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함께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동력이 부재함

○ 정책목적: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을 통해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한 방향 정렬을 도모하고, 이로써 추진체계로부터의 동력을 얻고자 함

2) 정책내용

○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평생교육 협의 기구를 교육부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여 인력과 정책의 중첩과 손실을 줄여 효과적인 추진체계 추진

○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를 통해 각 지방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3) 기타사항

○ 교육부 내 담당 부서의 역할 강화 요구

- 교육부 내 평생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그에 따라 교육부 중심으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를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행정기구, 심의·협의·전담 기구가 존재하지만 각 조직간 관계가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교육부의 협의 기구 및 체계 개선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의 부재

-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의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시기적절하고 효과적·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체 운영 요구

- 평생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평생교육 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간의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정책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정책의 중첩과 누락이 생김

○ 교육부 내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요구

-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나이, 지역, 직업 등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평생교육 주무과의 증설이 요구됨

-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평생교육을 원하는 현 시대에 맞춰,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무과가 필요함

○ 정책목적

- 교육부장관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을 통해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누수와 손실을 막고,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올바른 시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에 맞는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음

2) 정책내용

○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3) 기타사항

○ 교육부의 역할

- 평생교육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 및 인식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평생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각 지자체와 타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질 관리와, 올바른 시행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함

다. 직접예산지원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 분야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율은 6.8:93.2로 대부분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게다가 교육부의 예산 중 평생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로 학령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교부금률은 부적절함. 이는 사회복지분의 사업에서의 중앙정부 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91.9 : 8.1로 나타난 것과 크게 대조적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평생교육사업을 펼치는데 부담이 크며 충분한 재원의 투입 없이는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광역시·도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적으로 시의 출연금 혹은 보조금,

정부 지원금, 대학, 기업 등의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확보 등으로 사용됨.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 현황을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평생교육 예산(686,638백만 원)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서 경기도(241,513백만 원), 광주광역시(142,557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각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 간 재정적 격차는 평생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소외된 광역지자체가 발생함. 지역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구심점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며 지역평생교육을 성장시켜 나가기엔 역부족이며 정책방향이나 기조에 기반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목적: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형평성 있는 재원투자 및 지역 재정 확대

2) 정책내용

○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수직적 조직개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각 시·도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임. 국가와 지역의 분리된 평생교육 사업 진행, 지역의 불평등한 재정 상황 등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독자적 국가평생교육기관으로 구축해야 함

-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각 지역지부로서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을 두어 교육부의 별도 교부금을 받아 지역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평성 있고 공정한 재정을 투자하여 지역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 목적의 재원확보 규정 마련하여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간 형평성이 있고 공정한 재정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간 평생교육 투자가 분산된 것을 일원화해야 함

○ 중앙·광역지자체 평생교육 재원 투자 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부처의 출연예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 등 교육예산 구분별 평생학습 정보와 매칭이 가능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예·

결산 시스템이 마련되어 평생교육 재정정보가 공개됨. 중앙정부 및 정부 부처에서의 평생교육 관련한 재정지출의 정보와 한두 지역에 편중된 광역지자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확산적 정보체제 구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결산 정보 공유하고 합리적 투자 및 재정지출을 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고를 위하여 예산의 실행조직(지출부서 및 지반부서)에 재량권 이양을 확대하는 대신 지출의 성과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평생교육 예산과 다양한 평생학습정보에 대해 매칭하여 평생교육 재정 빅데이터를 만들어 활용 가능함

○ 성인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 성인을 위한 장학재단은 학교교육 이후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성인학생을 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임. 즉,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별로 평생교육 예산을 분할 지원하는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학습하고자 하는 성인이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산으로 레디메이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 기관, 광역지자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신청하여 투자받을 수 있는 공적 재원투자 시스템을 구축함

3) 기타사항

○ 교육부에서 주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규교육의 확대가 산업사회의 규범에 부합한다면 평생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규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정규교육보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접예산 방식을 구축하여 평생교육의 미래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라.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부처 간 연계조직 운영

1)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분화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대상과 영역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

❍ 이에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일원화된 추진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 실행, 운영, 연계, 평가되지 못하고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으로 이원화됨. 이에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일반행정자치기구에서 주도권을 갖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함. 이러한 연계 및 협력의 미흡으로 평생교육의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함

- 평생교육 관련 부처는 교육부 외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음. 각 부처별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상이하며 수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 예산, 인력 등도 다른 상황임. 이처럼 평생교육의 공급체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분리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역할 구분이 모호함. 이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과업의 수행 범위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문화센터와 같은 나열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집행 예산 차이로 지역 간 평생교육 사업의 규모나 질 측면에서 편차가 큼. 특히 일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 형태가 아닌 지정위탁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 환경이 열악함

- 한편, 지자체가 설치한 평생교육센터와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생교육관이 양립하여 연계가 필요함. 평생교육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인 경우와 교육청인 경우로 혼재되어 있고, 기타 법령에 따른 기관들(예를 들어, 대학 평생교육원, 여성가족원, 도서관, 박물관 등)도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공간자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가 존재하고 교육부의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은 떨어짐

❍ 이에 실제적인 부처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국가 수준의 비전과 방향으로 적합화하고 부처별 장점을 살려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또 협력할 사항은 공동

으로 노력하는 등의 협력과 역할 분할 등이 요구됨

○ 국내 평생교육의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각 부처 간 영역을 연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정책목적: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 관련 정책, 사업, 예산, 인력 등을 통합 운영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2) 정책내용

○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를 묶어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조직 설립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치 및 역할 재정립: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조직 구성 및 교육부 대응 조직 구성이 요구됨. 국가교육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가 설립되도록 해야 함. 평생교육 위원회는 국가 정책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평생교육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국무총리 산하에 평생교육 위원회를 둠으로써 관련 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통합 및 연계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 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히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나오는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순환보직의 개념이 아닌 오랜 기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계획, 운영, 평가하여 예산 및 인력 분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위원을 선별해야 함

3) 기타사항

○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협력적 이해와 지원 필요

- 교육부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 다문화교육은 여성가족부, 취역계층을 위한 교육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적인 정책 역

량을 발휘하고 있음

- 이에 평생교육 위원회는 각 부처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고, 각 부처는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여 통합적인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각 정책사업 간 통합 및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국가교육위원회 내 평생교육 기능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2021년 7월 1일 목요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예정임

-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상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국가교육위원회는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로 위원회를 조직함

- 위원회 중 국민참여위원회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위원회 중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자문과 사전검토를 수행함

○ 국가교육위원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

-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함

-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분야 등을 강화함

- 교육부는 이외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에 집중함

2) 국가교육위원회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내 평생교육전문위원회와 성인인재양성전문위원회 구축

- 개인의 생애발달단계와 인생전환기에 따른 평생교육 전반 분야를 담당할 평생교육전문위원회를 조직함

- 평생교육전문위원회는 개인의 생애발달단계와 인생전환기에 대한 이론, 모형, 역량 등을 규명하고,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대학 평생교육원의 역할 등을 고민함
- 평생교육전문위원회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교육체계 등을 고민함
- 성인 이후 성인의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분야를 담당할 성인인재양성전문위원회를 조직함
- 성인인재양성전문위원회는 성인 이후 성인의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분야에 대한 이론, 모형, 역량 등을 규명하고,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의 역할 등을 고민함
- 성인인재양성전문위원회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교육체계 등을 고민함
- 국민참여위원회에 평생교육분야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자문을 수행할 평생교육분과를 조직함
- 국민참여위원회 평생교육분과는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시민, 평생교육사, 시민학습공동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대학의 참여를 촉진함

3) 국가교육위원회의 평생교육 관련 법령 재정비

❍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재정비

-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 평생교육법 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4) 국가교육위원회의의 평생교육 통합 운영 체제 구축

○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기능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량 개선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실행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평생교육의 제도나 상황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성인문해교육, 소외계층교육, 평생학습도시 및 대학 지원, 다문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 다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정책의 실행 전반에 필요한 기능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 실행 기능이 일부 제한되거나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

- 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수행하거나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현행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는 필요한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또한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등의 조사 기능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평생교육 정책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보 축적에도 제한이 있음

○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정책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분석이나 정책목표 달성여부 측정 등 평가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주요 평생교육 정책의 정기적, 정례적 평가기능이 제한됨.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민간 단체, 빅데이터 생산 조직 등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통계 및 자료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능도 부족함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기획 기능의 명확한 구분과 협조 관계 설정도 부재함. 주요 평생교육 정책기획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기획의 업무와 역할은 교육부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수행과 법제적 기능 구분이 일치되지 않음

○ 또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한계가 존재함. 즉,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직접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 규모나 예산은 축소되어 보임. 이처럼 광역 또는 시군구 수준에서 평생교육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 또는 시군구의 지원 관계는 미약함

  • 한편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원을 평생교육 사업이나 실행에 제공하면서도 그 효과는 저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평생교육 기구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교육부와 지자체로 나누어져 평생교육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하는 쌍방향적 소통도 부족함

○ 정책목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및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2) 정책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조사 기능 법적 기반 완비

  •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조사 기능을 포함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한 법안이 계류 상태에 있지만 교육부 및 관련 부처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연구·조사 기능이 법령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규정 등이 법적으로 필요함. 즉,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연구·조사 기능에 대한 후속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업무에 연구·조사 기능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및 조직 편성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실제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연구개발특임센터가 있지만 평생교육 관련 연구·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본부(가칭 평생교육 연구조사 본부)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교육 통계 및 기초 자료 통합 기능 수행

- 직업 관련 통계, 전 부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관련 통계나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평가를 위한 기능 및 추진체계 개선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 평생교육 정책 평가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 정책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하고, 교육부의 관련 과에서도 평생교육 정책 평가 업무를 명기함

-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정책 평가에 대해 자체 심의하여 평가 방향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조직, 즉 평생교육정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을 마련함

- 가칭 평생교육정책평가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평생교육진흥협의회와의 중복성, 절차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바 과도기적 단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하는 것이 추천됨

- 가칭 평생교육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2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음. 교육부 평생교육 담당 과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당 본부장 및 실무 과장, 외부 학계 전문가 5명,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등 평생교육 관계자 3명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이에 대한 법제화는 추후 과제로 하고 내부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보 및 지자체와의 쌍방향 소통 기능 강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정책 협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광역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함

- 실제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평생교육협의회의가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갖고 밀도 높은 소통과 협의를 진행함
- 또한 시군구 평생학습협의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소통 채널이 없으므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평생교육 정책 관련 의견 교환 기능을 확대함

3) 기타사항

○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모든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무총리까지 평생교육정책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국가교육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평생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위 위원회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됨

3. 광역시·도 지자체의 체제 정비

가. 광역시·도 지자체간 네트워크 역량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광역시·도 수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기구로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시군구 수준에서는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협의회와 유사하지만 심의 기능보다는 협의와 조정 그리고 자문의 기능을 수행함. 이처럼 평생교육협의회는 지역에서 평생교육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 또는 협의하는 기구이지만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준비한 안건을 심의가 아닌 동의 수준에서 처리한다든지, 실제로 협의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운영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원 및 실무협의회의 문제점도 존재함. 구성원의 의장은 시·도지사이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 그리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이 포함되지만 대체로 학계 전문가나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 담당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도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또한 실무협의회라는 이름 때문에 평생교육협의회의 하위 조직으로 이해되어 광역 수준의 정책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이로 인하여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과 기초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협력 관계가 잘 구동되지 않음

○ 이에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정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또한 평생교육 주요 관계자인 평생교육기관, 강사, 학습자 등과의 소통 및 정책 의견 공유를 하는 추진체계도 부재함.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평생교육기관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극히 소수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내 다수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지만 일부 기관만 참여하여 대표성이 부족함. 또한 광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여성회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기에 한계도 있음

○ 정책목적:

-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 시·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 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 정책내용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 강화

- 광역수준의 조례에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은 기초지자체 평생교육관 담당, 교육청 산하 해당 지자체의 평생교육관 담당도 포함하여 구성하고,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 담당 등도 참여하도록 함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은 기초지차체 등에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방향 및 사업에 대한 공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 미래 방향 또는 비전 등에 대한 공유와 적합성을 제고함

- 운영은 정기적으로 3개월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함

○ 평생교육기관, 강사, 학습자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평생교육기관, 강사, 학습자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추천됨.
- 평생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은 광역에 소재한 기관 중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평생교육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위원회를 운영함. 대상 평생교육기관이 많을 경우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 기관을 선정하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함. 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하위 협의체를 구성함. 예를 들면, 도서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중 대표 기관을 선정하여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기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함
- 평생교육강사 협의체 구성은 광역 수준의 강사 정보를 활용하여 강사 협의회를 구성함. 강사 DB에 등록된 강사 전원에게 안내를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협의회를 구성함
- 평생교육 학습자 협의회 구성은 지역 내 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별로 학습자 협의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그 중 대표를 선정하여 광역 수준의 학습자 협의회로 구성함
- 위의 세 협의체의 운영은 각 협의체별로 정기 및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 협의회에서 도출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요구를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주체에게 전달하도록 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은 협의회를 활용하여 국가 또는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공유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함. 또한 각 협의회의 운영 예산을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여 위원회별로 지출함

3) 기타사항

- 다양한 협력주체들이 네트워크만 구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충분히 갖추어

야 함

- 네트워크를 긴밀하면서도 견고하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워크숍, 포럼, 세미나, 협의회 등과 같은 빈번한 교류·협력의 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함

나. 평생교육담당 체계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정부개정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체제는 마련되었으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분리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지자체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짐

- 일반행정과의 연결로 성인계속교육 혹은 평생교육 분야에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평생교육 직무를 맡게 되면서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직렬이 없으므로 5년 단위의 한시적 채용에 의존하고 있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나타남

- 타 직렬에서는 자격 기준에 의해 임금이 체결되는 반면 평생교육사는 법적으로 명시된 직렬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기준으로 임금이 체결되지 못하고 최저 기준점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중앙정부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함

- 평생교육법 제26조 1항에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배치 조항이 아니며 최소 배치 인원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또한 다수의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기관에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양질의 평생교육을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와 같이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기관에 전문인력이 확충되지 않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기구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등 평생교육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남

○ 따라서 평생교육담당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평생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충, 평생교육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정책목적: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담당 체계가 미약하여 평생교육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담당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2) 정책내용

○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결로 성인계속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공무원이 평생교육 직무를 담당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

- 이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가 평생교육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직렬을 신설하고 담당 공무원의 평생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 평생교육 직렬 신설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 직렬이 평생교육사의 직무 및 채용에 표준이 되어 공공영역의 평생교육기관을 넘어 민간 평생교육 기관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실무적으로 해당 직무의 수행을 도울 수 있는 평생교육사를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배치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요구됨

- 평생교육법 제26조 1항의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배치 준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 확충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아래 <표 Ⅴ-1> 참조)

<표 Ⅴ-1>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

법령	조항	보건교사 배치기준 내용
평생교육법 (2021.3.23. 개정)	제 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에 관한 준거는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
- 배치 기준 준거는 관련 문헌 분석, 직무분석, 과업분석, 주당 과업 수행 횟수, 소요 시간 파악 등의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실시
-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준거를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및 확대 실시

3) 기타사항

○ 교육부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필요

- 공무원 내 평생교육 직렬을 신설하고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임

4.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가. 평생교육 전문협회 역할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단체를 말하며, 또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중앙단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으로 협의회 설치기구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그 구성·운영에 실효성이 미비하여, 평생교

육 단체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관련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16조(평생학습도시·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운영

○ 유사한 관련 법(예,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법정 단체를 개인이 아닌 협의체로 구성하고 있어서 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평생교육법에서는 법정 단체에 대한 법조항은 없고, 국가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만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업 파트너십은 어려운 실정임

○ 정책목적: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법정기구화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2) 정책내용

○ 평생교육을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듯이, 작게는 풀뿌리 학습공동체인 학습동아리에서부터 평생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생교육단체까지 다양한 활동 단체가 조직되어 있음

- 평생교육 단체는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학습타임즈 등이 있으며, 여기에 관련 법정 기구인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이 협업 파트너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 평생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역할은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가 되어야 함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 기구화해야 함

- 이러한 법정 기구화를 비롯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평생교육법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음

○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정 단체는 중앙-광역자치단

체-기초자치단체의 협의기구에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가와 지역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 구축의 일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기타사항

○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 단체를 법정 기구로 규정하는 법령 개정 시급

- 평생교육법 제44조의 2(한국평생교육사협회) 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평생교육사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또한 중앙단위-광역단위-기초지방단체의 협의기구에 평생교육 전문단체 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법 개정 필요

나. 연수체제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및 채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새롭게 탄생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14만 명을 넘고 있으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 취업현황의 통계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며, 학력인정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대상자별, 영역별 다양하게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해야하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교육도 전무한 실정임

- 이러한 평생교육사의 배출 인력에 비해 취업의 길은 막혀 있고, 공공영역 고용현황은 법정 소요 대비 배치 비율(16.3%)이 매우 낮으며, 배치 인력 중에서는 비정규직 비율(31%)이 높은 상황임(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 평생교육 인력 관리 계획 수립 절실

-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빠른 변화에 따라 현재의 평생교육법에서 전문 인력 배치 기준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민간영역의 채용현황은 정확하

게 파악되지도 않고 있음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으로 평생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인력관리계획” 수립이 절실한 실정임

-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현장에서 전 국민의 생애발달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전담자로 시대적 변화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체제 강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사 채용 및 연수 기회 확대 제공

- 국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도록 규정

- 이에 국가는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함.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평생교육 시대적 대응력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 개발을 통한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책임이 있음

- 이를 위해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인재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 등에 위탁교육 지원

○ 정책목적: 평생교육사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인력관리계획 수립

2) 정책내용

○ 평생교육 인력의 관리계획 수립 시행

- 학교교육과정에서 인력의 채용과 함께 법적으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법적으로 전문인력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연수 강화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 배치 및 채용) → (평생교육사 채용 및 교육)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채용에 따른 신규교육, 매년 교육운영계획 수립과 이에 준하는 직급별 또는 공통적으로 공직자 자세, 공직자 리더십, 직무 전문성, 글로벌 교육, 학습공동체, 모둠 학습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연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평생교육사 의무적 배치에도 불구하고 미배치에 대한 행정적 강제 조항 삽입
- 평생교육 직무 관련 공무원 전문성 유지 시스템 체계화
- 평생교육 전문가 미배치에 따른 지속성·체계성 없는 무분별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운영

○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주기적인 연수 실시

-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에게 생애단계별, 집합·원격 등의 직무연수를 실시
- 주요 내용으로 평생교육 기초이론 개관, 평생교육정책 및 관련 법령 해설, 평생교육 관련 주요 이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법,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사례, 프로그램 운영 평가 등 현장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
- 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학습체제 지향 권장

3) 기타사항

○ 현재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조차 의무배치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고, 공무원임용령에 “평생교육 직렬”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 「평생교육」직렬 신설을 통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학교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이 병렬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음

다. 전국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구축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다변화된 역량 및 전문성 요구의 지속적인 증대

-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사 직무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수행(평생교육법 제24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평생교

육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도 더욱 다원화되고 있는데, 특히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네트워크 관련 직무는 평생교육사의 중요 직무 중 하나임

-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킹 접근이 있겠지만,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살펴보면, 공공역역과 민간영역의 협업 지향이 매우 절실함

○ 평생교육기관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직무개발 필요

- 공공영역은 중앙(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원), 광역자치단체(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도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평생학습도시, 자치구,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민간영역은 평생교육 8대 영역의 평생교육시설 등, 동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시설 및 법인 또는 단체,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임

- 평생교육기관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새롭게 활성화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평생교육사 직무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다만, 배치기준에 중앙(교육부), 학교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전문가가 미배치 되어 있어, 전국단위 평생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에 요구되는 직무모델 수립의 방향이 네트워킹 구축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 정책목적: 전국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추진

2) 정책내용

○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저변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법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2021.6.8.)

- 국가가 평생교육을 주도한 이래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공공영역에서는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완료, 226개 자치구 중 181개 평생학습도시 지정, 2021년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평생교육사업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별 평생교육 영역도 세분화되고 있음

- 최근 평생교육 6대 영역을 각 영역별 별도의 법령으로 제·개정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것도 평생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사안 위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평생교육 전문인의 역할 부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 의원 외 47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초중등교육법), 시민교육관련 법안 발의(민형배 의원 외 12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신설(김민석 의원 외),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 실시(부모교육) 개정(권인숙의원 등 12인) 등

❍ 평생교육사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임을 고려할 때, 국가단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단위의 긴밀한 협력 체계와 타부처의 타직종의 연계 협력이 절실함. 이 경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를 볼 수 있음

- 중앙단위, 지역단위, 공공+민간영역의 평생교육사 네트워킹으로 서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긴밀히 공유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함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설치·지정에서는 연수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사업 연계가 한정되어 있어 중앙단위에서 이러한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등 협력을 통한 전국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함

❍ 평생교육사 직무모델 네트워킹 업무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추진

-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역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모델 구축으로 지역 평생학습 활동 영역 발전 방안 마련이 되면, 지속적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협력을 통한 마을사업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봄

-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실행: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참여한 중앙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 지역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포괄적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공사례는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 파트너십 형성 및 실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가 협업하여 학교 현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진행
-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및 촉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학습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
-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촉진: 조직 내부에서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력 체계 강조
- 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 촉진: 평생교육 사업에서 실무진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직위·직급을 떠나서 현장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 실행
- 지원세력 확보 및 설득: 좋은 사업도 상급자를 설득하여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변의 지원군과 설득자료로써 긴요하게 활용 가능
- 평생교육사 임파워먼트 실행: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추진

3) 기타사항

❍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제시한 직무의 한계, 현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10대 직무모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어 평생교육 직무의 일부만 명시되어 있는 NCS 직무 등, 평생교육법 개정과 평생교육사의 맞춤 배치보다는 채용으로 직무교육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실질적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교육부 주관사업인데, 취약계층 학생 및 지역 아동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포괄적인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초등교육과(돌봄교실 지원사업), 평생교육과(서울평생교육봉사단-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운영)는 내부적으로 협업이 필요하

며, 자치구의 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의 협업·연계 체제를 통한 촘촘한 학교-지역-가정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함

5.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가. 주민학습네트워크 구축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지역 평생학습공동체(학습적 경제활동체, 학습동아리, 지역단위 공동체 등)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실제 운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학습동아리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였고, 학습공동체의 자발적 자원 확보 및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학습공동체 간의 자원을 연계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부재,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 대처하는 어려움 등이 존재함. 이에 학습공동체 간 협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원 공유 활용성을 높여서 자체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습공동체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학습공동체 분포의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함. 특히 수도권이나 일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었고, 일부 지역은 학습공동체가 전혀 없거나 빈약한 지역도 다수 존재함. 농촌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줄고, 고령화도 심각하여 학습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체계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함. 이에 학습공동체 활동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정책목적: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2) 정책내용

○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허브 체계 구축

- 허브 체계는 2단계로 진행함. 1단계는 허브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준

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준비위원회는 기초지자체 평생교육 담당, 학습공동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허브 체계의 필요성 공유, 허브 체계 구축 계획 수립, 허브 체계 참여 대상 학습공동체 파악, 기초지자체 의원 등 설득,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함

- 학습공동체 허브 체계 구축 과정에서 기초지자체는 예산 및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초기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함. 학습공동체 허브 체계에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함

- 2단계는 학습공동체 허브 체계가 출범하는 단계로서, 준비단계의 구축 계획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출범을 추진함. 조직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평생학습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구조를 지향함. 즉, 야학 등과 같이 지역 내 열악한 평생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허브 체계의 기능은 기초지자체 존재하는 학습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공동체 활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함. 즉, 예산지원, 교육 제공, 시설 제공 및 공유, 인적 자원 공유, 각종 평생교육 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함

❍ 학습공동체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중간지원조직) 구축

- 지원시스템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주민 및 공동체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역의 학습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을만들기, 지역상생 협력사업, 도시재생 등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현장마다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거나 설립논의가 진행 중임

-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도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동아리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에는 주민주도 학습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활동영역, 서비스형태, 운영주체 등에 따라 구분됨. 운영주체에 따라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위탁형으로 구분됨. 관주도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고, 민간주도형은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며, 위탁형은 정부나 단체가 설립하지만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임. 활동영역에 따른 구분은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나누어짐. 광역형은 전국 또는 광역 단위에서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을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형은 지자체 단위 또는 구·면 단

위에서 지역에 밀착하여 학습공동체의 지원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공동체 사업을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함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의 학습공동체를 연계하여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학습공동체의 주민주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함

○ 주민학습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의 학습네트워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학습공동체 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정보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오프라인 플랫폼은 학습공동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로서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공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자체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 등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제 발굴 및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허브 체계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신규 회원 및 잠재적 학습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허브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면 허브 체계가 근거 있게 추진될 수 있으나 조례가 없어도 허브 체계는 추진될 수 있음

○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기초 단위의 학습공동체 허브 체계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별로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함. 도시와 농촌 등 지역간 주민의 구성적 특성과 인적 자원의 편차가 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인력의 수급, 지원이 필요함

나. 지역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지역 평생교육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속적 혁신을 위하여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학습 관련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해관계의 갈등, 협력구조의 공백, 지식공유의 장벽 등 한계점이 존재함. 최근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는 네트워크와 공동 협력의 거버넌스가 요구됨(김태준 등, 2021)

○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역의 산업혁신체제와 개인 및 조직의 학습활동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이 중요하며, 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함께 추진해야 함(허정무, 홍진옥, 2016).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킹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함

○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평생교육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지 않음(박인섭 등, 2018). 따라서, 평생교육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네트워크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정책목적: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를 강화하며,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를 확대해야 함

2) 정책내용

○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

트롤타워가 필요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평생교육협의회와 협력 하에 중앙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함.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원을 교류하여 지역, 기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 평생학습관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의 연계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 평생학습관의 파트너쉽 형성과 협의체 구축이 필요함

- 연 2회 이상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관 간 연계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 발전을 위한 논의를 권고할 수 있음

- 교육청 주도로 지역 연계 평생학습 관련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연계 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함

❍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협의회 참여 확대

-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 역시 지자체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거쳐 지자체 평생교육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사항

❍ 평생교육정보망은 시설-시군구-시·도-중앙의 연계 동력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국민 서비스하기에는 불안정함. 또한 현재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 코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각 시·도에서 관리 중인 평생교육기관 코드의 통합임. 예를 들어 평생교육통계의 평생교육기관 정보와 시·도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통해 수합된 평생교육기관 정보가 통합되어 서비스될 경우 중복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초·중등학교 평생교육 기능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지역별 평생교육 불평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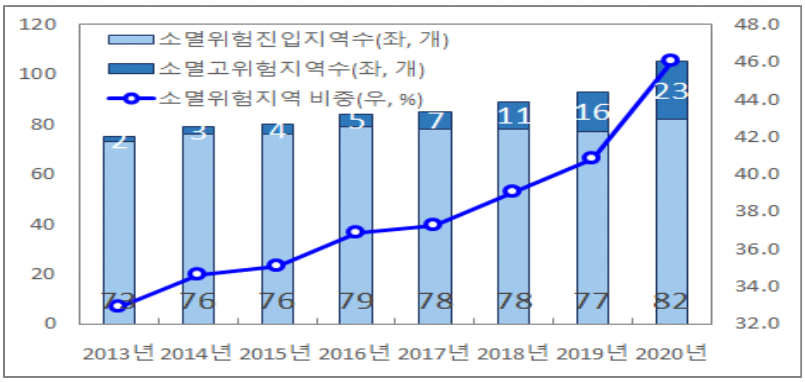
-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평생교육의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2020년 등록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4,541개 중 수도권에 2,979개(65.6%), 비수도권에 1,562개(34.4%)가 위치함.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이외의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분포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비수도권의 면적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기관의 분포는 희박한 상태임

- 2020년 초·중등교육 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총 190개 중 수도권이 73개(38.4%), 비수도권이 117개(61.6%)로 비수도권이 더 많음. 여기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공민학교, 각종학교, 한국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임. 유사하게 지역의 초·중등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평생교육기능을 학교의 기능으로 강화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생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지역청소년의 지역인력으로 정착 지원 부족

- 인구감소와 인구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소멸 확대가 예상됨. 2020년 전체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개(46%)이고, 소멸고위험지역 10.1%임(제2기 인구TF, 2021)



[그림 Ⅴ-1] 소멸위험지역 변화

출처: 제2기 인구정책 TF(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p.2.

- 평생교육이 지역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초·중등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여 지역청소년이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청소년이 지역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실제로 경북 봉화군의 한국펫고등학교의「거꾸로학교」는 펫고등학교의 재학생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지역주민과 펫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다문화배경 청소년의 중국어교실, 컴퓨터 전공 학생의 컴퓨터 교실, 체육과 무용을 좋아하는 학생의 배드민턴 교실, 탁구교실, 걸그룹춤 교실, 커피바리스타 일에 관심 있는 학생의 숲카페 등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거꾸로학교」를 통해, 펫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자신의 꿈을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은 부족한 평생교육 여건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

○ 정책목적: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청소년의 특기성장지원을 위해 지역 초·중등학교에 「거꾸로학교」를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2) 정책내용

○ 지역 초·중등학교에 「거꾸로학교」 설치 및 운영

- 지역 초·중등학교를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학교평생교육의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청소년의 지역사회 소통 기회로서 「거꾸로학교」를 설치·운영함

- 지역의 열악성에 따라 차이를 두지만, 궁극적으로 초·중등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또는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이를 위해 재학생의 특기·적성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꾸로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함

- 「거꾸로학교」에는 재학생이 개설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자신의 특기를 발취하여 개설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함. 이는 지역의 다양한 산업이나 주요 분야에 청소년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개발도 가능하게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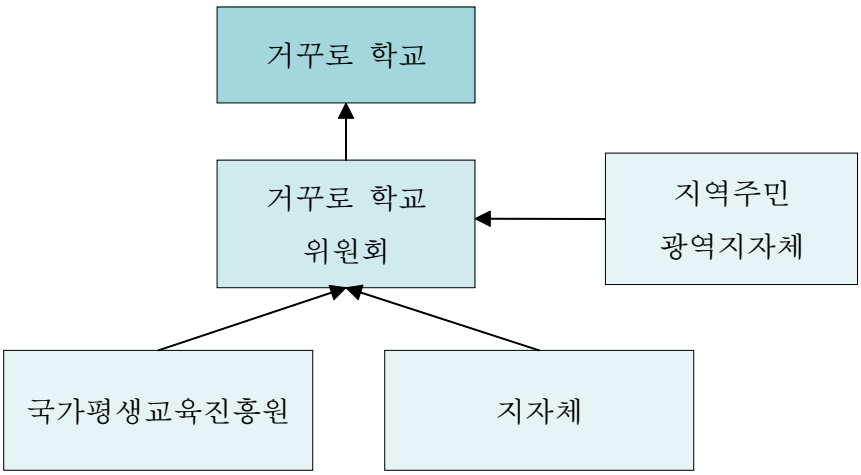
- 「거꾸로학교」의 운영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함. 기존 교사가 「거꾸로학교」업무를 담당할 경우, 과도한 업무 부

담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생교육사를 새로 배치하여 기획, 행정, 평가, 예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를 통해 「거꾸로학교」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도록 함

○ 「거꾸로학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단위학교와 지역이 연합하여 「거꾸로학교」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운영위원회는 학생강사, 학교교사, 지역강사,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거꾸로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결정·지원함

- 「거꾸로학교」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평생교육과 등이 연계하여 사업지원을 위한 협의 체제를 운영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거꾸로학교」운영을 담당할 부서를 선정하고, 「거꾸로학교」사업을 설계하는 역할을 함. 지자체 평생교육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거꾸로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함



[그림 Ⅴ-2] 거꾸로 학교 추진체계

3) 기타사항

○ 「거꾸로학교」운영 예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구성하고, 이에 협력하여 광역 및 기초자자체에서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하여 투입함

- 사업비용에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거꾸로학교」운영비, 시설 및 설비 구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대학 네트워크 역량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지역 내 평생학습체계 구축의 중요성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계획에 따라, 지방대학 양성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평생학습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김태준 등, 2021). 향후 지역 평생학습과 지역 혁신체제의 통합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됨

○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증대

- 대학은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중요한 주체이며, 산업체-학교-연구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권대봉 등, 2016)

- 그러나 현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은 성인 근로자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시설의 경우 교양 및 시민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채창균 등, 2017).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형식교육 기준으로 전체 중 1.7%에 불과함(박인섭 등, 2018)

-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 대학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발전된 역할 수행이 요구됨.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강화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내실화 측면에서도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불가피함. 특히, 기존의 대학 운영 방식에

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교육체제로 발전할 필요성이 대두됨(김태준 등, 2021)

○ 이렇듯 대학은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지역 내 산업, 학교, 그리고 관련 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향후 지역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대학은 지역 평생학습의 중요한 주체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책목적: 대학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및 대학의 평생교육 유도 사업 확대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

2) 정책내용

○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 현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이 실행 중에 있음. 이에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평생교육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대학과 기업 등 주요 평생교육기관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따라서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과 각종 지역 평생학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적극 지원해야 함

- 또한 상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평생학습과의 연계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함. 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대학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 기본계획 수립(1년 단위 및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
- 대학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및 지원
- 대학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 기본계획 관련 예산 편성 및 확보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 간 파트너쉽 및 상시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대학 간 지역 평생학습 전담 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 산업 간 협의체 구축에서 브릿지 역할 수행

○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함. 현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자율혁신대학을 선정할 때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LiFE 사업을 확대 개편해야 함

- 재직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점과 수업 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함. 동시에 성인학습자들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국가장학금 중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하여 성인학습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유도해야함

○ 대학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대학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지원해 새로운 상품,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에 맞는 교육과정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해야 함. 지역-대학-기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따라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3) 기타사항

○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별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과 대학, 기업 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지역 내 신사업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 투자가 요구됨

마. 광역시·도 지자체의 부처간 연계 강화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2019년도 교육부 예산 75.2조 중 평생교육에 배당되는 예산은 0.2%에도 미치지 못

하는 336,966백만 원이었으며, 2021년에 18% 증가하였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고졸취업지원 강화, K-MOOC 등의 신설사업에 편성되었음. 이러한 상황 속에 각 광역시·도지자체에 책정된 평생교육 예산 역시 다양한 평생교육정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 부족한 지역 평생교육 예산에 비하여 교육부를 제외한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도 평생교육이 실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예산을 문해, 시민참여, 인문교양, 직업능력, 학력보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1,652,116백만 원, 고용노동부는 1,451,200백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11,499백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외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 이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지역사회 변화를 융합적으로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재 평생교육의 다양한 정책은 국가 및 광역시·도지자체와 부처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각각의 방식으로 대상에게 실시하고 있어 대상의 중복성, 정책 실행의 효과성 저조 등이 나타나고 있음. 각 부처별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예산, 추진조직 및 전담시설, 근거법령, 교육훈련 대상 및 영역 등이 다양하며 평생교육 방향에 대한 기준 역시 다름. 평생교육을 국가발전의 위한 자본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각 정부부처와 광역시·도지자체가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평생교육의 수직적 통합만큼이나 수평적 통합도 필요함. 정부 부처 간 평생교육의 연계화, 네트워크화, 통합화는 평생교육의 수요자 편에서 나은 서비스를 향유하고 평생교육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 특히 광역시·도지자체에서는 현실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곳이므로 각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연계방안이 필요함

○ 정책목적: 광역시·도 지자체와 정부 각 부처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원화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정책내용

○ 통합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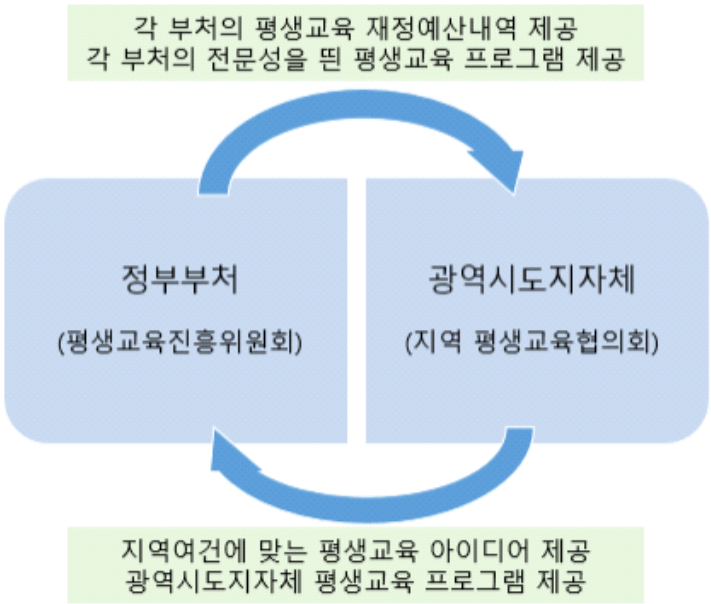
- 광역시·도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부

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필요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지역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 강화

- 각 정부부처의 차관급 인사로 만들어진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광역지자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생교육 진흥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각 부처별 방안 탐색하여 유관부처의 평생교육 관련활동을 연계함

- 광역시·도지자체의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의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 또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그림 Ⅴ-3] 정부부처와 광역시·도지자체의 연계 개념도

○ 정부부처 연계를 위한 독자적 평생교육 조정기구로 '평생교육정책연계운영위원회'구성

- 평생교육정책연계운영위원회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부부처의 사업을 일원화하여 광역지자체 평생교육사업을 실행하는데 통합적 연계성을 가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

- 평생교육정책연계운영위원회의 기능

<표 Ⅴ-2> 평생교육정책연계운영위원회의 기능

구분	기능
수평적 기능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간 평생교육 관련 연계 조정 협력의 기능
수직적 기능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의 평생교육관련 연계, 조정, 협력 등

- 평생교육정책연계운영위원회의 역할은 ① 통합적 수요를 기반으로 융합주제 발굴, ②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및 다부처 간 공동 평생교육사업 추진, ③ 부처와 광역지지체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기획, 완성임

3)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를 통해 ‘2021년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펼칠 예정임. 이에 더 나아가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다부처 정책 연계를 위한 전담기구 구축 예정임. 사업간 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배분 등을 담당하고,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안전부), 재생(국토교통부), 복지(보건복지부), 교육(교육부), 농·식품(농림축산부) 분야를 담당한 지자체 팀을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받아 지역 현황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부처 간 사업이 연계된 지역 대상의 종합정책을 추진함(시정일보, 2021.2.8.)

○ 경기도 화성시는 2021년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안부의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정’, 국토부의 ‘행안부협력형 도시재생 예비’ 등의 사업을 연계해, ‘자치와 협치에 기초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함. 이들 지자체에는 각 1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협의체’ 운영하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6.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

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체계

1) 배경 및 목적

○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심화

- 주로 대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생교육이 COVID-19로 인해 심각한 학습공백 및 불균형이 발생함. 특히 교육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각종 기기와 인프라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온라인 학습여건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임

- 자료에 따르면, 월 가구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율은 150만원 미만 29.7%, 500만원 이상 45.4%로 나타나고 있음. 연령에 따라서도 평생학습 참여율은 격차가 발생하는데, 만 25-34세의 경우 50.2%, 만 65-79세의 경우 29.5%로 나타남. 결국 평생학습은 개인의 여건(소득, 연령, 시간, 접근성 등)에 따라 참여 여부, 학습의 질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됨

○ 지자체 온라인 평생학습 자원 및 역량 부족

- 시군구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평생교육사가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전문역량을 발휘하여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인프라에 있어서도 영상촬영 스튜디오 및 기자재 등 지차체 평생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인프라 제공 및 구축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정책목적: 온라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비대면 교육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2) 정책내용

○ 지자체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및 학습자 플랫폼 구축

-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온라

인학습 콘텐츠 및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운영

- 시스템 내에서 중복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학습자 교육요구를 조사,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온라인 평생학습관」개설

- COVID-19 이전에 학습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습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온라인상으로 옮겨 연결을 지속할 기회 제공

- 일본의 사례「온라인 공민관」: COVID-19로 인해 공공시설이 모두 휴관하고 시민활동의 장이 모두 사라진 비대면 시기에 지역시민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한 사례임. '만나지 않아도 이어진다'를 모토로「온라인 공민관」을 기획하여 매주 1회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 학습자(시민)들은 이곳을 자유롭게 내관(접속)하여 지역과 학습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원할 때는 언제든 참여하기와 나가기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음

- 온라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하게 네트워크하고,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부여, 정보교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학습역량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평생교육사 온라인 교육 전문성 강화

- 온라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및 강사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기획, 설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교수학습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및 강사 교육연수 확대가 필요함

- 온라인 평생학습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 수집,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니즈 분석, 구체적인 온라인 학습활동 및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평생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배치해야 함

3) 기타사항

○ 국가차원의 통합된 온라인학습배움터(가칭)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양

질의 온라인학습 콘텐츠 및 교육정보, 학습이력을 통합하여 제공,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노력 필요

나. 생애 경력개발지원 체제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저출생·고령화, 수명연장 등의 인구지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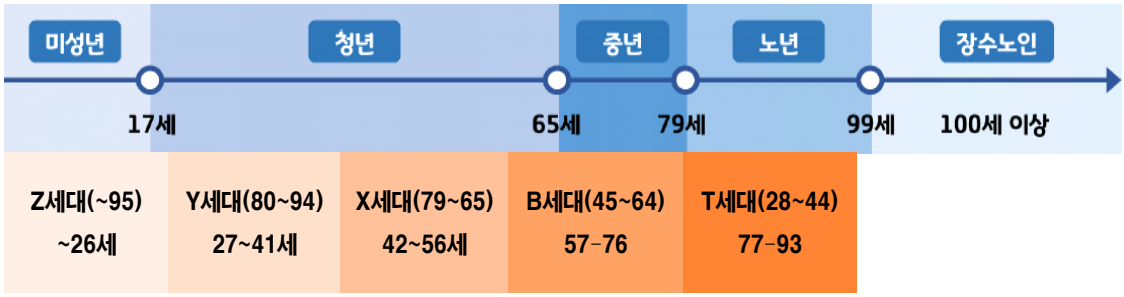
- ’21년을 기점으로 저출생·고령화의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년 합계출산율 0.84%(출생아수 27.2만 명)로 세계 최하위(198개국 중 198위)임. 가장 비판적 예상은 합계출산율을 ’40년 0.73%로 예상함. 또한 ’20년 최초 ‘인구 Dead Cross’가 발생하여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향후 50년 동안 1,200만 명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제3기 인구정책 TF, 2021)

- ’20년 고령인구 비율 15.7%에서 ’25년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로 인하여 ’20년 중위연령 43.7세에서 ’40년 54.4세, ’60년 62.2세로 증가하고, 고령인구 내 고령화도 증가함(제3기 인구정책 TF, 2021)

○ 인구지진으로 인생주기의 변화 발생

- 조선시대 평균수명은 40세였으나 ’21년 한국의 평균수명은 84세로 1세기 동안 2배 증가함. 수명증가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층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새로운 인생단계인 중·고령층의 등장 또는 확대를 의미함.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UN(2015)은 새로운 인생주기 제시: 17세 이하 미성년,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구분함

- 인생주기에서 청년, 중년, 노년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과 함께 세대 간의 차이 및 세대 간 공통이슈가 등장하고 있음. 즉, 1928년부터 1944년에 태어난 전통세대(traditionalist),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Y세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로 세대가 구분됨(Gratton, 2011). 그리고 이 세대는 각각의 개별적 차이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요구를 갖고 있음. 또한 세대 간 갈등도 존재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이 극복의 정책 방향이 요청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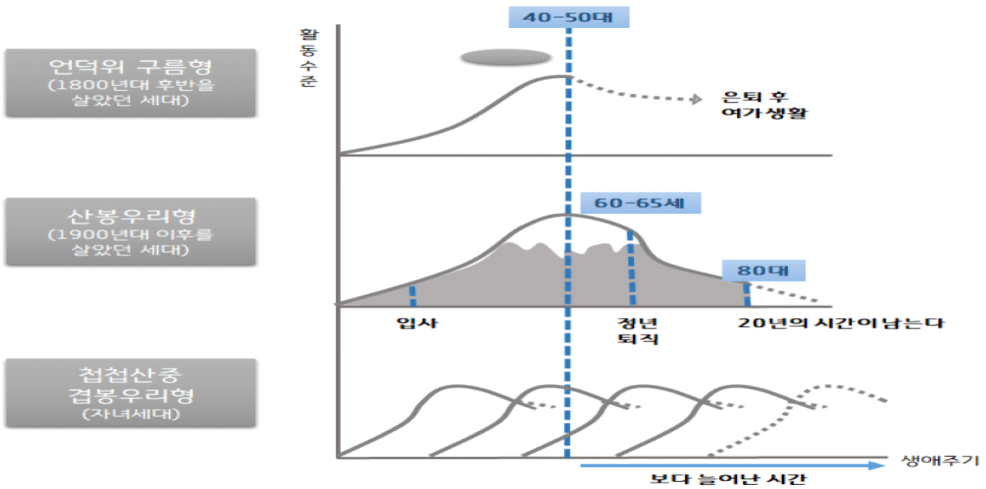
[그림 Ⅴ-4] 세대와 생애주기의 결합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과 Gratton(2011)에서 정리.

○ 인생주기 변화로 인한 새로운 경력 동향 발생

- 인생의 중년기 이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년기 이상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고령화의 심화로 고령층의 빈곤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중년층과 고령층은 경제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유지의 요구가 강함. 청년 시기 역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중·고령층과 경쟁하고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강함

- 인생주기의 변화는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경력유지를 요구하는 경향을 강하게 발생시키고 있음. 이는 생애 모든 단계에서 제2, 제3의 경력을 준비해야 하는 편종형(Carillon) 경력유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인생주기 및 세대 기반의 전생애 경력개발지원이 요청됨. 이를 위해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교육부 및 지자체 등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그림 Ⅴ-5] Carillon 경력단계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p. 4.

○ 고용노동부의 전국민 직업교육훈련 지원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

-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대상이 직장인 등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장되고 관련 예산 역시 확대됨. 이런 변화는 평생교육 분야의 새로운 지형 변화로서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확대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평생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민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청됨

○ 정책목적: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속적 경력개발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경력개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책내용

○ 중앙정부의 전생애 경력개발지원 추진체계 구축

- 전생애 경력개발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교육부 내 Task Force 또는 과 수준의 조직단위를 신설함. 가칭 '생애경력개발 지원과'라고 하여 과 수준의 조직을 신설함. 신설이 어려울 경우 Task Force 또는 기존 유사 부서의 중요 업무로 부여하는 과도기 단계를 설정함

- 가칭 '생애경력개발 지원과'의 업무로 다음을 설정함

- 생애경력개발 지원 기본계획(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및 생애경력개발 지원 시행계획 수립(1년 단위의 정책 실행 계획) 및 운영

- 생애경력개발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확보

- 생애경력개발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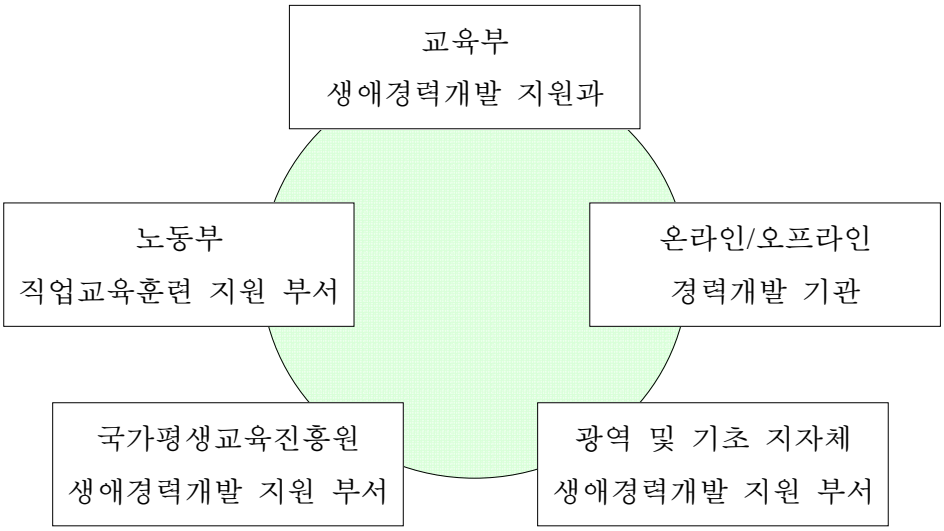
- 국가교육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연계하여, 평생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정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생애경력개발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직접 지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생애경력개발 지원 역할 강화 및 체계 구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본부 수준 또는 주요 행정체계단위 수준에서 전국민 대상의 생애경력개발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교육부의 담당조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함. 특히 생애경력개발 지원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실행,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운영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기구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규정



[그림 Ⅴ-6] 생애경력개발 지원 추진체계 개념도

○ 지자체의 경력개발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생애경력개발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관련 예산을 교육부 및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광역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 생애경력개발 지원 사업을 설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또는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기초지자체는 평생교육관련 지자체 부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산하 부서 및 기관을 활용하여 생애경력개발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는 광역단위에서 생애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사업 운영을 지원함

○ 경력개발 기관의 참여 체계 운영

• 경력개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요소 구축

- MOOC·학점당 학위제·나노디그리 등의 온라인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전 생애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기반의 오프라인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3) 기타사항

○ 생애경력개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체계 구축 가능

- 생애경력개발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추진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보다 생애경력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적 참여 필요

- 생애경력개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및 체계 운영

다. 생활 밀착형 학습체제

1) 정책과제 배경 및 방향

○ 지자체로 이전하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 한국 평생교육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과정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추진체계가 마련된 이후, 17개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법인화가 추진되었음. 이에 광역 수준에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와 함께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음

- 2020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였고, 광역시·도청에는 평생교육팀이나 담당이 배치되어 있음. 또한 기초지자체 226개 중 175개(77.4%)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학습관 및 부서 운영 등의 추진체계 및 관련 인력을 구축 및 활용 중임(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표 Ⅴ-3>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부서명	직원수		직원수
강원	교육법무과 교육지원팀	1	예산과 평생학습담당	5
경기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30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담당	3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평생교육담당	3	교육복지과 평생교육담당	3
경북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4	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3
광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담당	3	시민참여담당관 평생교육팀	3
대구	교육협력정책관 평생교육팀	6	교육복지과 평생교육담당	3
대전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	3	교육복지안전과 평생교육담당	4
부산	교육협력과 교육복지팀	2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2
서울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83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20
세종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	3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3
울산	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	1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3
인천	기획조정실 평생교육진흥담당	14	미래학교혁신과 평생교육팀	3
전남	희망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1	행정과 평생교육팀	4
전북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4	미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4
제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3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	3
충남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1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3
충북	청년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	1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평생교육담당	1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p.60.

○ 읍·면·동으로의 평생교육 주민밀접화 필요

- 한국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로 전환되는 가운데, 주민의 삶의 근거지 또는 주민활동 수준에 밀착되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음. 실제로 마을평생교육활동가/평생학습코디네이터 등의 양성 및 활동, 학습동아리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확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확대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모습은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평생교육의 추진 방향으로서 의의를 가짐

- 이중 평생학습관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중심지였던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등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임. 따라서 평생학습관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학습자에 밀착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었음. 이에 2020년까지 전국에 495개의 평생학습관이 운영되었음(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이 중 67.9%(336개)는 교육청 산하로 교육감이 지정한 유형이고 나머지 32.1%(159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평생학습관은 기초지자체 산하의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이면서 평생교육체제였음

- 평생학습관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수의 평생학습관이 단지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 소규모 행정단위에서 평생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는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지만, 통계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온라인 학습을 매개로 하는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관 기능 부재

- 코로나19 상황,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읍·면·동 평생학습관은 자체 비대면 교육 시설 미비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 및 지역주민의 참여형 온라인 학습체계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였음

○ 이에 평생교육이 발전되는 추세에서 동네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 운영, 평가 등을 실천하고, 지역단위의 평생교육공동체 및 주민활동가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평생학습관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이를 통해 주민밀착형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로 평생학습관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정책목적: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지역전환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고, 주민밀착형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관의 추진체계 역할 강화 지원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함

2) 정책내용

○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로서 질 제고

-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규모 수정: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사 배치 규모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추진체계로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도록 함. 현재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정규직원의 규모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정규직원 규모가 아니라 서비스대상자 규모

로 기준이 전환되어야 함. 또한 거점학습관인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읍·면·동의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로서의 규정만 적용됨. 이에 읍·면·동 수준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계획, 수립, 실행하고 지역평생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평생교육사 배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현행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정규직원 20명 이상은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은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수정 규정: 학습자(또는 지역주민수) 00명 이상은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명 이상, 학습자(또는 지역주민수) 00명 이하는 2급 이상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읍·면·동 평생교육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추가 규정: 읍·면·동 평생교육관은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명 또는 2급 이상 평생교육사 1명과 평생교육 주민활동가 3명 이상 의무 배치

• 읍·면·동 평생학습관의 운영 체계 개선 유도: 읍·면·동 평생학습관의 추진체계로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추진함. 읍·면·동 평생학습관의 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등 자치회 강화, 평생교육사 배치 확대,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 파악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상담의 기능 수행,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안 마련 및 실행, 지역 학습동아리 및 주민활동체 지원 등을 중심으로 가칭 '동네배움터 지원 사업'을 운영함

❍ 가칭 "온라인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 추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수준의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함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온라인 평생학습관 운영

•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관련 이슈, 주민자치회의 등을 라디오 방송처럼 운영하거나, 마을 학습방송국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관 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사업의 참여 대상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수준의 평생학습관 및 지역주민 연

합체로 함

3) 기타사항

○ 평생학습관의 생애경력개발 지원 역량 강화 고려

- 평생동안 새로운 경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력전환 지원 서비스를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평생학습관이 갖도록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잠식하지 않는 수준에서 생애경력개발 및 경력전환 지원 교육 및 서비스 지원 기능을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의 협력적 지원 필요

- 평생학습관 관련 대통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방안 마련 및 개정 추진을 수행함

- 평생학습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중앙정부 수준의 지원 주체가 되고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도 사업지원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함.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사업체계를 갖도록 함

Chapter Ⅵ

결론

주 요 내 용

1 요약

2 제언

VI. 결론

1. 요약

코로나19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학습의 격차 해소와 지속적인 학습 참여 지원과 같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의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현장의 교육수요에 따라 민감하고 긴밀하게 반응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평생교육 운영 체계는 각 중앙부처-지방부처-민간기관 등 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은 각 주관부처나 자치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추진, 실행되고 있어 실행 동력이 미흡하고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평생교육 전반의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각각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현황 분석을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거시적, 미시적 변화 요구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의 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안과 유관기관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 법령 재정비,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강화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서 비교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 안전 보장,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평생교육법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에서 전문가들은 개선 과제로써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개선 방향을 정리하여, 평생교육 관계 법령 개선,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 광역시·도 지자체의 체제 정비, 평생교육 전문성 체제 강화, 지역 평

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미래학습자 밀착형 체제 구축 등 6개 정책 개선 방향과 21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주도의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기관 중심의 하향식 전달 체제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명무실했던 기능을 복구하고, 불필요한 역할은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체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강화 지원, 모니터링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자체는 시·도 평생교육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지역학습공동체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각 추진체계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확대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정책 및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여 평생교육의 계획 및 실천에서 핵심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정책 주체가 소규모 행정단위로 이동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한국에서도 지자체의 광역수준뿐만 아니라 기초 수준에서 평생교육의 추진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의 경우 그 수를 늘리고 열악한 지역의 학습공간이자 문화 및 생활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지역 평생학습이 발전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순환적 시스템을 갖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추진체계 내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수

화, 실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평생학습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4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제시된 추진체계 내실화 과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와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 협력과 운영 내실화 지원이 계획되었다. 따라서 현재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주요 정책 및 시·도별 시행 계획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기획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지, 국가-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정례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기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으로써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급격한 위기로 인해 평생교육 체계가 겪고 있는 변화 요구를 검토하고,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며,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 유관기관별 상호 연계·협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사회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 방안 설정의 가이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2020). *위원회 소개*. <https://www.4th-ir.go.kr/#about_4thir>에서 2020년 12월 18일 검색.

경기도청(2021). *평생교육 체계도*.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8&menuId=23762020>에서 2021년 3월 15일 검색.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경기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정책연구*.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 심명인, 이은주, 이미나(2011). *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a). *조직안내*. <http://www.moel.go.kr/agency/org/staff/staffList.do>에서 2020년 12월 1일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b). *기관소개*. <http://www.moel.go.kr/agency/org/ministry/list.do>에서 2020년 12월 2일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0c). *분야별 정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do>에서 2020년 12월 8일 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2020). *조직도*. <https://www.msit.go.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38&mId=139>에서 2020년 12월 18일 검색.

교육부(2017).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2018~2022)*.

교육부(2021).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2020). *소개*. <https://www.pacst.go.kr/jsp/info/orgcht.jsp>에서 2020년 12월 18일 검색.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2021a). *교육안내*. <https://www.ndti.go.kr/1/1_4.asp>에서 2021년 2월 1일 검색.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2021b). *조직 및 기능*. <https://www.ndti.go.kr/4/list.asp>에서 2021년 2월 1일 검색.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0). *소개마당*. <hhttps://www.nise.go.kr/lifelong/sub/info.do?m=0601&s=lifelong>에서 2020년 12월 17일 검색.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 *평생배움세상*. <http://www.nise.go.kr/lifelong>에서 2021년 3월 15일 검색.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평생교육사 직무수행 실태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2019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대봉, 현영섭, 정은정, 우성미(2016).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실천 동향: 2006년-2016년 4대 중앙 일간지 게재 기사를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22*(2), 157-158.

권대봉, 박지혜, 박진영, 유기웅, 현영섭(2017). *평생교육의 세 가지 지평: 기반·실천·가치*. 서울: 박영스토리.

권두승(2017, 11, 14).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정책 개선 국회공청회. 국회도서관 강당.

권인탁(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수준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분석과 발전과제. *교육종합연구, 12*(1), 129-157.

금홍섭(2020).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과제와 전망. 월간 *공공정책, 178*(1), 19-21.

기획재정부(2021).*「제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김군수 등(2020). *포스트 코로나19,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경기: 경기연구원.

김도헌(2020). 국내 교육 분야의 게임화(Gamification) 연구에 관한 문헌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457-482.

김상미(2020).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6), 1091-1100.

김의진(2019, 10, 24). *[한-OECD교육콘퍼런스] 헴크스 부서장 "독일 평생교육, 시장이 주도한다"*.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0994>

김태준 등(202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김필두, 최인수(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한준, 이기성(2010).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활동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학습조직과 조직성과 관계모형 개발. *평생교육·HRD연구, 6*(3), 161-189.

꿈드림 홈페이지(2020). *꿈드림 소개*. <http://www.kdream.or.kr/user/sub01_4_3.asp>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노기호(2015). 스웨덴 교육체제 및 교육법제의 내용과 특징. *한양법학, 26*(2), 3-24.

대구평생교육진흥원(2014). 제 1장 대구 평생교육 추진체계 및 역할정립. 대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7).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발전방안연구*.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2020). *디지털배움터 찾아보기*. <http://디지털배움터.kr/>에서 2020년 12월 24일 검색.

문유석(2020). 평생교육 정책거버넌스 추진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21-429.

박병영, 이정우(2020).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확대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박인섭 등(2018). *미래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평생학습체제 재구축의 전략과 과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변종임, 홍영란, 채재은, 고영상, 현영섭, 김기환(2011).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a). *조직도*. <http://www.mohw.go.kr/react/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에서 2020년 12월 17일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b). *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2&PAGE=2&topTitle=정책목표/추진전략>에서 2020년 12월 17일 검색.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2020). *구성* <http://www.ssc.go.kr/menu/intro/intro010204.do>에서 2020년 12월 17일 검색.

서재호, 이승종(2012).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연구:교육과 자치의 조화 관점에서 본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4), 133-157.

손미정(2018). 직업교육법제의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사회법적 논의. *법학연구, 18*(4), 407-428.

양은아(2013). 광역 단위 평생학습생태 촉진정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0*(3), 97-13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a). *조직 및 기능*.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b). *정책정보*.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1.do>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2020). *위원회 개관*. <https://women.na.go.kr:444/women/guide/info01.do>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2020). *새일센터소개*. <https://saeil.mogef.go.kr/hom/info/saeilcenter.do>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2020). *협력기관*. <http://kwla.kigepe.or.kr/front/academy/partners.do?pageCode=P103000>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오호영(2018).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일자리 충격. *한국경제포럼, 11*(2), 93-115.

유영만, 이규영, 조현경, 이윤경, 성다야(2006). 과학기술부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 가속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29-944.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2021a). *북한이탈주민지원*. <https://www.ibuk5do.go.kr/5do/frt/sub/a09/unificationSchool/screen.do?menu_depth=09&menu_depth2=01&menu_depth3=01>에서 2021년 2월 1일 검색.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2021b). *위원회 소개*. <https://www.ibuk5do.go.kr/5do/frt/sub/a02/selectGreeting.do?menu_depth=01&menu_depth2=01&menu_depth3=01>에서 2021년 2월 1일 검색.

이상호, 박수정(2019).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A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0*(3), 103-130.

이승열(2021. 2. 8). *지역에서 정부사업들 연계해 새롭게 기획*. 시정일보.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096>

이윤미(2011). 해외연구소개: 스웨덴 교육사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주요 학회 및 대학별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3), 178-198.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정석, 이충렬(2014). 부산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수산해양연구, 25*(2), 368-381.

이지혜(2019). 가상현실 기반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1),357-366.

이희수 등(20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 힌국연구재단.

이희수 등(2017).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교육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자료.

인터넷뉴스팀 (2021). *영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0>에서 검색.

장희영(2014). 광역단위 평생교육 전달체계 실태와 정책과제. *교육학논총, 35*(2), 115-138.

전기창(2015).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로컬 거버넌스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3*(4), 163-188.

제3기 인구정책 TF(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17>에서 검색.

조대연 등(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적자원정책 설계 및 추진체계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조선아(2018). *독일 지역 사회 열린 교육의 산실, 시민대학.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11호*. <https://50plus.or.kr/org/detail.do?id=2320817>에서 검색.

조이현(2021). 지역주도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방안.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21.

주경란(2005). 21세기 영국 평생학습제도의 혁신동향과 평가.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8*(4), 39-9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2021a). *교육과정*. <https://www.logodi.go.kr/main/content.action?cmsid=101020101010>에서 2021년 2월 1일 검색.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2021b). *자치인재원소개*. <https://www.logodi.go.kr/main/content.action?cmsid=101050101010>에서 2021년 2월 1일 검색.

최영렬, 황규희(2005). *스웨덴의 평생학습 법·제도*.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운실, 맹은경, 정구영(2019).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담론 분석. *인문사회 21*, *10*(6), 1709-1720.

최하영(2021). 지역주도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2.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19.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2017). *해외 선진사례 연수보고서: 독일, 스웨덴, 영국*. 충남: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2008). *해외 평생교육 정책동향 시리즈 1, 북미 평생교육 정책동향*.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2015).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2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2020). *주요사업*. <http://www.kihf.or.kr/lay1/S1T335C338/contents.do>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2020a). *사업*.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4>에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2020a). *소개*.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53>에

서 2020년 12월 16일 검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2020). *사업소개*. <https://www.kohi.or.kr/user/bbs/BD_selectBbs.do?q_isAspBbs=&q_bbsCode=1057&q_bbscttSn=20200405104258186>에서 2020년 12월 17일 검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20). *조직도*. <https://www.wiset.or.kr/contents/org_new.jsp>에서 2020년 12월 21일 검색.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추진 공통 가이드라인*.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2477&parentSeq=22477>에서 2020년 12월 24일 검색.

한숭희 등(2012). *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한숭희, 김경애, 이정은(2006). 북유럽 국가의 평생학습체제: 오래된 미래. *아시아교육연구, 7*(4), 139-16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21a). *주요업무*. <https://www.mois.go.kr/frt/sub/a07/ministryInfo/screen.do>에서 2021년 1월 31일 검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21b). *조직과 기능*. <https://www.mois.go.kr/frt/sub/a07/orgranFunction/screen.do>에서 2021년 1월 31일 검색.

허정무, 홍진옥(2016). 지역사회중심 평생교육지원체계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1), 211-220.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개선을 위한 HRD-Net 리모델링 제안*. <https://www.isckorea.or.kr/minipage/boardview.do>에서 검색.

AAACE (2021). *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https://www.aaace.org/>에서 2021년 6월 14일 검색.

BMBF (2020). *About us*. <https://www.bmbf.de/en/ministry-1402.html>에서 2021년 4월 10일 검색.

BMBF (2021). *Organizational Chart*. <https://www.bmbf.de/en/political-staff-and-organization-1403.html>에서 2021년 4월 16일 검색.

Brandt, P. (2015). *Adult Education in Germany*. <http://www.infonet-ae.eu/country-overviews/germany.>에서 2021년 4월 18일 검색.

CSW (2016). *New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swallows up DECC and BIS — full details and reaction*. <https://www.civilserviceworld.com/professions/article/new-department-for-business-energy-and-industrial-strategy-swallows-up-decc-and-bis-full-details-and-reaction>에서 2021년 5월 6일 검색.

DVV (2021). *DVV International: Education for Everyone*. <https://www.dvv-international.de/en/>에서 2021년 5월 6일 검색.

DOL (2021). *U.S. Department of Labor*. <https://www.dol.gov/>에서 2021년 6월 14일 검색.

ECLKC (2021). *Office of Head Start*. <https://eclkc.ohs.acf.hhs.gov/about-us/article/about-office-head-start>에서 2021년 6월 14일 검색.

ED (2021).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2.ed.gov/policy/gen/guid/types-of-guidance-documents.html>에서 2021년 6월 14일 검색.

Eurydice (2018a). *Sweden: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at Central and/or Regional Level*.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에서 2021년 5월 4일 검색.

Eurydice (2018b). *Sweden: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at Local and/or Institutional Level*.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administration-and-governance-local-andor-institutional-level-80_en>에서 2021년 5월 4일 검색.

Eurydice (2020). *Sweden: Key Features of the Education System*. <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sweden_en>에서 2021년 5월 4일 검색.

Gratton, L. (2011). *The Shift: The future of work is already here*. 조성숙 역(2012). *일의 미래: 1년 후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경기: 생각연구소.

HHS (2021).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ttps://www.hhs.gov/about/index.html>에서 2021년 6월 14일 검색.

KMK (2021). *Standing conference*. <https://www.kmk.org/kmk/information-in-english/standing-conference.html>에서 2021년 4월 28일 검색.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OCTAE (2021). *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vae/index.html>에서 2021년 6월 14일 검색.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VHS (2017). *Adult education centres in Germany*. <https://www.volkshochschule.de/verbandswelt/dvv-english/adult-education-centres-germany.php>에서 2021년 4월 13일 검색.

WEF (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3.

WES (2020). *Education in Germany*. <https://wenr.wes.org/2021/01/education-in-germany-2>에서 2021년 4월 16일 검색.

부록

면담 참여 의뢰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현재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평생교육 분야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지원체계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면담 방법을 통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면담은 온라인/오프라인 개인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담의 원활한 진행과 깊이 있는 논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질문 내용은 사전 공지하오니, 미리 숙지하시고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담비 지급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간단이력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소장: 조대연

문의: 김정원 연구원 (jkim829@korea.ac.kr)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

개인 면담 안내

□ 평생 교육 분야 전문가 대상 개인 면담 실시

○ 일시 및 방식 : 2021년 2월 중 (전문가 사전 상담을 통해 일정 결정)
ZOOM을 통한 비대면 면담 방식 (30-40분 예상)

○ 인터뷰 주요 내용 :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개요

○ 과제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

○ 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방향과 이의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현재와 변화 요구 분석
-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해외 사례 분석
-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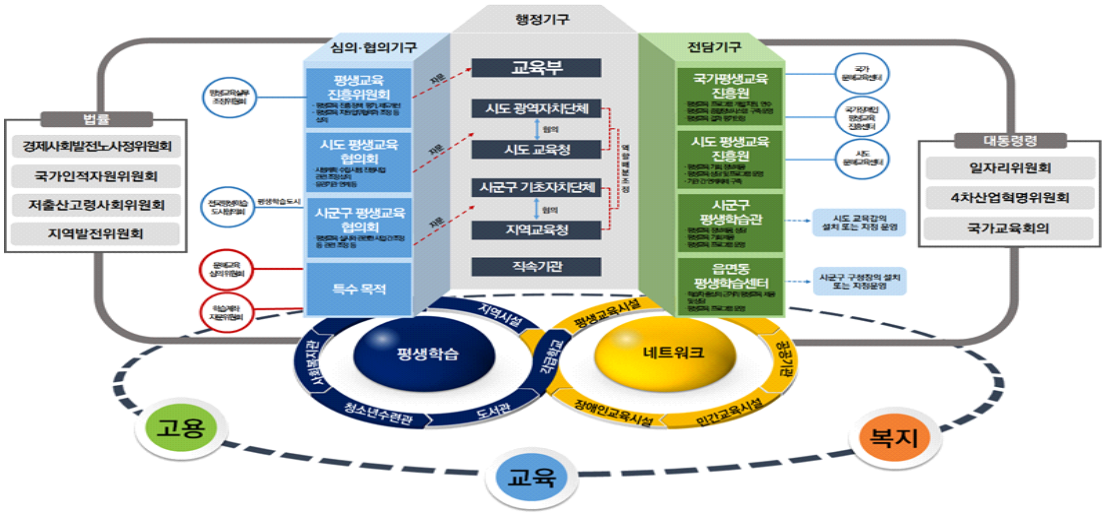
□ 인터뷰 주제와 질문

1. 소개 질문: 개인 신상 정보 확인, 평생교육 분야 경력 등
2. 현재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외 등
3. 평생교육 추진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외 등
4. 추가 연계 질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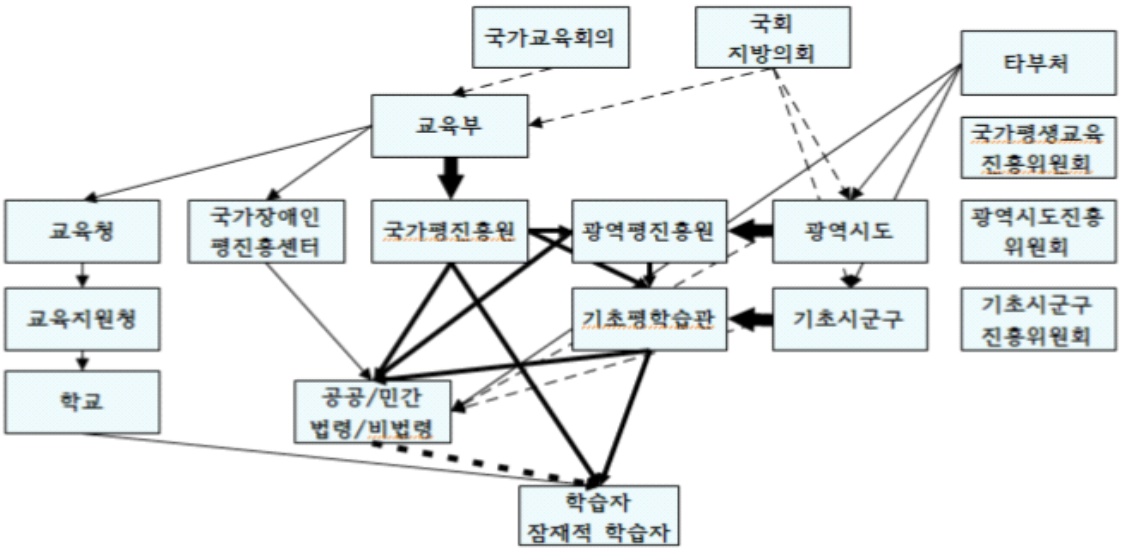
개인 면담 사전 참고 자료

아래 내용은 한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도와 2021년 관련 토론에의 발표내용으로 참고만하시면 됩니다.



〔그림 1〕 평생학습 추진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 p.68



〔그림 2〕 평생교육추진체계

출처: 현영섭(2021), p.18.

추진체계의 고민과 개선(현영섭, 2021)

1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정책 총괄기능 강화 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 타부처 연계

타부처, 다양한 교육내용의 포괄적 체계

학습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학교 평생교육 강화

2 국가교육회의의 위상

: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족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관계 설정(독립적·협력적 관계 구축)

국회 및 의회의 참여 확대

: 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의 대상일 뿐임. 이에 참여 확대 및 평생교육정책정치학 필요

국평원 수준의 다양한 전문기관 확대

3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강화

: 지역 평진원/학습관의 독립성 강화(인사권, 사업계획 및 운영권 등), 교육청의 역할 찾기, 지자체의 평생교육지원 의무화(지역평생교육의 공공성), 평생교육시설 개설 및 관리감독권 위임, 광역간 및 기초간 평생교육협의체 운영

4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협의회 :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운영

5 전문성 기반 평생교육체계 운영

: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의 전문성 인정, 평생교육담당자의 역량 강

화, 평생교육시설 배치 기준 강화,

6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 온라인 학습기능 강화 지원 체계(대학, 공공 자원의 사용 확대)

7 비법령 시설의 법령 평생교육시설 지위 부여

: 평생교육사 채용 등 조건 충족하도록 지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 제고

: 학습자 동기부여 강화 - 평생학습력 강화 정책

8 다양성 제고의 평생학습

: 소외계층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소외계층 대상 시설 지원 강화, 소외계층 지원센터 구축)

9 주민공동체사회의 평생학습 추진

: 주민, 주민단체, 학습모임 등의 추진체계 주체로서 참여 확대, 주민주도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학교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 주체는 주민공동체)

- 추진체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0세기의 체계에 빠져 있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 주민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비전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후 추진체계의 보완이 실행되어야 함.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구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지원체계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보고서와 향후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각의 문항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4. 15

고려대학교 HRD 정책연구소 소장 조대연

연구책임자 현영섭

■ 델파이 조사 수당 지급을 위해 이메일에 첨부한 간단이력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해주시고,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정원 연구원 (jkim829@korea.ac.kr)

<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근무기관은?

① 대학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③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④ 시군구 평생학습관 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⑥ 시·도 광역자치단체

⑦ 시·도 교육청 ⑧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⑨ 지역교육청 ⑩ 기타 ( )

4. 귀하의 평생교육 분야 근무경력은? (년)

※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각 개선 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V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번호	개선 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용어 재정립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	1	2	3	4	5	6	7
		[주관식]'평생교육'의 명칭으로 추천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작성해주십시오.		(				)	
2. 법령 재정비	2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1	2	3	4	5	6	7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1	2	3	4	5	6	7
	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1	2	3	4	5	6	7
	5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1	2	3	4	5	6	7
	6	평생교육법 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 규정 등)	1	2	3	4	5	6	7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7	교육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 기능 강화	1	2	3	4	5	6	7
	8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1	2	3	4	5	6	7
	9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1	2	3	4	5	6	7
	10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1	2	3	4	5	6	7
	11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 (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1	2	3	4	5	6	7
	12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 예산, 인건비 등 포함) 직접 지원	1	2	3	4	5	6	7
	13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의 역할 강화	1	2	3	4	5	6	7
	14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부서 담당 인력 확대	1	2	3	4	5	6	7

	15	평생교육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교육부 전권 위임을 통해 지방정부 평생교육기구(광역진흥원, 기초평생학습관 등)의 독립성 보장	1	2	3	4	5	6	7
	16	평생교육 관련 일반행정 기관의 역할을 예산 지원 및 감독으로 제한	1	2	3	4	5	6	7
	17	시·도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7
	18	시군구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7
	19	시·도교육청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7
4.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20	전국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및 운영 지원	1	2	3	4	5	6	7
	21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1	2	3	4	5	6	7
	22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1	2	3	4	5	6	7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23	국가교육회의를 지원하는 교육부 내 부서 조직 신설	1	2	3	4	5	6	7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1	2	3	4	5	6	7
	25	평생교육기능(온라인 디지털 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준의 중앙정부 정책 기구 신설	1	2	3	4	5	6	7
	26	전문성 강화 위해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은 교육청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타기관으로 위탁 또는 공동 추진	1	2	3	4	5	6	7
6.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	27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1	2	3	4	5	6	7
	28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1	2	3	4	5	6	7
	29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공식적 협의 기능 부여	1	2	3	4	5	6	7
	30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기능 부여	1	2	3	4	5	6	7
	31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1	2	3	4	5	6	7
	3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 간 역할 구분의 명확화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	2	3	4	5	6	7

	33	시·도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 강화	1	2	3	4	5	6	7
7.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34	시·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등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7
	35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7
8. 전문성 확보	36	평생교육 전문가 협회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1	2	3	4	5	6	7
	37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1	2	3	4	5	6	7
	38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	1	2	3	4	5	6	7
	39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전 보장	1	2	3	4	5	6	7
9. 학교 평생교육 강화	40	평생교육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제 강화	1	2	3	4	5	6	7
	41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1	2	3	4	5	6	7
	42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원으로서 학교 교사 활용	1	2	3	4	5	6	7
	43	지역평생교육기관 또는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1	2	3	4	5	6	7
	44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	1	2	3	4	5	6	7
10.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45	지역학습공동체와 단위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학교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1	2	3	4	5	6	7
	46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1	2	3	4	5	6	7
	47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전국 수준의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계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1	2	3	4	5	6	7
	48	광역·기초지방정부 평생교육 협의회(특정 광역시·도 수준의 광역 평생교육 관계기관과 기초지방정부 평생교육 관계 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1	2	3	4	5	6	7
	4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1	2	3	4	5	6	7
	50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1	2	3	4	5	6	7

	51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1	2	3	4	5	6	7
	52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1	2	3	4	5	6	7
	53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 확대	1	2	3	4	5	6	7
	54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1	2	3	4	5	6	7
	55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검토	1	2	3	4	5	6	7
	56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등)와의 정책 연계 강화	1	2	3	4	5	6	7
11.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57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	1	2	3	4	5	6	7
	58	시민사회, 지역학습공동체 등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1	2	3	4	5	6	7
	59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7

▶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 델파이 조사 2차

000 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구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최종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연구보고서와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 방법은 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중요성 평가를 위한 것이며, 각 항목에 대해 ① 지난 1차 델파이 전문가 24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시고(1차 전체 응답 결과), ② 지난 1차 델파이에 본인이 응답하신 값을 확인하신 후(1차 응답 결과), 조정 여부를 판단하시어 ③ 최종적으로 2차 결과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해당하는 칸에 V 표기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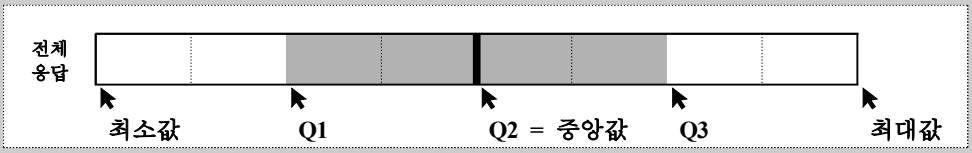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HRD 정책연구소 소장 조대연

연구책임자 현영섭

<평가준거> ▸ 중요도: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과제로서 각 문항의 중요성 정도

1	2	3	4	5	6	7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분석항목> ▸ M = 각 문항 응답자 전체 평균 ▸ SD = 각 문항 응답자 전체 표준편차



- Q1(제1사분위수): 응답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할 때, 누적 백분율 25%에 해당하는 값
- Q2(제2사분위수): 응답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할 때, 누적 백분율 50%에 해당하는 값으로 중앙값과 같음
- Q3(제3사분위수): 응답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할 때, 누적 백분율 75%에 해당하는 값

※ 참고: 각 문항의 최소값, 최대값, Q1, Q2(=중앙값), Q3 값은 '1차 전체 응답 값'란에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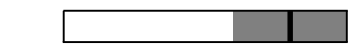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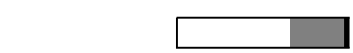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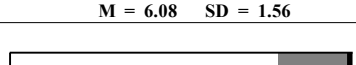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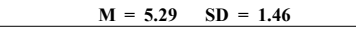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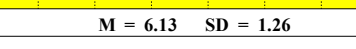
<응답 예시> ▸1차 선택 = 1차 델파이 당시 전문가 본인의 응답 ▸2차 = 분석결과를 고려한 최종 응답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1차 전체 응답	M = 4.79 SD = 1.47							최소값 : 1 최대값 : 7 중앙값 : 5 Q1 : 4 Q3 : 6
		1차 선택	1	2	3 V	4	5	6	7	
		2차	1	2	3	4	5 V	6	7	

※ 평생교육추진체계 개선 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V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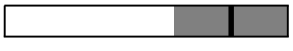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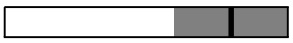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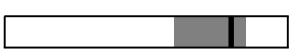
구분	번호	개선 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 1 2 3 4 5 6 7)	1차 전체 응답 값	
1. 용어 재정립	1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의 명칭 변경 (예: 성인계속교육)	1차 전체 응답	M = 2.67 SD = 1.86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1
			2차		Q1	1.75
					Q2(중앙값)	2
					Q3	3.25
2. 법령 재정비	2	기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	1차 전체 응답	M = 5.96 SD = 1.23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4
			2차		Q1	5
					Q2(중앙값)	6.5
					Q3	7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1차 전체 응답	M = 5.88 SD = 1.30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2
			2차		Q1	5
					Q2(중앙값)	6
					Q3	7
	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고유 사무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직렬 신설	1차 전체 응답	M = 6.33 SD = 0.82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4
			2차		Q1	6
					Q2(중앙값)	6.5
					Q3	7
	5	지방자치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1차 전체 응답	M = 6.46 SD = 0.93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4
			2차		Q1	6
					Q2(중앙값)	7
					Q3	7
	6	평생교육법 상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시군구 지자체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의무규정 등)	1차 전체 응답	M = 6.33 SD = 0.92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4
			2차		Q1	6
					Q2(중앙값)	7
					Q3	7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7	교육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통합적 협력 기능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88 SD = 1.23	최대값	7
			1차 선택		최소값	2
			2차		Q1	5.75
					Q2(중앙값)	6
					Q3	7
	8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역 평생교육 협의	1차 전체 응답	M = 6.00 SD = 1.18	최대값	7
					최소값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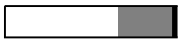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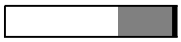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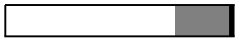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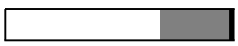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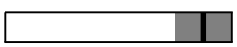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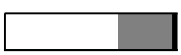
		기구 마련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9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평생교육 협의 기구 마련	1차 전체 응답	M = 5.75 SD = 1.36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10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 협의 기구 신설	1차 전체 응답	M = 5.96 SD = 1.40	최대값	7
					최소값	1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11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평생교육 주무과 증설(예: 성인직업교육정책과, 성인기본교육정책과, 성인학위정책과 등)	1차 전체 응답	M = 5.71 SD = 1.52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12	중앙정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예산, 인건비 등 포함) 직접 지원	1차 전체 응답	M = 5.83 SD = 1.37	최대값	7
					최소값	2
					Q1	5.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13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 부서의 역할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00 SD = 1.64	최대값	7
					최소값	2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5
			2차		Q3	6.25
	14	교육청의 평생교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평생교육 부서 담당 인력 확대	1차 전체 응답	M = 5.17 SD = 1.69	최대값	7
					최소값	2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5
			2차		Q3	7
	15	평생교육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교육부 전권 위임을 통해 지방정부 평생교육기구(광역진흥원, 기초평생학습관 등)의 독립성 보장	1차 전체 응답	M = 5.46 SD = 1.41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
	16	평생교육 관련 일반행정 기관의 역할을 예산 지원 및 감독	1차 전체 응답	M = 4.50 SD = 1.67	최대값	7
					최소값	1

		으로 제한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5
			2차		Q3	6
	17	시·도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M = 4.50 SD = 1.79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1
					Q1	3.75
			1차 선택		Q2(중앙값)	5
			2차		Q3	6
	18	시군구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M = 3.92 SD = 1.72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1
					Q1	2
			1차 선택		Q2(중앙값)	4
			2차		Q3	5
	19	시·도교육청간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부가 구축 및 운영		M = 4.29 SD = 1.78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1
					Q1	3
			1차 선택		Q2(중앙값)	4
			2차		Q3	6
4.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및 역할 정립	20	전국평생교육사 네트워크 재건 및 운영 지원		M = 5.46 SD = 1.50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21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 관계부처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M = 6.38 SD = 0.92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4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22	국가교육회의 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위원회 조직 구성		M = 6.08 SD = 1.56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1
					Q1	5.75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23	국가교육회의를 지원하는 교육부 내 부서 조직 신설		M = 5.29 SD = 1.46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2
					Q1	4.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총괄 기능 수행 유지		M = 6.13 SD = 1.26	최대값	7
			1차 전체 응답		최소값	2
					Q1	6
			1차 선택		Q2(중앙	6

			2차		값)	
					Q3	7
	25	평생교육기능(온라인 디지털 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준의 중앙정부 정책 기구 신설	1차 전체 응답	M = 4.63 SD = 2.10	최대값	7
					최소값	1
			1차 선택		Q1	2.75
					Q2(중앙값)	5.5
			2차		Q3	6
	26	전문성 강화 위해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은 교육청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타기관으로 위탁 또는 공동 추진	1차 전체 응답	M = 4.04 SD = 2.14	최대값	7
					최소값	1
					Q1	2
			1차 선택		Q2(중앙값)	4
			2차		Q3	6
6. 추진체계 내 기구 역할 강화	27	평생교육 추진체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직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1차 전체 응답	M = 5.42 SD = 1.64	최대값	7
					최소값	1
					Q1	4.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25
	28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1차 전체 응답	M = 5.46 SD = 1.61	최대값	7
					최소값	2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29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공식적 협의 기능 부여	1차 전체 응답	M = 5.42 SD = 1.61	최대값	7
					최소값	2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30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기능 부여	1차 전체 응답	M = 5.17 SD = 1.63	최대값	7
					최소값	2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25
	31	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자문과 협력 기능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46 SD = 1.56	최대값	7
					최소값	2
					Q1	4.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3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 간 역할 구분의 명확화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5.33 SD = 1.49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Q2(중앙	5.5

			1차 선택		값)	
			2차		Q3	6.25
	33	시·도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67 SD = 1.37	최대값	7
					최소값	2
					Q1	5.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25
7. 다중 공간 학습 체계 구축	34	시·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 평생교육 담당자 간 네트워크,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등 구축 및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5.96 SD = 1.20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35	온라인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6.04 SD = 1.33	최대값	7
					최소값	2
					Q1	5.75
			1차 선택		Q2(중앙값)	6.5
			2차		Q3	7
8. 전문성 확보	36	평생교육 전문가 협회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1차 전체 응답	M = 5.54 SD = 1.38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25
	37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담당 조직 확대	1차 전체 응답	M = 6.04 SD = 1.08	최대값	7
					최소값	2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38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충	1차 전체 응답	M = 6.13 SD = 1.08	최대값	7
					최소값	2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39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전 보장	1차 전체 응답	M = 6.54 SD = 1.18	최대값	7
					최소값	2
					Q1	7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9. 학교 평생 교육 강화	40	평생교육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제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96 SD = 1.08	최대값	7
					최소값	3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41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63 SD = 1.44 	최대값	7
					최소값	2
					Q1	4.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42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원으로서 학교 교사 활용	1차 전체 응답	M = 4.21 SD = 1.74 	최대값	7
					최소값	1
					Q1	3.75
			1차 선택		Q2(중앙값)	5
			2차		Q3	5
	43	지역평생교육기관 또는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25 SD = 1.67 	최대값	7
					최소값	2
					Q1	4
			1차 선택		Q2(중앙값)	5.5
			2차		Q3	7
	44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	1차 전체 응답	M = 5.58 SD = 1.64 	최대값	7
					최소값	2
					Q1	4.7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10.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45	지역학습공동체와 단위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학교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63 SD = 1.35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46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자원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1차 전체 응답	M = 5.71 SD = 0.95 	최대값	7
					최소값	4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
	47	전국 광역시·도 평생교육 협의회(전국 수준의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계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5.54 SD = 1.47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48	광역·기초지방정부 평생교육협의회(특정 광역시·도 수준의 광역 평생교육 관계기관과 기초지방정부 평생교육 관계 기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5.46 SD = 1.44 	최대값	7
					최소값	2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25
	4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1차 전체 응답	M = 4.54 SD = 1.74	최대값	7

		등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최소값	1
					Q1	3
			1차 선택		Q2(중앙값)	5
			2차		Q3	6
	50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과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등)과 연계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5.92 SD = 0.93 	최대값	7
					최소값	4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51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기구의 연계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6.42 SD = 0.88 	최대값	7
					최소값	4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52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 유도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6.46 SD = 0.83 	최대값	7
					최소값	4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53	평생교육 미지정 기관이지만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참여 확대	1차 전체 응답	M = 5.54 SD = 1.06 	최대값	7
					최소값	4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6
	54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6.46 SD = 0.98 	최대값	7
					최소값	3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55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검토	1차 전체 응답	M = 6.04 SD = 1.33 	최대값	7
					최소값	3
					Q1	5.75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56	시·도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등)와의 정책 연계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6.04 SD = 1.30 	최대값	7
					최소값	3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6.5
			2차		Q3	7
11. 추진	57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1차 전체 응답	M = 6.50 SD = 0.78 	최대값	7
					최소값	4

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각각의 수준 안에서 추진체계 강화			Q1	6
			1차 선택		Q2(중앙값)	7
			2차		Q3	7
	58	시민사회, 지역학습공동체 등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강화	1차 전체 응답	M = 6.04 SD = 0.95	최대값	7
					최소값	4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59	지역의 시민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허브 조직 구축 및 운영	1차 전체 응답	M = 5.83 SD = 1.17	최대값	7
					최소값	4
					Q1	5
			1차 선택		Q2(중앙값)	6
			2차		Q3	7

★ 감사합니다 ★

IRB면제승인심사 결과통보서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결과통보서

심의면제번호	KUIRB-2021-0097-01

접수번호	IRB-2021-0089		
연구과제명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 A Study on Proposal of Promo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Post Corona Era		
연구책임자	조대연	소속	사범대학
현영섭	소속	연구소 및 기타	
박지원	소속	문과대학	
김준희	소속	사범대학	
남준현	소속	사범대학	
고남선	소속	대학원	
김정원	소속	연구소 및 기타	
심의종류	면제 신청서(초기심의)		
심의유형	신속심의		
심의결과	(●) 승인 ( ) 조건부 승인 ( ) 수정 후 승인 ( ) 수정 후 재심의 ( ) 반려		
연구예정기간	해당 연구기간 : IRB승인일 ~ 2021-10-15		
심의의견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면제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심의의견 답변서/이의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 '수정 후 승인'은 신속심의로 진행되고 '수정 후 재심의'는 정규심의로 진행되며 '조건부 승인'시에는 보완서류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재제출 시에는 변경사항대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본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본 통보서의 사본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